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1월호 제187호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리영재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이은경

주요국 조세동향 • •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정책흐름 • •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p>KIPF 논문공모 수상작</p> <p>공공정책포럼</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02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 조원동</p> <p>08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 라영재</p> <p>29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 이은경</p> <hr/> <p>51 재정정책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 한승오</p> <p>75 또또사랑과 창조혁신</p> <p>79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p> <p>87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p> <p>88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p> <p>112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p> <p>114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p> <p>122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p> <p>128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p> <p>144 [오피니언] 분배 개선, 세금 감면 축소부터 외</p>
---	--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경제학자를 희화화(戲畵化)하는 농담 중에 팔(hand)이 하나만 있는 외팔이 경제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모든 현상에 대해 이 측면(on the one hand)과 또 다른 측면(on the other hand)을 동시에 얘기하는 경제학자를 비꼬는 농담이다. 그러나 최근 재정정책을 둘러싼 시각 변화를 보면서, ‘역시 경제학자가 한 측면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지나친 자위(自慰)일까?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정책은 위기 해결사였다. 금융시장의 일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유효수요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나라가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러나 유럽 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재정은 이제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다. 위기 해결사라고 주목을 받던 재정이 단 3년여 만에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다행히 우리 재정은 아직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진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재정정책, 위기의 해결사인가 원인 제공자인가?

최근 들어 재정정책의 위기 해결사적인 측면이 다시 부각된 배경은 역시 통화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변화를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의 강도가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질수록 희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제로금리도 모자라 통화증발을 의미하는 양적팽창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니 말이다. 이 점은 케인즈가 재정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정책을 권고했던 1920년대 대공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권고는 재정적자가 구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만성적이어서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또 빚

을 내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위기의 싹은 이미 트기 시작하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적자가 구조적이나 아니면 경기회복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경제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적자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재정정책은 세금을 걷는 것에서부터 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재정정책을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재정준칙의 의미가 설득력을 얻고 있겠는가.

양날의 칼인 재정정책 잘 활용해야

이렇듯 재정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잘 사용하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금 유럽에서 보듯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상식을 지금 되새기는 것은 재정정책의 양면성이 올해 경제상황 전개과정에서 특히 부각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모두 새해 경제전망에서 인정했듯이, 올해의 전망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어둡다. 유럽 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수습될 것이냐에 따라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미 편성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듯 하다.

한편 선거의 해를 맞아, 재정지출에 대한 욕구도 거세질 것 같다. 이미 각 정당마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 관련 정책제안은 봇물을 이루는 듯 하다. 재정도 정치과정의 일환인 만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적 요구가 거세지면, 재정이라는 나라곳간의 빗장이 원칙 없이 허물어질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지출 하나하나에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점검 필요

재정정책이라는 양날의 칼을 우리 스스로가 베이지 않고 잘 활용하려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재정기조의 판단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지출된다면, 그 만큼 세수도 늘어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하나하나에 대해 보다 정밀

.....
재정정책이라는 양날의 칼을 우리 스스로가 베이지 않고 잘 활용하려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재정기조의 판단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담론적 논거만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글을 통해 재정의 향후 세부 지출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보다는 교육·보건·복지 등 인적자본 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R&D·SOC·보건·교육 등 8개 재정지출분야에서 타 OECD회원국과 비교분석법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복지·교육 등의 인적투자부문의 지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성과가 좋다가보다는 그동안 SOC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만 더 투입이 되어도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달리 표현하면, 인적투자 부문에서는 아직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될 정도로 재정지출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인적자본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 투입 필요

더욱이 우리 경제는 인적자원 부족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마치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라도 끌어오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건이었듯이 말이다. 여성인력을 육아 등 가사부담에서 벗어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자·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인적자본의 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잠재성장력 배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적 논거만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성과측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비용 산정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자본분야는 SOC분야와 달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체계적인 분석의 틈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이 분야에서의 투자결정은 정치적 요구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재정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미시적 차원의 재정지출 효율성 확보 개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SOC사업에만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제도를 복지 등 타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노력은 더욱 체계화된 모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예비타당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의무화하여 시범사업 기간중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의 착수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 또는 3~5년 단위의 심층 성과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영향을 덜 받고 지속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개별사업의 지출효율성을 확보하는 미시적 재정정책이 거시적 재정기조에 대한 판단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KIF**

.....
개별사업의
지출효율성을 확보하는
미시적 재정정책이
거시적 재정기조에 대한
판단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라영재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이은경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yjraa@kipf.re.kr)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I. 서론

정부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대행하거나 혹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재들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공공기관들이 설립,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약 24만 7천명, 예산 464조원이고 2009년 말 자산 610조원, 매출액 239조원, 부채 347조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서 역대 정부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정,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제적·정책적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 기업인 제품의 우선 구매, 장애인 및 여성 고용, 고졸 취업과 더 나아가서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 관련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설립 자체가, 현재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공공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무슨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공공성이라는 책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대적 추세인 지속가능경영의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 민간기업만이 경제적 수익 창출 이외에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하는 원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전 조직으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7년 UN 글로벌 정상회의에서는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모두가 실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로부터 방만 경영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고, 비효율 경영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수동적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수용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정도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2010년 11월에 ISO 26000 제정과 지난 해 국정기조가 “공정한 사회”와 올해 “공생발전”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이행하거나 실천하지도 않는 그림만 그럴듯한 지속가능한 전략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행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관점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공공기관 조직구조, 문화, 성과가 점증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정도는 초보적이다.

II.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추세

유럽의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자의 소외와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투자기관과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재정위기는

극단적으로 기업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다 낳은 비극적 결과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Werther & Chandler, 2009; 라영재·윤태범, 2010). 이렇게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는 기업들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생태계(ecosystem)에 관여하면서도 서로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충관계만을 설정하였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계적 작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수익성도 보장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Eco Research, 2010).

UN 등 국제기구들은 시대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문제화된 인권, 노동, 보건, 안전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규범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 헌장의 취지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와 UN이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의 규범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가치는 1987년 국제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천명한 이래 동일한 지속가능의 개념을 국제기구들이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주요한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UN Global Compact¹⁾, GRI²⁾, ISO 26000³⁾, DJSI⁴⁾에서 각종 사회적 책임의 요소들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수렴되고 통합되고 있다(라영재·윤태범, 2010).

2. 사회적 책임의 원칙

가. 사회적 책임의 접근법

국제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인인 시민과 같이 기업들도 더 좋은 기업,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개선과 사회적 책임, 환경적 보전이 균형을 갖도록 하는 “Triple bottom line”은 경쟁적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Brundtland, 1985; Elkington, 2006). 기업들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

- 1) 1999년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Capitalism with a human face)”를 구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였다. 2000년 7월 UN 본부에서 UN Global Compact 발족식을 거행하였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보편적 원칙을 기업이 실천하고 사회적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2) 전 세계에 통용하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지침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로서 노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GRI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업, 투자자, 노동자, 시민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합의 과정에 의해 개발되고 모든 보고는 문서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대상이 되고 있다(GRI Version 3.0).
- 3)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사회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하여 조직 자체의 성장과 발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한 것이다. ISO 26000의 구조는 7개의 사회적 책임의 원칙,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두 가지 기본적 실행(사회적 책임성의 인식, 이해관계자의 확인과 참여), 7가지의 사회적 책임성의 핵심 주제, 조직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 이행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 26000의 핵심인 사회적 책임성의 정의에서부터, 기본적인 원칙, 구성요소, 실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선도기업인 SAM사가 개발하여 지난 1999년부터 전 세계 2,500개 기업(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정보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모형)이다.

가하고 있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이 개선되는 상호성과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 지속가능성 원칙과 거버넌스 역량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속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의 정교성, 경영관리나 투자 결정에서 활용성, 계량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① 윤리성(ethics), ② 지배구조(governance), ③ 투명성(transparency), ④ 공급망 관계(business relationships), ⑤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 ⑥ 지역공동체 기여(community involvement), ⑦ 생산과 서비스의 가치추구(value of products and services), ⑧ 종업원 관계(employment practices), ⑨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Epstein, 2008:36).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 사회, 정치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II-1〉 지속가능성 성과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윤리성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데 윤리적 기준과 실천을 위하여 제정, 촉진, 점검, 유지의 활동이 있어야 함
지배구조	관리자가 이해관계자 이익에 집중, 이사회에의 신탁의무 인정하는 모든 자원을 신의성실, 효과적인 관리
투명성	제품, 서비스, 경영활동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진 의사결정에 대한 적시 정보 공개
공급망 관계	공급자, 협력사와 공정거래
재무적 수익	투자에 대한 경쟁적 보상과 자산의 보전
지역공동체 기여	지역공동체와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 증진
생산과 서비스 가치추구	고객의 수요와 권리 존중과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제공 노력
종업원 관계	종업원의 발전, 다양성, 권한위임이 증진되도록 인적자원관리
환경 보호	제품, 서비스, 경영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노력

주: Epstein and Roy(2003). Improving Sustainability Performance 인용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 사회, 정치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Albareda 외, 2007; Barth & Wolff, 2008:7).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 또는 기제로 정의하는데, 그러한 제도와 기제 운영하는 것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공공기관이
수직적 책무성만을
고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 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있는 행위자의 공식적이고 실질적 역량을 거버넌스 역량(governance capacity)이라고 한다(Knill and Lehmkuhl, 2002). 주로 민간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문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은 기업 생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2) 주요 이해관계자 관계적 접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경영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어떻게 고려되는가와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Epstein, 2008).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부가적인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주주, 고객, 공급자, 종업원, 정부, 지역공동체 등이 전형적인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는 기업 행위의 이해에 따라서 개인일 수도 집단일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해관계자를 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영 전략상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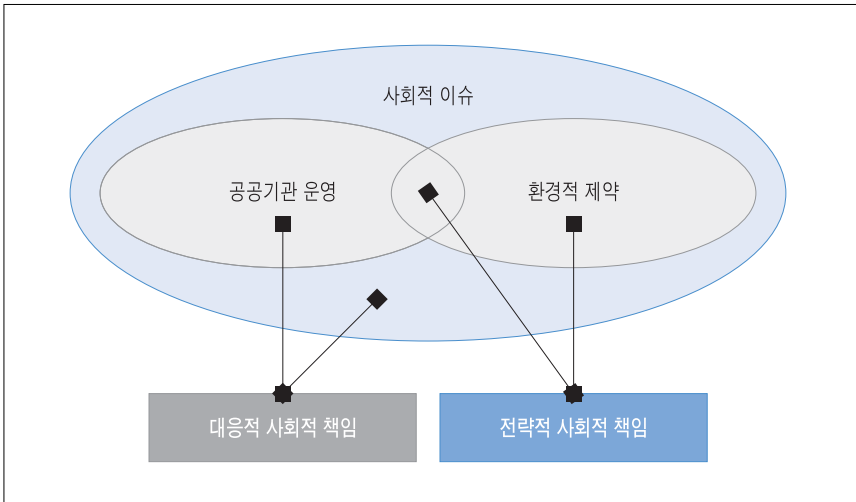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략적 기획과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과 같은 전략적 고려이고 두 번째가,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의 영향력에 순응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적 시각에서 지속가능경영과 전략이 통합하는 것이다.

3) 전략적 차원 경영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를 작은 범주에서 고객이나 협력업체,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주무부처나 예산부처만을 상정하는 경영, 즉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만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환경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 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영재·윤태범, 2010).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① 사회적 책임 활동의 관점에서 접근, ② 핵심 과제로 수행, ③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장기에서 중단기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

요하다(Werther & Chandler, 2009:39).

[그림 II-1] 이해관계자의 요구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책임성이고 정당성의 근원이다.

공공기관은 공익적인 설립 목적을 이행해야 하며, 도구적 수단성의 의미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으로서 더 높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조직으로서 근원적으로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전략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강화와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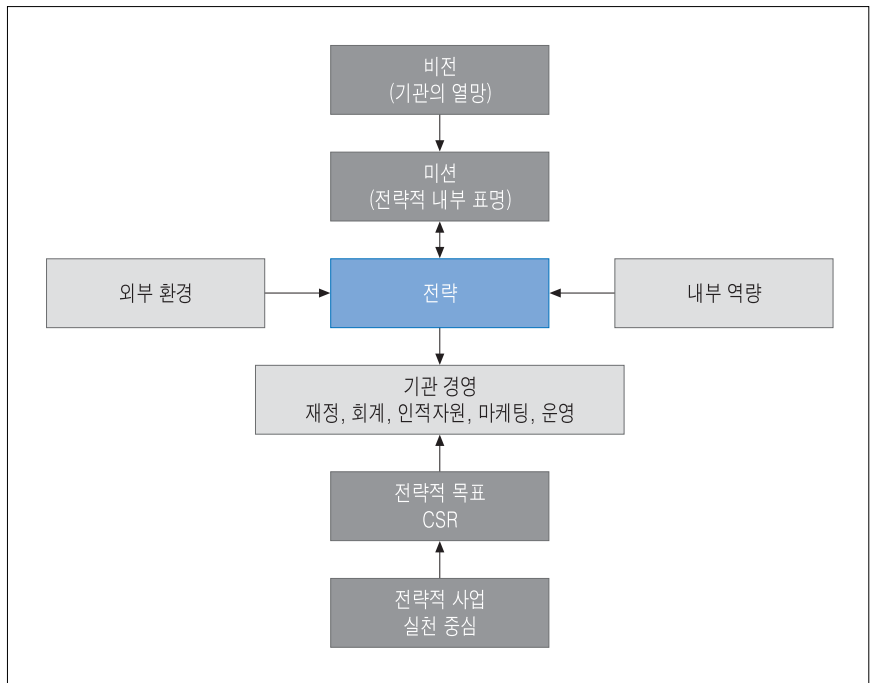
다만, 최근 지속가능경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이나 Global Compact의 가입이 이해관계자나 국민에게 보고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어 마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된 목적보다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진정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경영 전략적 개념을 외부 환경적 제약하에서 내부 역량과 일치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책임성이고 정당성의 근원이다. 전략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균형적 성과추구와 주요 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이 필요하다.

적 지속가능경영은 기관의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과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하향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전략적 목표와 사업이 사회적 책임 관점, 이해관계자 중심적 관점에서 실천적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도 제고된다는 것을 조직 내외부에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균형적 성과추구(BSC)와 주요 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좋은 경영전략과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관점과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중시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지속가능경영의 결과는 초라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공기관의 비전, 미션과 전략은 실천조직단위에서 사회적 책임의 전략과 실천 활동과 직접 연계되어야 하며,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림 II-2]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모델(수직적)



나. 사회적 책임 경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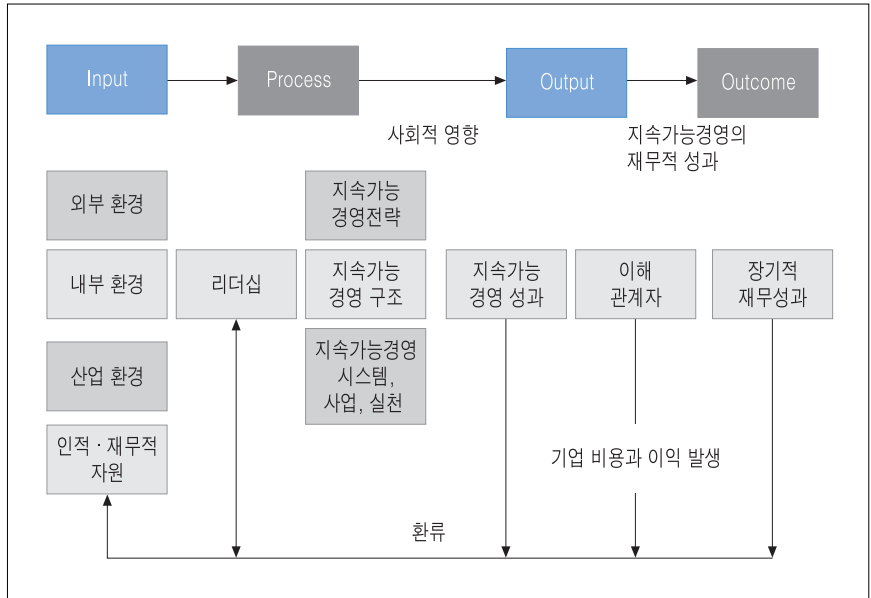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첫째,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다양한 기업운영방안이나 실천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위한 실천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며, 셋째,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적이고 실재적인 재무적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Epstein, 2008, 4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은 이론적·경험적 근거로서 “Triple bottom line”인 사회적·환경적·재무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따른다(Segel et al., 2007; Epstein, 2008). 이 모델에 의하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자와 이해관계에 대한 성과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통합하기 편리한 이점이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장기적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얻으려면 중간에 확실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데는 다양한 투입과 과정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Epstein, 2008, 47).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나 모델은 국제적 논의에서 발전해 온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들 가치가 경영전략으로 기업 조직구조와 경영과정에 투입되고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3]이 조직의 전략적 경영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하향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일상적인 경영과정 전반에서 투입되고 집행되어 환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은 이론적·경험적 근거로서
“Triple bottom line”인
사회적·환경적·재무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따른다

현 정부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5대 분야 80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림 II-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정



III.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수준

1.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가. 현 정부의 공정사회론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부진하며, 소득분배 악화로 인하여 정보격차, 학습격차로 이어져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하에서 공정사회 실현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선진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기재부, 2011.3)⁵⁾. 그래서 현 정부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5대 분야 80개 과제를 발표하였고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정사회 실천 T/F(총리실 주관)를 중심으로 공정사회 추진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있다(2011.2.17)⁶⁾

그러나 공정성 개념은 다원적이고 맥락에 따라서 의미와 대상, 구현방법도

5)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 반기 국정기조로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공생발전을 제시하였다. 공생발전은 생태계형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창조적으로 의역했다고 하며, 생태계형 발전은 지구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하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균(2011). 「공정사회 1년의 회고와 공생발전의 과제」

6) 5대 분야는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⑤ 약자가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이다.

다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신중섭, 2011). 공정한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게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자유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며 출발과 기회에서 평등이 이루어져서 사회구성원의 능력 배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공정사회의 개념을 자유주의적 복지사회로 이해하고서, 평등한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하는 정책분야, 기회균등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정책분야, 사회안전망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정책분야를 공정사회 구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오균, 2011:15). 그러나 공정사회 논쟁에서 다의적인 공정성을 이상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성과 부정의를 논의하는 것이 합의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신중섭, 2011; 이승훈,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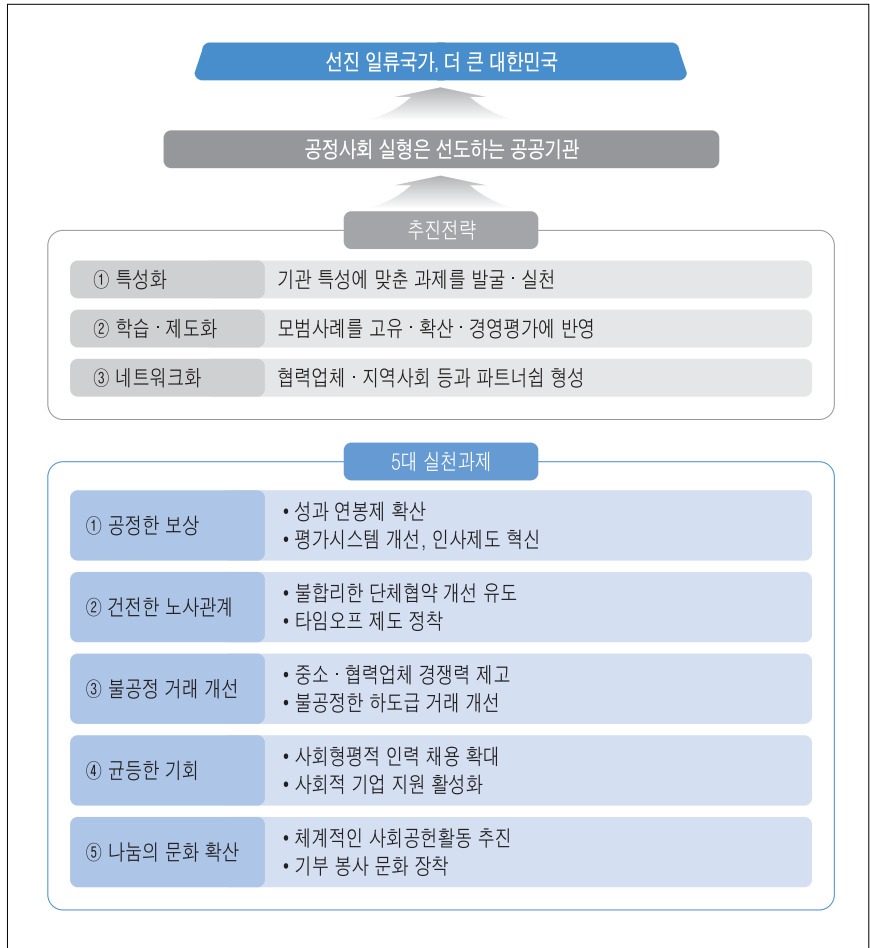
나.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와 성과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어진 공적인 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고(라영재, 2009), 동시에 사회적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존하고 지속적인 발전해야 하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과 같이 현 정부는 공정사회를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공공기관에게 주문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추진전략을 보면 첫째로 핵심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데 성과연봉제 확산,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를 성실히 이행 과제가 있고,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불공정거래 개선 등 동반성장 대책을 이행하고, 균등한 기회, 나눔의 문화 확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림 Ⅲ-1] 공공기관 공정사회 추진전략



자료: 기획재정부(2011) 인용.

정부가 발표한 실천과제별로 긍정적인 실적을 보면 첫째, 간부직 대상 성과 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2010. 6)하고 전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을 추진하였고, 둘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단체협약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우호적 여운을 조성하였고, 셋째,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등으로 민간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결과로 자발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은 최근 4년간 정체상태이

고,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비체계적이고, 단발적 행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공정의 가치는 목적의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개별적 가치에 있어서는 평가한다면 공정의 가치는 수단적 가치의 성격을 다 강하게 가진다고 하는데(김병관, 2011),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논쟁보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적 공정성을 공공기관이 얼마나 선도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준

정부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파악되지는 못하였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0년 11월에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지침으로 적용 범위는 규모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이므로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은 2011년 5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⁷⁾. 조사지는 자체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작성한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작성하였지만 현재 국가 표준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이기에 기술표준원의 사용승인을 받고 설문지로 사용하였다⁸⁾.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크게 프로세스 부문과 성과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세스에서는 기관의 기존 경영시스템이나 체제 안에서 사회적 책임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총 8단계로 ① 사회적 책임 인식과 ②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③ 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④ 우선순위와 실행전략 수립, ⑤ 실행, ⑥ 의사소통, ⑦ 검증, ⑧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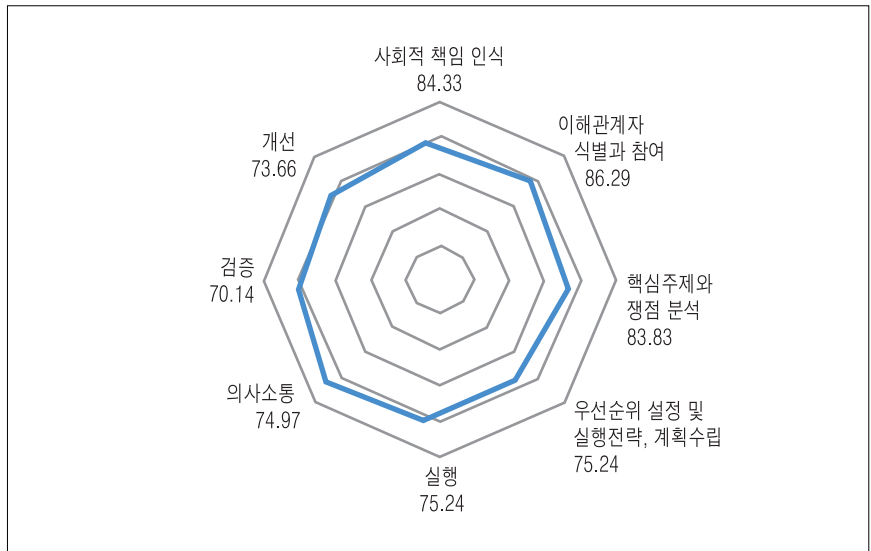
7) 285개 공공기관 설문회신 결과 공기업에서 응답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으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곳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46곳이 응답하지 않았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기관들이 1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들이 각각 5개 기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들이 4개기관이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다른 부처의 미응답 공공기관에 비하여 중요도는 높았으나 전략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8) 체크리스트 조사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성에 기인한 응답이므로 절대적 수준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성과에서는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조직의 성과 수준을 진단한다.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성과에서는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조직의 성과 수준을 진단한다. 조직 거버넌스에서는 기관이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인권에서는 기관만이 아닌 조직의 1차 협력사와 같이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 영향을 받는 조직까지 포함하여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노동관행에서도 기관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을 진단한다. 환경에서는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환경 기술투자와 보호 활동 등에 대해 진단한다. 공정운영 관행에서는 기관이 협력업체나 경쟁업체와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거래와 공정거래, 공정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소비자 이슈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도록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서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전체 점수를 1,000점으로 했을 때 프로세스가 360점이고 성과가 640점으로 가중치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2] 프로세스 진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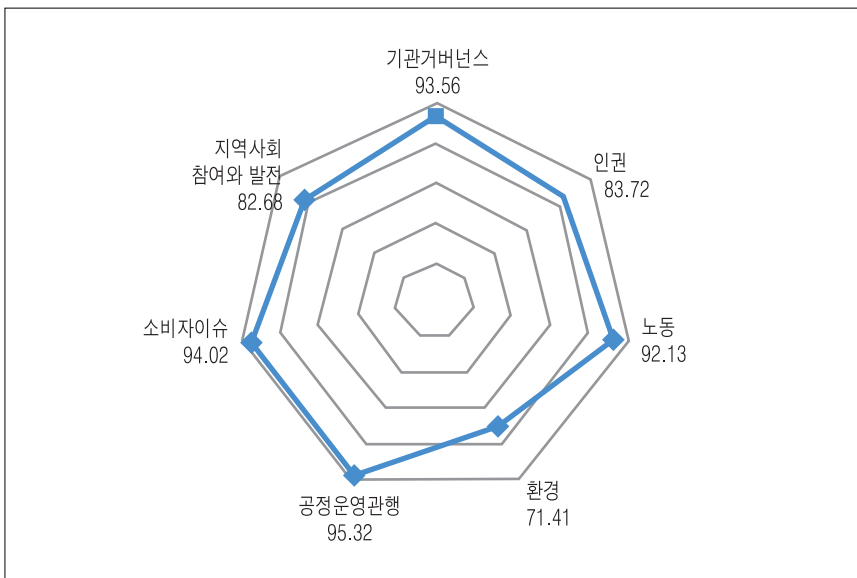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공공기관 전체 충족률은 82.88%로 나왔는데 이 수준의 의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높고 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활동의 전 단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통합 운영되어 성과관리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여 시장형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핵심 주제 중에서도 노동이나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는 점수가 높았지만 환경의 점수는 낮게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국정목표인 녹색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가 낮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결과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여 시장형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림 Ⅲ-3] 성과 진단 현황



규모에 따라
 득점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
 개발 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1〉 공공기관 유형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프로세스		92.46	87.52	81.01	80.66	73.25	77.64
성과	기관거버넌스	97.14	96.92	93.75	96.17	91.62	93.56
	인권	89.72	88.59	85.87	84.98	81.73	83.72
	노동	95.73	94.51	93.75	93.14	90.84	92.13
	환경	92.58	85.55	71.28	76.20	65.51	71.41
	공정운영관행	96.61	97.73	96.85	96.00	94.43	95.32
	소비자이슈	95.14	96.03	95.81	95.19	92.94	94.02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94.06	94.19	82.20	85.61	79.01	82.68
평균점수		93.35	90.47	84.80	85.32	79.64	82.88

규모에 따른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분류 기준으로 정원 500명 이상과 총수입 1천억원 이상 기준을 사용하였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원 500명 기준과 총수입 1천억원 기준은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기에 사용하였다.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득점률을 보였고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규모에 따라 득점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 개발 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2〉 공공기관 규모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프로세스		83.06	77.30	81.85	72.55
성과	기관거버넌스	95.51	90.00	95.00	91.98
	인권	89.35	83.88	84.14	80.03
	노동	94.95	91.63	93.06	90.02
	환경	83.86	71.81	74.06	62.54
	공정운영관행	97.24	98.71	96.07	93.59
	소비자이슈	94.15	97.05	94.06	93.73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90.63	83.13	85.17	76.68
평균점수		88.30	83.28	85.19	78.54

사업 특성에 따른 충족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별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충족률이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80점 이하로 낮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에너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이 충족률이 낮게 나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로 추정된다. 특히 환경성과에서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 90점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에너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표 Ⅲ-3〉 공공기관 산업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프로세스	성 과							총 점
		기관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발전	
농업	82.50	100.00	79.24	93.55	85.75	92.72	87.78	90.63	86.14
광업	86.67	96.67	92.39	95.31	95.14	99.07	96.30	100.00	92.54
제조업	95.00	91.14	98.44	90.83	98.68	100.00	98.44	80.00	89.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27	95.00	88.65	95.05	91.77	96.05	95.64	91.13	90.9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2.59	96.67	86.70	94.76	92.02	96.35	97.92	100.00	89.86
건설업	84.56	98.00	94.49	96.50	86.38	97.78	94.52	93.75	90.31
도매 및 소매업	76.30	93.33	86.53	94.71	69.02	96.24	95.39	94.16	83.65
운수업	86.00	96.00	89.62	94.60	89.76	97.89	95.83	96.04	90.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50	96.25	82.32	94.25	63.42	95.90	92.45	76.23	81.36
금융 및 보험업	77.20	92.17	86.40	95.27	71.05	95.93	94.24	84.07	83.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56	100.00	88.92	95.25	89.77	99.34	96.32	94.40	94.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02	90.59	82.06	92.16	69.41	94.98	92.59	80.69	81.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00	92.50	82.93	87.24	54.28	95.70	72.66	73.90	76.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75.29	95.80	80.46	89.23	63.67	93.79	95.76	76.69	79.92
교육 서비스업	77.04	100.00	81.13	92.19	54.86	94.41	98.82	80.97	80.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79	93.64	84.62	90.50	77.66	96.02	93.69	87.98	84.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3.43	91.67	85.79	90.64	73.77	94.63	93.51	85.16	81.7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1.11	85.00	74.10	83.41	44.87	93.11	94.84	66.71	76.90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별 분석결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의
공공기관 들이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별 분석결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의 공공기관 들이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방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특허청의 충족률이 낮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충족률이 낮지는 않으나 이번 설문조사에 미응답한 공공기관이 많기에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정운영 관행”과 “소비자 이슈”, “인권”, “노동”, “지역사회참여와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지만 사업관리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표에서 평균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되어졌다. 반면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부터 사업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환경” 성과에서 평균 이상의 충족률을 보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부처의 정책을 위하여 다른 부처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표의 점수가 타부처 공공기관 보다 낮게 나온다면 타부처 공공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담당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4〉 공공기관 주무부처별 ISO 26000 이행수준 총족률

(단위: %)

	프로세스	성 과							총 점
		기관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 여와발전	
경찰청	72.22	100.00	85.42	90.63	90.32	100.00	100.00	96.88	85.55
공정거래위원회	58.33	100.00	77.08	89.06	65.15	94.74	90.91	71.43	72.96
교육과학기술부	80.88	95.77	83.21	92.74	76.02	96.07	91.96	85.26	84.78
국가보훈처	57.22	90.00	86.21	93.75	83.33	94.74	96.67	92.86	78.49
국무총리실	69.39	86.84	79.97	89.85	53.77	91.82	91.65	68.10	75.15
국방부	54.44	40.00	58.33	77.42	63.16	86.84	83.33	78.57	65.55
국토해양부	84.10	94.23	88.22	93.21	77.73	97.67	95.91	90.11	87.61
금융위원회	79.49	92.73	87.68	95.52	67.07	95.75	93.78	84.44	83.94
기획재정부	61.85	83.33	91.29	98.29	61.45	93.06	83.33	86.67	76.33
노동부	77.39	93.00	82.67	89.72	71.48	96.52	97.42	87.95	83.12
농림부	75.74	96.67	84.74	92.56	73.71	97.49	96.94	81.88	83.15
농촌진흥청	77.78	100.00	84.48	93.55	82.86	92.11	93.75	84.38	84.77
문화재청	90.00	100.00	94.00	87.50	88.33	89.29	89.29	73.33	88.92
문화체육관광부	76.26	96.33	81.88	91.48	65.66	95.33	95.65	81.20	81.40
방통위	78.89	95.00	85.57	91.28	58.52	91.49	90.77	62.50	79.77
방위사업청	63.33	70.00	79.63	95.31	81.25	100.00	100.00	80.00	79.33
법무부	88.33	100.00	88.17	90.49	70.14	96.15	95.77	87.22	87.51
보건복지부	80.89	94.00	84.29	91.25	59.40	94.00	95.63	73.91	81.83
여성가족부	78.33	100.00	86.26	87.92	58.90	95.81	100.00	95.00	82.67
외교통상부	74.81	76.67	81.64	86.30	56.35	97.32	96.15	74.81	78.29
중소기업청	80.32	98.57	76.67	86.89	58.36	91.47	94.37	74.80	79.87
지식경제부	78.56	93.45	84.14	93.52	81.49	95.29	92.69	85.45	84.90
특허청	61.67	100.00	77.31	92.81	47.31	96.05	98.21	78.33	73.41
행정안전부	74.17	100.00	81.19	91.10	67.43	94.08	96.89	76.20	80.55
환경부	72.50	90.00	85.13	93.51	82.74	97.37	93.19	91.88	83.55
평 균	77.64	93.56	83.72	92.13	71.41	95.32	94.02	82.68	82.88

IV. 시사점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UN Global Compact(UN GC)에 가입한 시기를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공정과 정의의 성과가 발전적으로 창출될지는 의문이다.

간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공공기관의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과 UN GC에 참여한 기관 수만으로 비교해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은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도입하여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당시 산업자원부나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수동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참여하였다가 현 정부 초반기에 활동을 중단하였고 후반기에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채택하면서 다시 도입하거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관 자체적인 지속경영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거나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점검하는 ISO 26000이 2010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으나 특히 환경적 성과와 지역사회 발전과 참여 성과지표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별 고유 정책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더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 지표를 추가하였고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일부 추진하는 공정사회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가 발전적으로 창출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단지 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이나 지역에 대한 단순기여 차원에서 머물러 수동적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의미만을 가지기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평등성의 완화나 내용적,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이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갖는 사회적 기대가 아닐까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UN GC에 가입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연구(라영재·윤태범, 2010)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정사회 추진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가지는 비효율성을 스스로 극복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IPR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한 사회 종합정책연구』, 20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자료집』, 2011
-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라영재, 「공공부문의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9
- 신중섭, 「공정사회 새로운 지평」, 『지식의 지평』 제11호, 한국학술협의회 (편), 2001.
- 오균, 『공정사회 1년의 회고와 공생발전 과제』, 2011
- 이동원,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관한 연구—ISO 26000 Committee Draft를 중심으로』, 2009
- 이승훈,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지식의 지평』 제11호, 한국학술협의회 (편), 2011
- 이중서,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과 전망』, 2010
-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 AEP, 2011 *American Electric Power Corporate Accountability Report*, 2011
- Elkington, J., “The Triple Bottom Line,” in M. J. Epstein and K.O.Hanson (eds.), *The Accountable Corporaton*. vol. 3. Westport, CT, 2006
- Eptein, Marc j., *Making sustainability work : best practices in managing and measuring corporat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 2008
- Eptein, Marc j. and M. J. Roy., Strateg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rojects in SMEs,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9-3, 2000
- Werther, William B. and David Chandler., *Strateg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in a global environment*, SAGE Pub, 2011



GRI,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tistics Publication year 2010*, 2011
UN,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 Anniversary
Edition*, 2010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I. 서론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앞으로도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달, 소득증대 등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등도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요인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출이 증가하다가는 수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책은 주로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절감정책 등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제 개발이 주요 내용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험료를 인상이 주된 정책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고지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행 체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1〉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조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	11.6	13.9	16.8	18.6	20.3	22.4	25.3	28.9	31.2	33.6
- 보험료 등	9	10.9	13.4	15.1	16.6	18.6	21.6	24.8	26.5	28.7
- 정부지원	2.6	3	3.4	3.5	3.7	3.8	3.7	4.1	4.7	4.9
국고	2.6	2.6	2.8	2.9	2.8	2.9	2.7	3.1	3.7	3.8
국민증진기금	0	0.4	0.6	0.6	0.9	0.9	1	1	1	1.1
지출	14.1	14.7	15.7	17	19.2	22.5	25.6	27.5	31.2	34.9
- 보험급여비 등	13.3	14	15	16.2	18.3	21.6	24.6	26.5	30.2	33.8
- 관리운영비	0.7	0.7	0.7	0.8	0.9	0.9	1	1	1	1.1
당기수지	-2.4	-0.8	1.1	1.6	1.2	-0.1	-0.3	1.4	0	-1.3
누적수지	-1.8	-2.6	-1.5	0.1	1.3	1.2	0.9	2.3	2.3	1
수지율(지출/수입)	120.7	105.5	93.6	91.6	94.2	100.3	101.1	95.3	100	104

주: 현금수지기준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 정률로 부과하고 국고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보조하고 있다(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그러나 현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2011년 말 종료되었고 동법의 개정안을 통해 현 국고지원 근거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현행 체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연혁, 규모 등을 살펴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연혁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의 변화는 크게 국고지원 도입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기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고지원 도입기(1988년~2001년)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50%씩 분담하여 국고지원이 없었다. 그런데 1988년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에 대해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여기서 50%는 정부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과 동일하다.

원래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 최하위 4분의1 계층 보험료의 50%, 차상위 4분의1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 수준별 보험료 차등이 어렵게 되자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지역가입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보험료를 50%씩 분담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분담해 줄 고용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 영세사업자, 노인, 실업자 등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공부조적 성격으로 재정이 지원되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고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자체 재원조달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 추정치 및 관리운영비 소요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확보하고, 관리운영비를 전액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조합별로 세대 및 피보험자 수를 감안하여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와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서 찾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1977년 직장근로자 의료보험법과 1978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조합연합회(공단)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일부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공교 의료보험공단과 통합되면서 국민의료보험법을 시행, 시행령 제32조에서 국고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 수준별 보험료 차등이 어렵게 되자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2002년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32조 (국고부담)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의 관리운영비용
2. 지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역피보험자의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4. 의료보험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5.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에 다액의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산상 부족금의 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부담액과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기(2002년~2006년)

2000년 7월,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과 통합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 건강보험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3항에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국고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고지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무리한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2002년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02년부터 200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일반회계에서뿐만 아니라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동법 제15조에서는 국가지원 규모 및 방식을 명시하였는데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보험 재정의 50%이며 이 중 40%p는 일반회계에서, 10%p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2005년 지원율을 35%p, 15%p로 조정).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①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이하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재정상황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변화도
제안되었다.

국고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는 건강보험 정보화 촉진¹⁾, 병상²⁾ 및 고가 의료장비³⁾ 규제 등 지출억제 노력도 명시하였다. 또한 2006년까지 5년 내 보험재정 적자 해소와 재정건전화 회복을 목표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자, 의약계, 가입자까지 4자간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보험자는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여 수입 확보에 노력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조정 단행을 약속하였다. 의약계는 과잉진료 및 허위·부당청구를 일소하고,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보완, 약제비 절감정책을 제시하였다. 가입자는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의료서비스의 과·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단기적인 재정상황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변화도 제안되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전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검색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약계에 대한 개혁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규제, 의약품 유통개혁, 과도한 병상 증가 억제, MRI 등 고가 특수장비 설치 규제 및 공동활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비용절약적 의료 이용 유도,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포함하였다. 가입자에게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요구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기(2007년~2011년)

2006년 말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1)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이용편의와 건강보험에 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3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14조 1항, 의료기관은 보건 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 의료 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역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통해 국고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축소하였다. 2000년 지역 및 직장보험이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행해 온 지역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대신 정부지원액의 사용 용도를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장하였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조였는데,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실업자, 휴직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경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비 지원에 사용을 한정했는데,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 흡연유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원조항을 추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 ④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에 대한 보험급여

「국민건강증진법」부칙 제7조

-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Ⅲ.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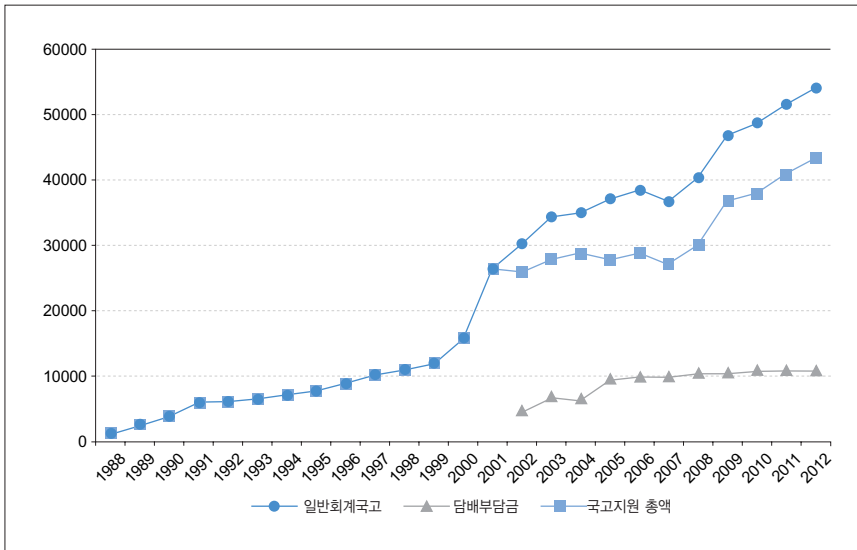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6조 108억원으로 작년(5조 7,102억원)에 비해 3,006억원(5.3%) 증가하였다. 이 중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국고보조액은 5조 4,06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조 3429억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조 631억원을 지원받는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작년 4조 794억원에 비해 2635억원(6.5%)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2011년 지원액과 동일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절대적 액수는 지난 2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적용된 2002년에는 담배부담금으로부터의 이전 덕분에 국고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6조 10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006억원 증가하였다.

[그림 1]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단위: 억원)



지역급여비 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국고지원 도입 첫해인 1988년에 54.5%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여 1999년 24.6%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적용된 2002년~2006년에는 지역급여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이 42~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국고지원 비율이 특별법상의 5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국고지원 규모 결정 시 건강보험 지출이 결

2007년부터는 국고지원을 지역가입자 보조에 한정하지 않고 총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산기준이 아닌 예산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가입자 지출 규모를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그 규모의 50%로 국고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는 국고지원을 지역가입자 보조에 한정하지 않고 총재정의 일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표 2〉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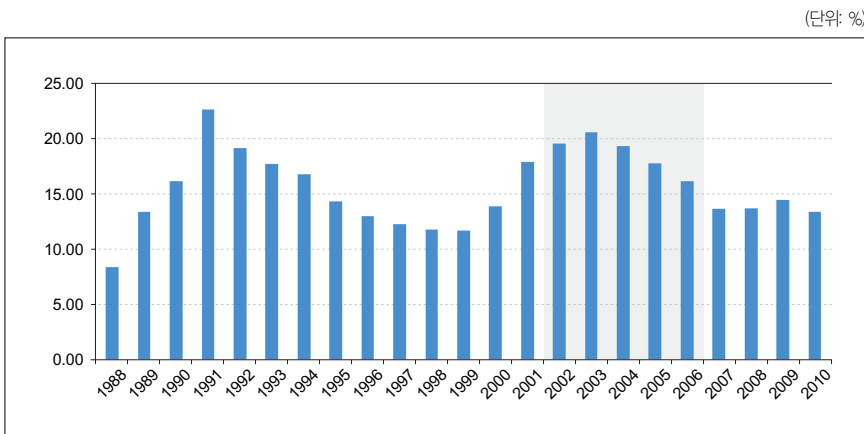
연도	일반회계국고	담배부담금	지역급여비지출	지역급여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
1988	945		1,733	54.5
1989	2,205		4,339	50.8
1990	3,639		10,075	36.1
1991	5,868		11,572	50.7
1992	5,924		13,988	42.4
1993	6,381		16,640	38.3
1994	6,924		19,196	36.1
1995	7,553		23,649	31.9
1996	8,723		30,172	28.9
1997	9,954		36,025	27.6
1998	10,760		41,610	25.9
1999	11,656		47,289	24.6
2000	15,528		49,523	31.4
2001	26,250		68,299	38.4
2002	25,747	4,392	70,525	42.7
2003	27,792	6,446	74,370	46.0
2004	28,567	6,263	77,019	45.2
2005	27,695	9,253	81,844	45.1
2006	28,698	9,664	90,320	42.5
2007	27,042	9,676	98,513	37.3
2008	30,023	10,239		
2009	36,566	10,262		
2010	37,930	10,631		
2011	40,794	10,631		
2012	43,429	10,631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국회예산정책처(2010)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았다. 국고지원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지출 대비 국고비원 비율이 8.7%에 불과했으나 1989년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1991년 국고보조 비중이 23.6%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국고보조 비중이 감소하다가 1998년 지역 및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1999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국고지원 비중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었던 2002년~2006년에는 국고보조 비중이 20%를 상회하였고, 특별법이 종료된 2007년부터는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이 15%를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2006년에는 국고보조 비중이 20%를 상회하였고, 특별법이 종료된 2007년부터는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이 15%를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



출처: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9; 국회예산정책처(2010)

평균적으로도 국고지원이 도입된 1988년에서 2001년 사이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15%, 특별법 제정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되었던 2002년~2006년에는 19%로 증가하였고, 특별법이 종료되면서 2007년 이후에는 국고지원 비중이 지출 대비 14%로 감소하였다.

<표 3>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

(단위: %)

시 기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 평균
국고지원 도입기(1988년~2001년)	15.5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기 (2002년~2006년)	19.44
「국민건강보험법」시행기(2007년~2011년)	14.36 ¹⁾

주: 1) 2007년~2010년 평균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므로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17% 정도이다.

현행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 비중 평균은 1988년~2001년에는 2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었던 2002년~2006년에는 23%까지 증가하였다가 2007년 이후 17%로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한해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기금 수입의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과 함께 보험료 실제 수입액이 아닌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므로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17% 정도이다.

〈표 4〉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보험료	국고지원액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 비율	평균
1988	11,465	945	8.24	20.47
1989	14,589	2,205	15.11	
1990	18,835	3,639	19.32	
1991	23,317	5,868	25.17	
1992	26,582	5,924	22.29	
1993	28,586	6,381	22.32	
1994	31,874	6,924	21.72	
1995	36,007	7,553	20.98	
1996	41,754	8,723	20.89	
1997	48,787	9,954	20.40	
1998	52,550	10,760	20.48	
1999	63,056	11,656	18.49	
2000	72,288	15,528	21.48	
2001	88,562	26,250	29.64	
2002	109,277	30,139	27.58	23.40
2003	137,409	34,238	24.92	
2004	156,142	34,830	22.31	
2005	169,277	36,948	21.83	
2006	188,106	38,362	20.39	
2007	217,287	36,718	16.90	17.00
2008	249,730	40,262	16.12	
2009	261,661	46,828	17.90	
2010	284,577	48,561	17.06	

출처: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회예산정책처(2010)

IV.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해외사례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조세방식(베버리지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비스마르크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세방식을 택한 국가는 영연방 국가(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가 있다. 반면,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가 있다. 조세 방식(Tax-Based System)은 건강보험 재원 대부분을 일반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시스템이고,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각출한 보험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국가들 역시 재원의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고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

2010년 발표한 OECD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22.4%인데,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유럽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국고지원 비중을 가진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이다. 오스트리아는 국고지원 비중이 41.4%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프랑스는 국고지원 비중이 6.6%로 가장 낮다.

조세방식은 건강보험 재원 대부분을 일반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시스템이고,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각출한 보험금으로 조달한다.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유럽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병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국고(지방재정 포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국가들의 공공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

(단위: %)

	공공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율	총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중
오스트리아	41.4	76.4
벨기에	16.5	75.1
체코	9.7	85.2
프랑스	6.6	79
독일	11.7	76.9
헝가리	17.6	70.6
일본	18.9	81.3
한국	22.4	54.9
룩셈부르크	22.7	90.9
네덜란드	7.1	81.4
폴란드	17.4	70.8
슬로바키아	10.2	66.8
스위스	27.8	59.3

출처: OECD Survey (2010)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유럽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병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국고(지방재정 포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국회예산정책처, 2010), 이는 유럽의 공공병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5〉는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주요국의 국고지원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스위스)는 주로 급여보다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특정 질병에 대한 보조는 분만수당에 대한 보조가 많았다(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지출의 특정 항목에 대한 보조로는 관리운영비(벨기에, 일본)와 보험급여비(일본, 헝가리, 룩셈부르크) 보조가 있고,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재정 총액에 대해 국고가 지원된다.

〈표 6〉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국가명	국고보조 방식
오스트리아	- 분만수당의 70% - 병원비의 일부
벨기에	- 관리운영비 - 건강증진·예방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보조, 지역공동체와 병원시설에 대한 투자 자동차 보험료, 입원보험료 및 약제판매수입에 대해 과세
체코	- 건강보험공단(VZP)의 지불능력 보증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룹(학생, 아동, 육아휴직 중인 부모, 연금수령자, 실업자 등)의 건강보험료
프랑스	- 공공병원의 자본비용(주정부 및 지방정부) - 일반회계 국고보조는 1% 이하: 공무원, 군인 등이 속해 있는 특별제도에 국가가 고용주로서 재원 부담 - 준조세 성격을 갖는 분담금과 사회보장목적세(재정의 47%): CSG(일반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적자상환분담금(CRDS), 사회연대분담금(C3S), 알코올 및 담배소비세, 의약품 광고세 - 농업자 자영제도에는 농산물에 과한 목적세와 일반회계에서 공동 지원
독일	- 분만수당비용 - 연금수급 농부의 보험급여비 - 의료보험 비관련 비용
헝가리	- 재정적자 전액 - 아동 급여비용
일본	-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의 일부 혹은 전액: 직장근로자,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조합관장 건강보험 - 보험급여비의 일부: 정부관장 건강보험
룩셈부르크	- 분만수당 전액 - 현금급여의 29.5%
네덜란드	- 보험료 수입의 50% (소득비례세금으로 징수) - 보험료 수입의 5%는 위험조정기금(지방정부 보조금)
스위스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보조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0), 『각 국가의 WHO 최근 자료』

동유럽 국가인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해 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유럽 국가인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대신 재무부가 건강보험기금의 운영에서부터 재정 감독, 규제 등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보건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체코는 재무부에서 경제적 약자(아동, 실업자, 학생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정부가 건강보험공단(VZP)의 지불능력을 보증한다(WHO, 2009). 즉, 재정이 고갈된 보험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부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공단(VZP)의 재정상황을 규제·감독하며, 약제비 급여와 가격을 결정한다.

사회보험제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 VZP의 감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보건부, 재정부, 고용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한다. 또한 다수 건강보험기금은 성과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가을, 내년도 재정 및 운영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보건부와 재정부 검토 후 중앙정부로 보내져 하원(Chamber of Deputies)에서 승인되어야 차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기금은 재정자료 및 다른 요구자료를 보건부와 재정부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만약 보험기금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등 큰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험기금의 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는 보험기금의 필수항목(건강증진 프로그램, 투자, 운영비, 급여비 등) 및 항목 간 이전 제한 등 내부 회계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기금 설립을 위한 면허권(licensing)은 보건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헝가리는 1989년 건강보험을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고지원이 여전히 주요한 재원으로 작용한다(WHO, 2004). 보건부는 건강보험의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교육부, 재무부 및 내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약가 결정 시 보건부 및 NHIFA와 함께 협상하고, 건강보험기금(Health Insurance Fund, HIF)의 감독기관인 건강보험기금 관리청(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Administration, NHIFA)은 국무총리실에서 재무부(1999-2000), 그리고 2001년부터는 보건부로 이전되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프랑스 국민의 약 90%는 일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50%, 일반사회보험분담금(CSG) 및 각종 목적세(담배, 자동차, 의약품 광고세 등)에서 40%, 그리고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WHO, 2009). 여기서 CSG와 각종 목적세를 국고지원으로 간주한다면 국고지원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 국고지원은 총지출 대비 5~6%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6년 개혁을 통해 개인종합소득에 0.5%의 사회보장적자상환분담금(CRDS)을 부과하고 사회보장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부채상환기구(CADES)라는 특별기금을 설립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이 CRDS와 CADES가 1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사회보장적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CADES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CRDS와 CADES의 존립기간을 부채상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부채를 계속 다음 세대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2005년 사회보장재정법에 CADES에 새롭게 전가되는 부채는 기구의 수입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사회보장 부채 상황에 필요한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가 및 약가를 결정하는 프랑스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래서 1996년부터 국회는 지출억제를 위해 건강보험 지출증가율 상한(ONDAM)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이 지출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적인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거의 없었다가, 2004년 국회 내에 사회보장적자 감시위원회(Alert committee)가 설립되면서 사회보장 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의회에서 미리 승인된 예상 수준을 1% 이상 상회할 경우 의회 및 건강보험기금, 그리고 정부에 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보건부 산하 사회보장청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예를 들면 의약품 및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수가인상 연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 정부는 실제 지출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 연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상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역시 건강보험 지출 중 국고지원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다(2009년 기준, Federal Statistical Office). 주요 건강보험 업무를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정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보험기금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회의 자치조합에 규제 지침만 전달한다. 가장 중요한 기구는 Federal Joint Committee(G-BA)로 어떤 서비스가 급여에 포함되는지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규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가 및 약가를 결정하는 프랑스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V.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

2011년 4월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연간 3조~5조 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적자가 발행하고 있는 건보 재정위험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국고지원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이 2016년까지 연장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

2011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이 종료되면서 향후 국고지원 지속 여부부터 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요한가 등 정당성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 그리고 국고지원을 한다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한정해 지원해야 하는지 등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1. 국고지원의 규모

2011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이 종료되면서 향후 국고지원 지속 여부부터 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보험제도로 운영하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총재원에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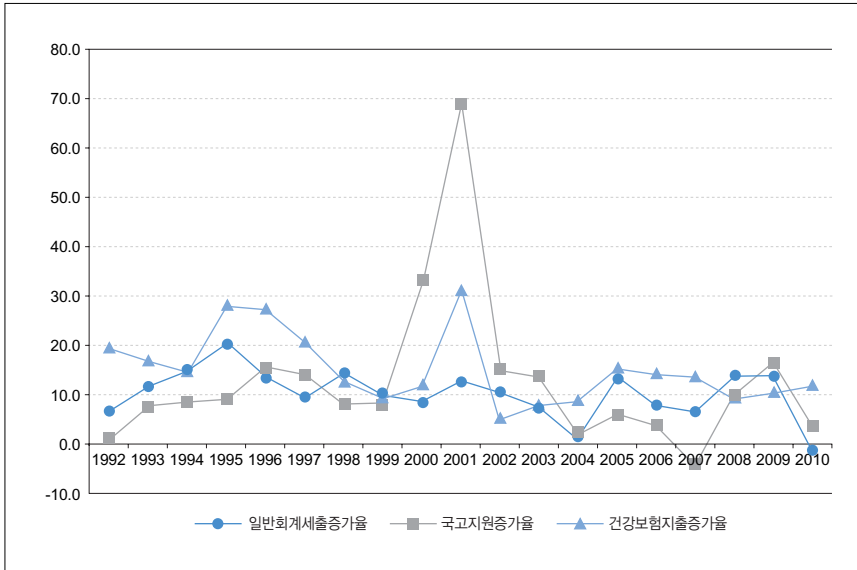
그런데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먼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향후 고령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낮은 보장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자는 논리이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보험제도로 운영하는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은 '사회보험의 자기책임성의 원리'에 위배되고,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믿고 보장성 확대 등 지출 확대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에 그 재정부담을 떠넘길 여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2011년 기준 5.80%)은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고 국고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율 및 건강보험 지출증가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에 따른 급여비 증가로 인해 국고지원이 급증하였다가, 그 증가율은 서서히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는 대체로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이 높다가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문제되자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은 서서히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세계적인 재정건전화 기조에 편승하여 재정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은 경제위기 시점에 약

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 계속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일반회계 세출증가율과 국고지원증가율 비교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건강보험통계연보』

특징적인 현상은
직역 보험자 통합과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이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직역 보험자 통합과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이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1992년에서 2010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은 10.3%인 데 반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은 15.1%, 국고지원증가율은 12.6%이다. 사실상 국고지원증가율은 일반회계 지출증가율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규모가 작아 보이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에 비해 국고지원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출증가가 다른 세출증가보다 큰데 건강보험 지출에 상응하여 국고지원을 계속 늘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오영호(2011)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정부재정 세출증가율 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연동하는 현 제도가 급여비 지출 억제(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건강보험 지출이 다른 정부부문의 지출보다 지속적으로 현저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억제의 노력이 부족하다

실제 지출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제 지출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매년 건강보험 지출증가율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실제 지출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제 지출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먼저 건강보험 지출을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통제할 후, 국고지원 증가율을 일반회계 세출증가율과 연동시키는 방식의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다. 국고지원 증가율을 $\text{Min}(\text{보험료 예상수입의 } 20\% \text{로 정할 때 증가율, 일반회계 세출증가율}) + \text{건강보험 지출억제 인센티브}$ 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text{Min}(\text{보험료 예상수입의 } 20\% \text{로 정할 때 증가율, 일반회계 세출증가율})$ 은 국고지원 증가가 일반회계 세출증가보다 클 수 없음을 의미하고, 만약 2010년처럼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직전연도(2009년) 값을 이용한다거나 직전 3년의 가중평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text{Min}(\text{ , })$ 함수에 더해지는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지출증가 목표 달성 결과에 연동되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지출억제에 성공하면 그에 대한 보상(+), 실패하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 말 시점에서 2008년 국고지원액을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2008년 국고지원액 증가율은 $\text{Min}(2008\text{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 20\% \text{로 계산한 국고지원증가율, } 2007\text{년 일반회계 세출증가율}) + \text{지출억제 목표에 연동된 인센티브} = \text{Min}(9.7\%, 6.6\%) + \alpha = 6.6\% + \alpha$ 로 계산된다. 일단 Min 함수에 의거하면,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연동되는 경우(9.7%)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출억제 목표에 연동된 인센티브 α 를 더해야 한다. 만약 2007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가 2006년 수준(14.2%)에서 4.2%p 감축한 10%였다면, 2007년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이 13.5%이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따라서 10%와 13.5%의 차이인 -3.5% 혹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함수값에 의거하여 국고지원 증가율을 낮춰준다. 만약 2007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가 2006년 지출증가율(14.2%)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2007년 건강보험 지출증가율(13.5%)이 2006년(14.2%)에 비해 감소하였으니(지출억제에 성공) 그 차이인 0.7%p에 연동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2008년 국고지원액은 Min 함수로 계산된 국고지원액 증가율 6.6%에 0.7%p 혹은 0.7%p의 어떠한 함수($xx\%$)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지출억제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의료의 질을 해치지 않는 지출억제 방식은 무엇인지, 부문별 지출(진료비, 약제비

등)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수립 등은 각각 별도의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고의 과소지원 문제는 재정부와 보건부가 보험료 수입을 추계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이다. 그러나 이후 보건부에서 실제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보험료 수입액 결산치와 비교하면 재정부가 추정한 보험료 '예상' 수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재정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을 산정⁴⁾하는 데 비해 실제 보험료 수입은 그보다 액수가 늘 크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액 비중은 16~18%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9년간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로 계산한 국고지원금 대비 보험료 예상 수입에 근거하여 지급된 국고지원금 차이의 누적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고의 과소지원 문제는 재정부와 보건부가 보험료 수입을 추계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표 7〉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국고지원액 비중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예상 보험료의 20%(A)	36,718	40,779	48,100	49,763
실제 보험료의 20%(B)	43,467	49,946	52,332	56,298
차액(A-B)	-6,739	-9,684	-6,606	-6,644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지원금 비중	16.9	16.3	18.4	17.7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0)

그러나 재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결정한 국고지원 규모(A)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B)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국고가 과소지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현행법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국고지원 계산에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겨 예산편성 시보다 정확하게 보험료 수입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고지원법을 보험료 '예상' 수입에서 '실제' 수입의 20%로 바꾸고 사후정산제를 활용하여 방법이 있다.

4) 얼마전 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효율화뿐만 아니라 보험료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2.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

현재 국고지원은 특정 집단(노인, 취약계층 등) 혹은 특정 질병(암, 만성질환, 희귀병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 등)을 타깃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고지원 방식이 2006년까지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의 일부를 보조했던 것과 같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재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고지원을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 등으로 한정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구성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건강증진기금 총수입의 65%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잠재적인 의로서비스 수요가 높은 흡연자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유해식품(술과 정크푸드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식품섭취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더불어 세수입 증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겠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 및 가격왜곡 효과, 행정비용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과제로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고 및 권고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일반 재정과 동시에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향후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달 등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는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큰 틀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중 극히 일부, 즉 수입 측면에서도 국고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효율화뿐만 아니라 보험료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수용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IRI**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2010. 12.
오영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1.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2006
- WHO, Czech Republic,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2009
WHO, France,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2010
WHO, Hungary,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2004
WHO, Germany,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2004



제2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 한국조세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2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가 지난 2011년 10월 31일 마감됐다. 대학생 논문 부문에서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이, 초·중·고 글짓기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으며, 2011. 12. 28(수) 11:00 한국조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재정포럼』에서는 이번 호에 대학생 논문 우수상 중 1편을 먼저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재정정책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한승오/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산업공학과 2

• 요약 •

본 논문은 구조적 벡터자기모형(SVAR)을 가지고 재정정책변수인 재정지출과 재정순수입의 충격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SVAR모형인 Sims의 인과사슬모형과 Blanchard-Perotti(BP)모형에 대해 함께 분석하여 두 가지 모형의 식별의 차이를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기존의 5변수 SVAR모형에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의 식별을 돕는 실질임금을 포함하여 6변수 SVAR모형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과사슬모형과 BP모형에 대해서 재정지출충격과 재정수입충격이 각각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 추정된 BP모형의 계수들이 교란항의 하방행렬(lower matrix)의 분해로 결정되는 인과사슬의 계수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데서 기인하였다. 직교충격반응함수(orthogonal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분석하면, 재정지출에 의한 충격은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실질GDP 역시 감소시키며, 물가를 떨어뜨리고, 명목이자율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순수입에 의한 충격은 실질임금은 증가시키며 실질GDP 역시도 증가시키고 물가는 감소를 가져왔으며, 명목 이자율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기본적인 재정정책을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4분기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선형 결합하여 도출된 3가지 대표적인 재정정책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지출충격(deficit-spending shock)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음(-)의 영향을, 실질GDP는 음의 영향을, 물가는 양(+)의 영향을 받으며, 명목 이자율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재정수입 감소에 의한 재정적자지출(deficit-financed tax cut)정책으로 이 경우,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실질GDP는 감소하였으며, 명목 이자율의 경우에는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모두 감소시켜 재정수지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재정충격(balanced budget spending shock)이다. 이 재정정책에 의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가 실질GDP 역시 증가시켰으며, 물가는 떨어뜨리는 효과를, 명목 이자율의 경우에는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정책이 비(非)케인지언 효과

(non-Keynesian)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고려한다면, 재정지출의 감소와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감세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나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I. 서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와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위기는 각국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적 시도들을 촉구하였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이들 정책의 신중한 실행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통화정책만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활발히 소비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구체적이고 비교적 최신의 동향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재정정책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의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로 김성순(2003)이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정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허석균(2002)은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축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세출은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입의 재정축소는 GDP에 일시적 경기확정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성순(2007)에서는 SVAR를 사용하여 정부지출과 조세변화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지출총격은 GDP와 음(-)의 관계를 가지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은 GDP와 양(+)의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재정정책이 non-Keynesian 효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김종석(2007)은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 정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자료들을 모두 규합하여, 통합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변수가 국가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94년 이후 재정정책은 세입과 지출 모두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의 경우,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형 벡터자기회귀(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

형을 사용하여 연구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Fatas and Mihov(2001b)는 SVAR의 식별을 위해서 출레스키분해를 이용하였으며, Blanchard and Perotti(2002)에서는 식별을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 제약행렬로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충격변수를 재정지출과 순세입으로, 반응하는 변수를 GDP로 가지는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전자는 양(+)의 관계를 후자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냈다. Caldara, D., and Kamps C. (2007)는 우리나라의 김종석(2007)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재정정책변수인 지출과 세수입, 거시경제변수로 총 8가지를 사용한 10개의 변수에 대한 SVAR를 4종류의 식별모형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여, 재정지출충격에 대해서는 GDP는 양(+)의 관계를, 재정순수입충격에 대해서는 GDP가 일시적이지만 음(-)의 관계를 가지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가용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재정정책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SVAR모형을 사용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 거시경제시계열자료들에 추가적으로 실질임금을 포함하여 재정지출, 재정수입, GDP, GDP 디플레이터, 이자율과 실질임금의 6변수 모형을 설정하여 재정정책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들 재정정책충격이 물가와 이자율 그리고 실질임금에 미치는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표적 식별모형인 인과사슬모형과 Blanchard-Perotti(BP)모형에 대해서 각기 다른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된 두 가지 식별 모형의 명확한(distinct)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방정식에 의해서 도출된 기본적 재정충격을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선형 결합하여 하나의 재정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재정정책별로 얻어진 반응함수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구조적 VAR모형의 소개와 식별에 사용된 2개의 모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로 재정정책변수인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4개의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교충격반응함수를 정리하고 설명한다. 제Ⅴ장은 앞의 제Ⅳ장에서 도출된 직교충격반응함수를 가지고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정책과 세수절감을 통한 재정적자정책 그리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룬 균형재정정책 3가지 재정정책시나리오를 만들어 각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Ⅵ장에서는 이들 모두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II.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1996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총 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방법론의 견조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들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정의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기본적인 5변수 VAR모형은 Blanchard and Perotti(2002)에서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총정부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총정부수입(total government revenue), 이자율(interest rate)과 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GDP deflator)로 구성되어지며, 여기에 Mountford and Uhlig(2009)에서 재정정책의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고려한 추가적인 변수들 중에서 실질임금(real wage)을 포함하여 6변수 VAR모형을 구성하였다.

GDP, 이자율, GDP deflator와 임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자료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재정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GDP와 GDP deflator는 실질 계절변동 조정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자율은 무담보콜금리(1일물)를 사용하였다. 임금의 경우에는 전(全) 산업 임금을 대용치(proxy)로 사용하였으며, GDP deflator로 실질 자료로 변환한 이후 cesus X-12 방식¹⁾으로 계절 조정하였다.

통합재정수지의 항목들인 총정부지출과 총정부수입의 경우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시계열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연간 자료나 통합재정수지의 상위 항목들을 취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정수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국외 연구에서 정의된 재정정책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지출은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합으로 나타나며, 정부수입은 정부수입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준다.

$$\begin{aligned} \text{정부지출} &= \text{정부소비(경상지출)} + \text{정부투자(자본지출)} \\ &= (\text{재화 및 용역경상지출} + \text{비금융공기업 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자본이전}) \\ \text{정부수입} &= \text{정부수입} - \text{정부이전} \\ &= \text{정부수입} - (\text{이자지급 경상지출} + \text{보조금 및 경상 이전 경상지출}) \end{aligned}$$

통합재정수지의 변수들 역시 명목에서 실질로 GDP deflator로 변환시켜 주었으며, 계절조정 역시 취하였다. 이로써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변수들은 이자율을 제외하고 모두 실질, 계절조정을

1) 계절변동에 대한 방법은 김성순(2007)을 참조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GDP와 같이 총(總)합의 개념으로 정의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1인당(in real per capita terms) 변수로 변환해 주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추정 국내인구와 5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census)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플라인보간법(Spline interpol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분기별 자료로 확장하였다. 또한 GDP 디플레이터와 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인 정부지출, 정부수입, GDP, 실질임금에 대해서는 로그변환을 취하여 수익률과 같이 비율의 개념으로 변환시켜 주었다. 6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z_t^s : 1인당 실질 정부지출의 로그수준
- z_t^w : 1인당 실질 임금의 로그수준
- z_t^y : 1인당 GDP의 로그수준
- z_t^π : GDP 디플레이터율
- z_t^r : 1인당 실질 정부수입의 로그수준
- z_t^i : 단기 명목 이자율

위의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정하고자 Augmented Dickey-Fuller test(ADF)와 Phillips-Perron test(PP)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계열 변수들의 단위근(unit-root) 검정 결과

	Z_t		ΔZ_t	
	ADF	PP	ADF	PP
Spending(s)	-9.694***	-9.885***	-15.408***	-20.820***
Real Wage(w)	-0.959	-1.376	-7.024***	-7.099***
GDP(y)	-2.019	-2.518	-5.059***	-4.985***
GDP deflator(π)	-3.997**	-3.979**	-11.978***	-12.127***
Tax Revenue(r)	-7.363***	-7.366***	-12.830***	-15.186***
Interest Rate(i)	-2.232	-2.500	-4.961***	-4.742***

자료: critical value는 1%: -4.139, 5%: -3.495, 10%: -3.177 이다. 좌측은 변수의 검정통계량이며, 우측은 차분 변수의 검정통계량이다.

정부지출, 정부수입, GDP 디플레이터는 ADF, PP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에는 단위근의 존재 유무를 ADF와 PP검정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변수들을 1차 차분(difference)하여 다시 ADF와 PP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1% 유의수준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대개 VAR(p) 모형의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아카이케정보기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베이즈정보기준(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과 하난-퀸 기준(HQ: Hannan-Quinn Criterion)을 사용하여, 순차적이고 위계적으로 시차(lag)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시차 6을 대입한 경우, 그 이전 시차 1부터 시차 6까지의 각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적정시차로 1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재정정책변수의 다른 거시경제 시계열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분기별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VAR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Caldara, D and Kamps C(2007)와 같이 4분기 동안(1년)의 시차 4가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보고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III. 구조적 VAR 방법론

제III장에서는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경제시계열의 분석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VAR모형은 변수들의 동시적(contemporaneous) 관계를 식별하고 추정하기 위하여 구조형 (Structural) VAR로 발전되어 왔다.

차원(dimension)이 k인 다중 시계열 $\{Z_t\}$ 에 대해서

$$Z_t = \Pi_1 Z_{t-1} + \dots + \Pi_p Z_{t-p} + u_t = A(L)Z_{t-1} + u_t \quad (\text{식 1})$$

여기서 $A(L)$ = p차(order)의 다항식, $E[u_t] = 0, E[u_t u_t'] = \Sigma_u$ and $E[\epsilon_t \epsilon_s'] = 0$ for $s \neq t$,

의 일반적인 VAR모형식이 얻어지며, 이는 이후 언급하는 구조적 VAR와 구별하기 위해서 축약형(Reduced-Form) VAR라고 부른다.

이를 구조형 VAR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k \times k$ 의 행렬(matrix) A_0 를 위의 (식 1)에 곱해주면 아래와 같은 구조형 VAR모형식이 구해진다.

$$A_0 z_t = A_0 A(L) Z_{t-1} + A_0 u_t = A_0 A(L) Z_{t-1} + B e_t \quad (\text{식 2})$$

여기서 $E[e_t e_t'] = \Sigma_e, \Sigma_e$ 는 대각행렬이다.

축약형 VAR모형의 교란항(disturbance) $\{u_t\}$ 와 구조형 모형의 교란항인 $\{e_t\}$ 는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데, 축약형 교란항의 경우에는 회귀모형의 단순 오차항으로 해석되는데 반해서 구조형 교란항은 (식 2)의 행렬 A_0, B 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제적 충격(shock)으로 본다. 구조형 교란항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 Σ_e 는 대각(diagonal)행렬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 간에는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전제된다. 행렬 A_0 는 z_t 의 각 변수들의 동시적 관계(contemporaneous relationship)를 나타낸다. (식 2)의 행렬 A_0 와 B 의 각 계수(parameter)들에 제약이 없이는 구조적 모형은 식별되지 않으며, 이 식별제약(identifying restriction)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계량경제학의 실증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구조형 VAR를 경제분석에 사용한 Sims(1980)의 인과사슬(causal chain)모형과 보다 일반화된 다양한 거시경제 연립방정식모형에 기초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모형을 가지고 구조형 VAR를 식별하고자 한다.

1. 인과사슬모형

첫 번째 방법은 행렬 A_0 를 축약형 교란항의 공분산행렬 Σ_u 의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통한 하방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로 결정하는 인과사슬모형이다. A_0 를 대각원소가 모두 1로 주어진 하방삼각행렬로 보는 경우, $\Sigma_u = A_0^{-1}\Sigma_e(A_0^{-1})'$ 에 대해서 $\Sigma_u = PP'$ 로 분해하게 되면 $A_0^{-1} = PD^{-1}$ 로 $\Sigma_e = DD'$ 의 대각행렬 D 로 도출된다. 인과사슬의 경우에는 모형의 변수가 k 개인 경우 $k!$ 의 정렬이 가능하므로 이를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변수의 외생성이 높은 순서로 변수를 나열하는 것이 직교충격반응분석의 결과의 타당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6변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축약형 교란항과 구조형 교란항 사이의 동시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begin{bmatrix} 1 & 0 & 0 & 0 & 0 & 0 \\ -\alpha_{ws} & 1 & 0 & 0 & 0 & 0 \\ -\alpha_{ys} & -\alpha_{yw} & 1 & 0 & 0 & 0 \\ -\alpha_{\pi s} & -\alpha_{\pi w} & -\alpha_{\pi y} & 1 & 0 & 0 \\ -\alpha_{rs} & -\alpha_{rw} & -\alpha_{ry} & -\alpha_{r\pi} & 1 & 0 \\ -\alpha_{is} & -\alpha_{iw} & -\alpha_{iy} & -\alpha_{i\pi} & -\alpha_{ir} & 1 \end{bmatrix} \begin{bmatrix} u_t^s \\ u_t^w \\ u_t^y \\ u_t^\pi \\ u_t^r \\ u_t^i \end{bmatrix} = \begin{bmatrix} 100000 \\ 010000 \\ 001000 \\ 000100 \\ 000010 \\ 000001 \end{bmatrix} \begin{bmatrix} e_t^s \\ e_t^w \\ e_t^y \\ e_t^\pi \\ e_t^r \\ e_t^i \end{bmatrix} \quad (\text{식 3})$$

여기서 s 는 정부지출(spending), w 는 실질임금(real wage), y 는 GDP, π 는 GDP deflator, r 는 정부수입(revenue) i 는 단기 이자율을 의미한다.

위의 (식 3)과 같이 변수의 인과사슬구조를 설정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1) 정부의 지출은 시스템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다. 2) 실질임금은 신고전학파(Neoclassical)와 신케인즈학파(New Keynesian)에서 각각 재정지출충격에 대한 반응을 식별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Ramey and Shapiro(2008)에서는 전자의 경우 음(-)을, 후자의 경우에는 재정지출충격에 대해서 실질임금이 양(+)의 반응을 가지는 서로 상반된 부호(sign)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출에 동시적 관계를 가지는 실질임금을 두 번째 위치에 넣고 위의 정부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와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였다. 3) GDP의 경우에는 조세수입,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 충격에는 동시에 반응하지 않으나 재정충격과 실질임금에 의해서는 반응한다고 설정하였으며, 4)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조세수입과 이자율에는 동시적 반응이 없으나 다른 변수들에는 반응을 하는 것으로, 5) 정부수입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는 영향을 받고 이자율과는 동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 이자율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모든 변수들에 의해 동시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자율을 순서(Ordering)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한 것에는 중앙은행의 반응이 위의 변수들 GDP, 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반영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정부의 지출과 세수입이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2. Blanchard-Perotti의 모형

이번 식별가정은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축약형 교란항 u_t^s 와 u_t^r 은 나머지 변수들인 국내총생산, 물가, 이자율과 실질임금의 교란항에 의한 자동적 반응(automatic response)과 정책입안자의 체계적 재량적 반응(systematic discretionary response)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재량충격(random discretionary shocks)의 선형결합 형태로 구성된다. 이를 반영하여 축약형 교란항과 구조형 교란항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면 아래의 식들로 나타난다.

$$u_t^s = \alpha_{sw} u_t^w + \alpha_{sy} u_t^y + \alpha_{s\pi} u_t^\pi + \alpha_{sr} u_t^r + \alpha_{si} u_t^i + \beta_{sr} e_t^r + e_t^s \quad (\text{식 4})$$

$$u_t^w = \alpha_{ws} u_t^s + e_t^w \quad (\text{식 5})$$

$$u_t^y = \alpha_{ys} u_t^s + \alpha_{yr} u_t^r + e_t^y \quad (\text{식 6})$$

$$u_t^\pi = \alpha_{\pi s} u_t^s + \alpha_{\pi y} u_t^y + \alpha_{\pi r} u_t^r + e_t^\pi \quad (\text{식 7})$$

$$u_t^r = \alpha_{ry} u_t^y + \alpha_{r\pi} u_t^\pi + \alpha_{ri} u_t^i + \beta_{rs} e_t^s + e_t^r \quad (\text{식 8})$$

$$u_t^i = \alpha_{is} u_t^s + \alpha_{iw} u_t^w + \alpha_{iy} u_t^y + \alpha_{i\pi} u_t^\pi + \alpha_{ir} u_t^r + e_t^i \quad (\text{식 9})$$

위의 (식 4)~(식 9)로 표현되는 SVAR모형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축약형 교란항의 공분산행렬이 12개의 성분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현재의 시스템 계수들은 21개가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도식별제약(exact identifying restriction)이나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을 해 줘야 유의적으로 하나의 SVAR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과사슬모형(casual chain model)과 달리 제약을 할 때 9개의 계수들에 0을 대입하지 않는 대신 각 6개의 변수들의 경제학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들 각 계수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Perotti(2005)는 변수들 간의 탄력성을 구해 주었으며, 이 경우 정부 순세입의 GDP에 대한 탄력성(α_{ry})은 1.85로, 인플레이션(가격)에 대한 탄력성($\alpha_{r\pi}$)은 1.25로 설정하였다²⁾. 국내 연구 결과의 경우 박기백과 박형수(2002)에 따르면 순세입의 GDP 탄력성은 1.09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순세입의 GDP 탄력성은 1.09로, 가격 탄력성은 1.25를 대입하였다.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식 4)의 경우에, Perotti(2005)에서는 정부지출이 자본이전 비용을 차감하였으므로,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α_{sy})을 0으로 설정하였으며, 김영덕(2007)에서는 재정지출 중 실업관련 재정지출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자동조절적 반응이 존재한다고 보아 재정지출의 GDP탄력성($\alpha_{s\pi}$)을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은 -0.28이다. 단, 김영덕(2008)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변수를 정의할 때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제외하였으므로 보다 비탄력적인 -0.2를 대입하도록 한다. 또한 재정지출의 가격탄력성($\alpha_{s\pi}$)은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지출의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재화 및 용역과 같이 직접적으로 용역을 맡겨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Perotti(2005)는 이를 반영, 재정지출의 가격 탄력성을 -0.5로 설정하였으며, 김영덕(2007)에서는 이를 0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erotti(2005)의 재정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사용하도록 한다³⁾. 재정지출의 이자율 탄력성(α_{ri})과 재정수입의 이자율 탄력성(α_{si})의

2) 김영덕(2007)에서는 순세입의 가격탄력성을 0.7, 1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았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가격탄력성의 값이 추정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마찬가지로 김영덕(2007)의 재정지출의 가격 탄력성인 0을 대입하여 실제로 추정하였지만,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우, 재정정책변수의 정의에서 이자와 관련된 세부항목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합재정수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되어 온 기존의 국내 연구 설정과 같다.

앞선 인과사슬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재정지출의 의사결정을 재정수입에 대한 의사결정보다 앞서 시행한다는 가정 아래, β_{sr} 를 0으로 설정한 이후 β_{rs} 를 추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축약형 교란항과 구조형 교란항의 행렬식들 중 언급하지 않은 계수들에 대해서는 인과사슬의 가정과 동일하다.

최종적으로 앞서 언급한 식별제약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begin{bmatrix} 1 & 0 & 0.2 & 0.5 & 0 & 0 \\ -\alpha_{ws} & 1 & 0 & 0 & 0 & 0 \\ -\alpha_{ys} & 0 & 1 & 0 & -\alpha_{yr} & 0 \\ -\alpha_{\pi s} & 0 & -\alpha_{\pi y} & 1 & -\alpha_{\pi r} & 0 \\ 0 & 0 & -1.09 & -1.25 & 1 & 0 \\ -\alpha_{is} & -\alpha_{iw} & -\alpha_{iy} & -\alpha_{i\pi} & -\alpha_{ir} & 1 \end{bmatrix} \begin{bmatrix} u_t^s \\ u_t^w \\ u_t^y \\ u_t^\pi \\ u_t^r \\ u_t^i \end{bmatrix} = \begin{bmatrix} 1 & 00000 \\ 0 & 10000 \\ 0 & 01000 \\ 0 & 00100 \\ \beta_{rs} & 00010 \\ 0 & 00001 \end{bmatrix} \begin{bmatrix} e_t^s \\ e_t^w \\ e_t^y \\ e_t^\pi \\ e_t^r \\ e_t^i \end{bmatrix} \quad (\text{식 10})$$

Perotti(2005)의 식별제약을 인과사슬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은 우선, 행렬 A_0 의 대각성분의 윗부분에 인과사슬에서는 모두 0으로 제약을 가했지만, 여기에서는 4개의 0이 아닌 제약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외들은 인과사슬의 가정과 달리 가장 많은 식별제약을 설정한 변수인 정부의 순수입의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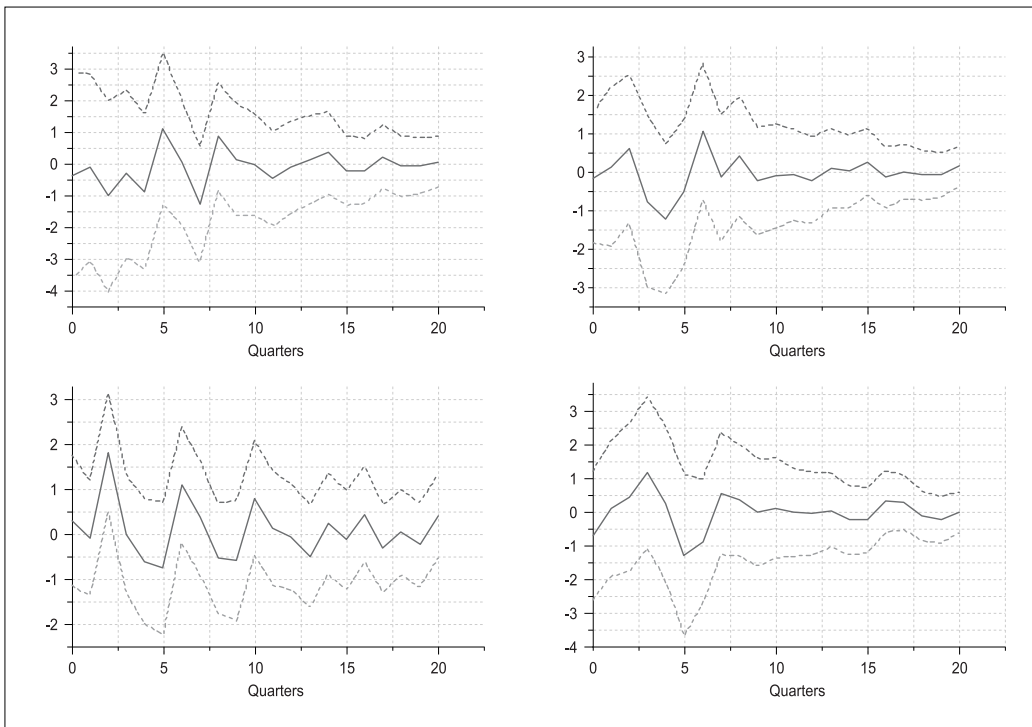
IV. 재정수지충격에 대한 결과

제Ⅲ장에서 소개한 2가지 모형; 인과사슬모형(Causal Chain model)과 BP모형(Blanchard and Perotti model)을 직교충격반응분석(orthogonal impulse response analysis)을 통해 재정정책변수들의 충격반응을 살펴보도록 한다. 충격반응함수는 충격을 가하는 변수에 의해서 단위충격(unit shock) 혹은 1단위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가 가해지고 이에 대해서 여러 변수들이 표준편차만큼의 단위로 제시되게 된다. 따라서 직교충격반응을 퍼센트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충격변수인 재정정책변수의 표준편차로 기존의 직교충격반응들을 나눠줌으로써 충격의 단위를 표준편차만큼이 아닌 1퍼센트(%)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변환을 통해 충격의 단위를 무차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재정정책변수에 대한 다른 여러 변수들의 반응을 승수(multiplier)의 개념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1. 재정지출충격반응 분석

재정지출(government spending)을 충격으로 하는 반응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전자는 인과사슬식별모형에 근거한 결과이고, 후자의 경우 BP모형에 의한 결과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식별모형에 대해서 재정지출충격반응함수의 값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실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닌데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식별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순서(ordering)배열을 할 때 재정지출을 가장 먼저 놓고 계수추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식별모형 두 가지 모두에서 처음부터 자유롭게(freely) 추정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수를 포함하지 않은 재정지출충격(e_t)에 의한 충격반응함수의 분석이 같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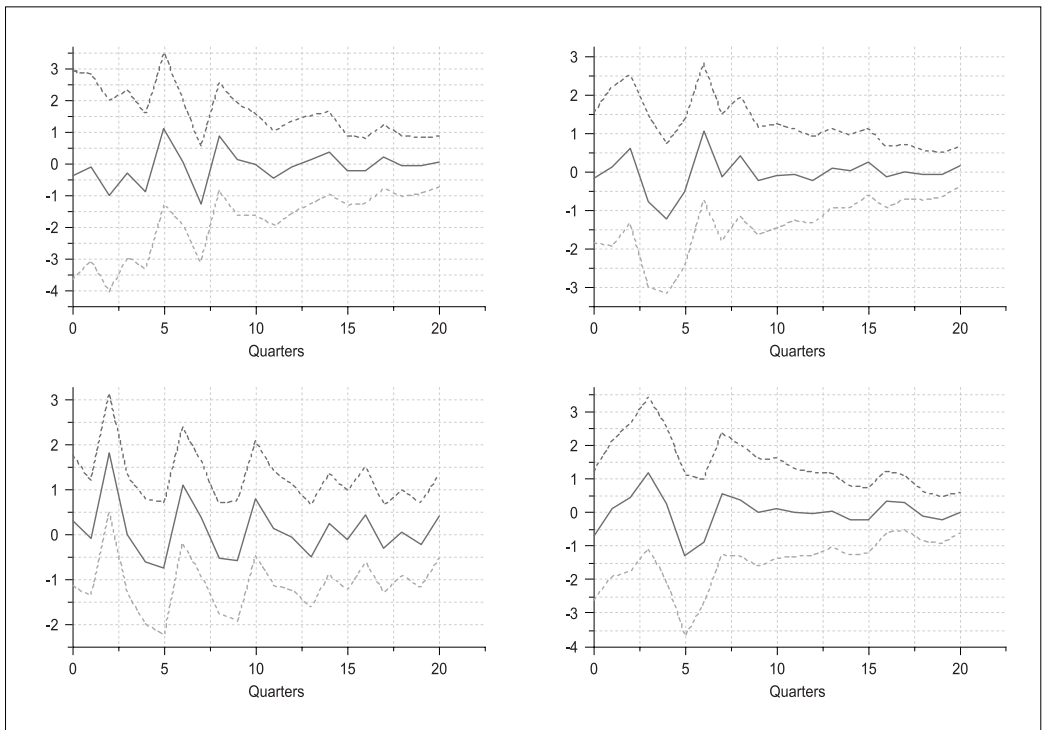
[그림 1] 인과사슬모형에서의 재정지출충격반응함수



자료: 충격이 재정지출이며,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재정지출충격반응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12기까지의 누적탄력성은, 실질임금은 -2.300, GDP -0.867,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1.623, 이자율은 -0.358로 나타났다. 동태적 충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지출의 충격에 의하여, 실질임금은 초반 4분기까지는 음(-)의 효과를 보이다가 이후 5,6분기에서 양(+)의 효과를 보인 후 다시 음의 효과로 사라지는 추이를 보인다. GDP의 경우에는 충격 이후 1, 2분기까지는 일시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후 음의 효과를 보이다가 사라지는 추이를 보인다. 물가의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서 안정이 이루어지는 12분기 이전까지 2분기마다 양과 음의 관계가 반복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재정지출로 1분기 이후 4분기까지 이자율에 계속해서 양의 관계를 보이다가 음(-)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보인 후 사라지는 추이를 갖는다.

[그림 2] BP모형 재정지출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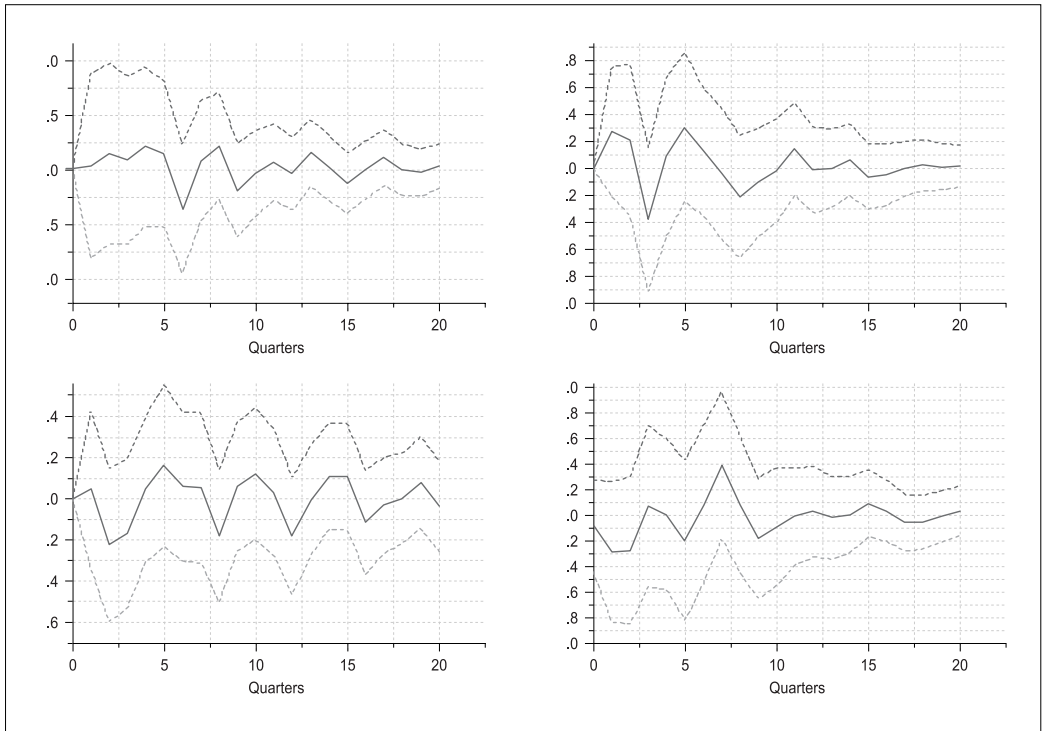


자료: 충격이 재정지출이며,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2. 재정수입충격반응 분석

재정순수입(government revenue)을 충격변수로 놓고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을 반응하는 변수로 살펴본 재정수입충격반응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에 각각 인과사슬모형, BP모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은 인과사슬모형과 BP모형이 거의 같은 결과를 세금충격에서도 보인다는 점이다. 앞의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식 10)의 행렬의 상단(upper) 부분에 모두 0을 설정한 인과사슬모형과 몇 개의 계수로 추정 또는 제약을 해준 BP모형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정부의 순수입충격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논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출되듯이 순서(ordering)배열이 같은 서로 다른 식별모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처음 BP모형을 설정할 때 추정된 계수들이 생각만큼 크게 모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실상 교란항을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한 인과사슬의 결과와 다를 것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수입충격반응 분석의 경우, BP모형이 기존의 인과사슬모형과 차이를 보인 Blanchard and Perotti(2002)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후 발표된 Perotti(2005)와 Caldara, D. and Kamps C.(2007)에서처럼 두 개의 식별모형의 충격반응분석에 차이가 없이 동일한 충격반응함수가 도출된다는 결과와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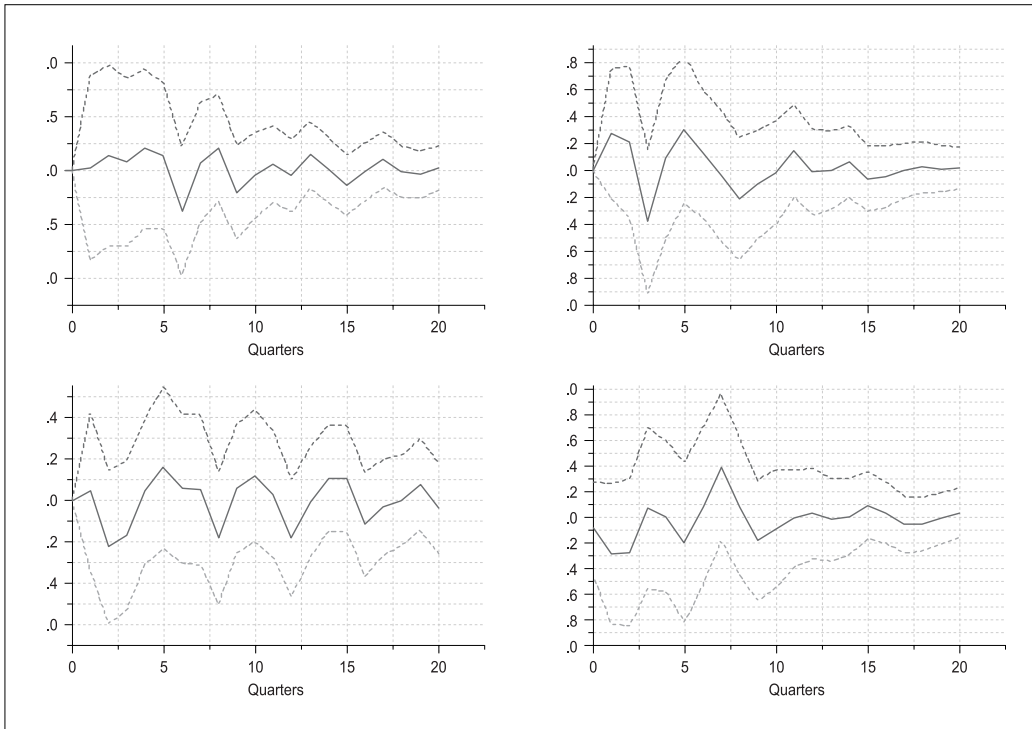
[그림 3] 인과사슬모형 재정수입충격반응함수



자료: 충격이 재정순수입이며,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재정순수입 충격반응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12기까지의 누적탄력성은, 실질임금은 0.233, GDP 0.385,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0.212 , 이자율은 -0.490 으로 나타났다. 동태적인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앞서 재정지출충격반응함수에서와 비교해 볼 때 연구에 사용된 거시경제변수들이 훨씬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순수입 충격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나의 분기(시점 6분기)에만 음의 관계를 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인다. GDP의 경우, 처음 2분기까지는 양의 관계를, 3분기에서는 일시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고 다시 4, 5, 6분기에서 양의 관계를, 7, 8, 9, 10분기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이다가 차츰 안정되는 추이를 갖는다. 물가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percent level)의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의 탄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자율의 경우 정부가 순수입을 1% 늘리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안정이 이루어지는 12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4] BP모형 재정수입충격반응함수



자료: 충격이 재정순수입이며,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V. 재정정책분석

앞의 제Ⅳ장에서 식별된 재정정책에 따른 충격들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재정정책 충격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충격들에 가중치를 각각 부여한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새로운 재정정책충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선형결합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에 따라서 무한대의 가능재정정책을 만들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정정책 3가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지출충격(deficit-spending shock), 재정수입 감소에 의한 재정적자지출(deficit-financed tax cut)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모두 증가 혹은 감소시켜 재정수지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재정충격(balanced budget spending shock)이다.

1.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정책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충격을 정부가 지출을 처음 4분기 동안 1% 수준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 세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설정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r_{j,a}(k)$ 를 k 시점에 충격벡터 a 에 대한 변수 j 의 반응(response)으로 정할 때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 정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0.01 = \sum_{i=0}^k (r_{GS,BGS}(k-i)BGS_i + r_{GS,BGR}(k-i)BGR_i) \text{ for } k=0, \dots, K \quad (\text{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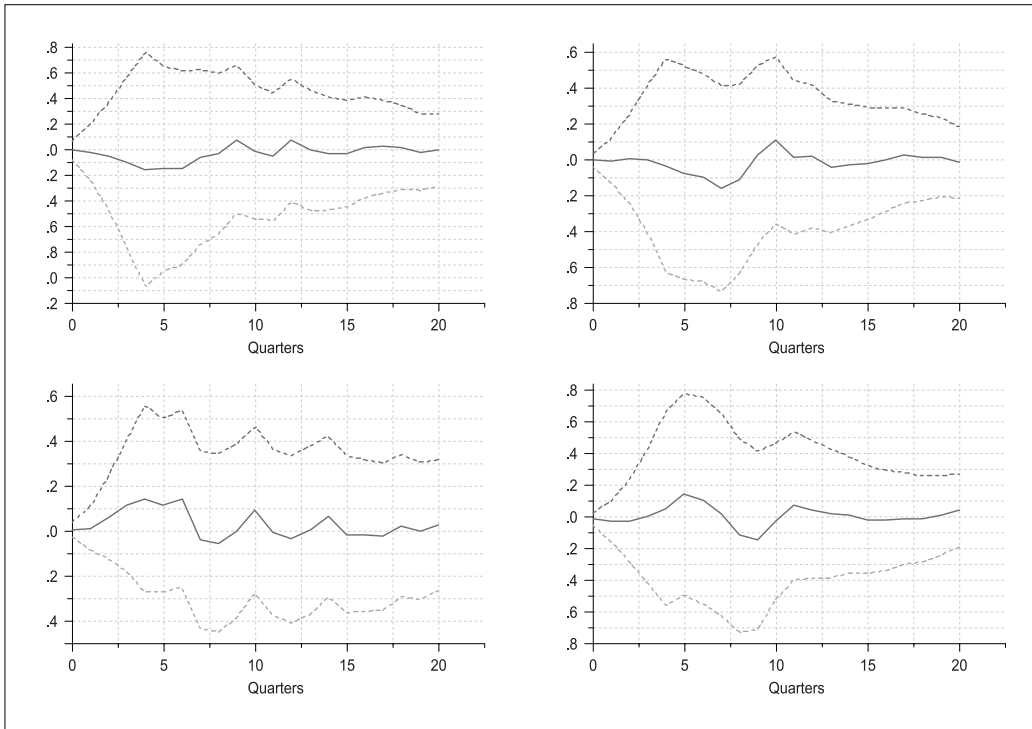
$$0 = \sum_{i=0}^k (r_{GR,BGS}(k-i)BGS_i + r_{GR,BGR}(k-i)BGR_i) \text{ for } k=0, \dots, K \quad (\text{식 12})$$

여기서 $K=4$, GS는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GR은 정부수입(government revenue)이며, BGS_j 와 BGR_j 는 각각 k 시점에서의 스케일이다.

(식 11)과 (식 12)를 해석하면, 4분기까지 재정지출을 1% 수준 증가시킨 상태와 정부 순세입은 0%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의 재정적자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충격이 가해지는 0분기의 시점부터 4분기까지의 각 j 번째 분기마다 BGS_j 와 BGR_j 의 스케일을 2개의 서로 다른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k 가 0에서부터 4까지 총 5번에 걸쳐서 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풀어 스케일을 도출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12분기까지의 누적탄력성부터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0.670 , GDP는 -0.326 , GDP 디플레이터는 0.561 , 이자율의 경우에는 0.067 이다. 이처럼 재정지출로 인해 오히려 GDP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자료에 대해 분석한 김성순(2003), 김성순(2007)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우 지출감축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각 분기별로 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8분기까지는 음(-)의 관계를 보이다가 차츰 충격이 사라지는 추이를 보인다. GDP의 경우에는 초반 3분기까지는 거의 0 주위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4분기 이후로 8분기까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충격이 사라진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6분기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인 다음 충격이 사라지며, 이자율의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이자율이 하락하다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해 3분기부터 7분기까지 양(+)의 관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 후 양과 음을 반복하며 충격이 사라지는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5]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의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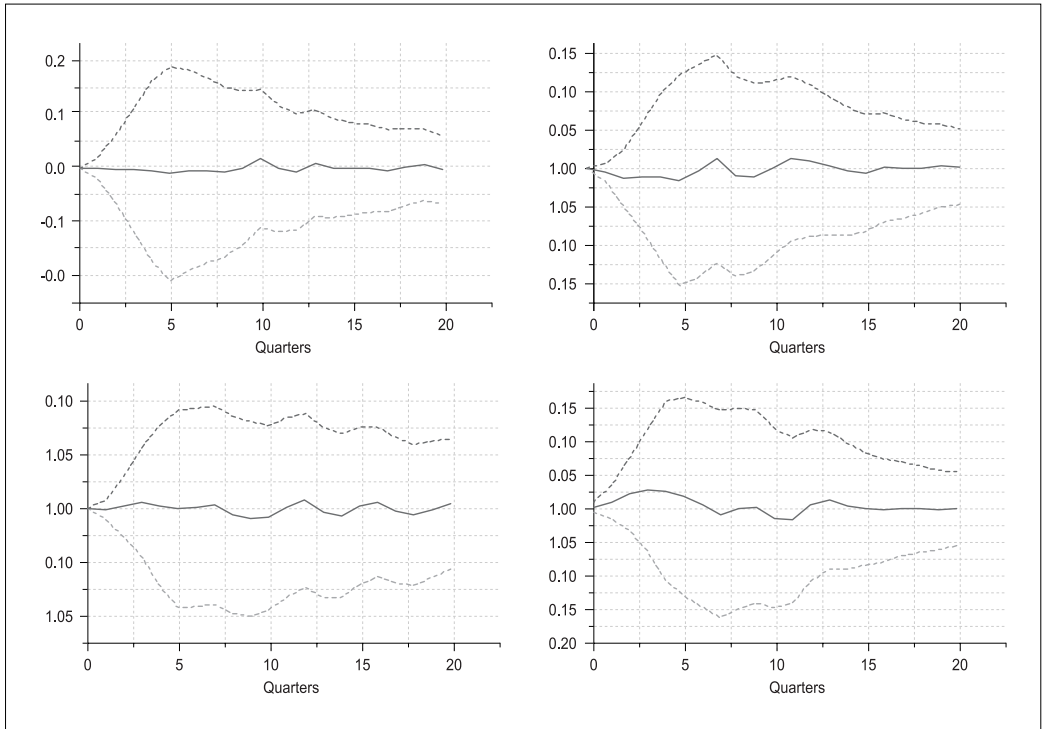
자료: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2. 재정수입 감소에 의한 재정적자정책

본장 제1절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다만 처음 4분기까지 정부의 수입충격은 1%를 떨어뜨린 채 계속되며, 정부지출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재정수입감소에 의한 재정적자정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로 본다.

재정수입감소(tax-cut)로 인한 재정적자정책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12분기까지의 누적탄력성부터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0.025 , GDP는 -0.046 , GDP 디플레이터는 -0.003 , 이자율의 경우에는 0.075 이다. 분기에 따른 충격반응함수의 동태를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12분기까지 거의 0 근처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GDP의 경우에는 1분기부터 6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음(-)의 관계를 보이며, 7분기에 일시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 대체적으로 0에 수렴해 가는 과정까지 약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추이를 나타낸다. 물가

[그림 6] 조세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의 충격반응함수



자료: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해서 정책충격 이후 초반에는 0에 가깝지만 양의 관계를 대체로 보이며, 8분기 이후 일시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다가 충격이 사라지는 행태를 나타낸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오목(concave)한 형태로 충격이 7분기까지 양의 관계를 가지다가 일시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충격이 사라지는 12분기까지 대체적으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Ⅲ장에서 살펴본 재정정책변수들의 기본적인(basic) 직교충격반응함수의 분석에서와 같이 모든 거시경제변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의 충격반응함수가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의 충격반응함수는 충격에 의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볼 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Ⅳ장 1절의 재정적자에 의한 충격의 누적탄력성과 비교할 때 사용된 거시경제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임금은 더 작은 음의 탄력성을, GDP 역시도 재정지출에 의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물가는 보다 안정적인 동태

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의 경우에도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조세 감축의 경우가 안정적으로 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앞의 제 V 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재정지출의 감소와 함께 감세를 더불어 운영할 경우 통합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GDP의 긍정적 효과와 물가와 이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균형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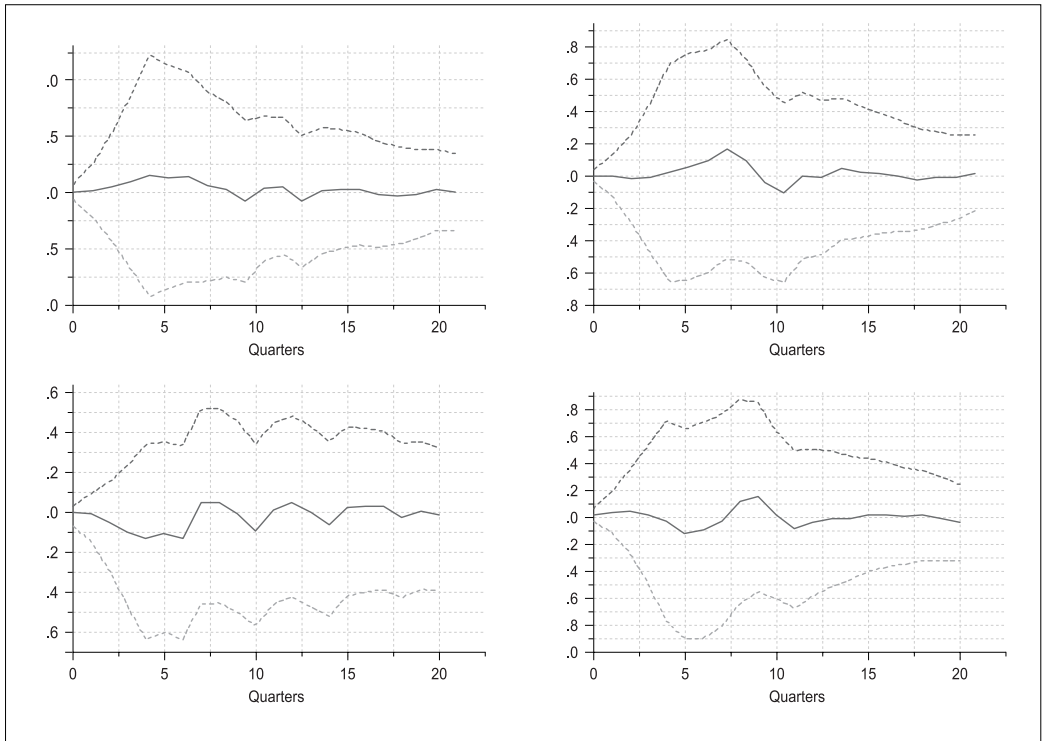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제 V 장 1절의 (식 3)의 방법과 유사하며, 다만 균형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춰 같이 상승 혹은 하락시켜 유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 4분기까지 정부의 지출은 -1% 수준으로 하락시켜 유지하고 정부의 수입은 -0.975%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의 지출과 정부의 수입을 상이하게 조정한 이유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본(Sample)기간 동안 정부의 지출이 22,607,170억원이고 정부의 수입은 23,189,270억원으로 이를 반영, 정부의 수입을 $(22,607,170/23,189,270)\%$ 로 조정하여야 보다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⁴⁾.

균형재정정책의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난다.

12분기까지의 누적탄력성부터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0.646, GDP는 0.280, GDP 디플레이터는 -0.563, 이자율의 경우에는 0.005이다. 앞의 제 V 장 2절에서 예상하였듯이 실질임금과 GDP는 양의 영향 그리고 물가는 음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태적 분석을 하면,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8분기까지 계속해서 양의 관계를 보이면서 충격이 사라지고, GDP는 초반에는 아주 작은 크기로 변동하다가 5분기 이후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다시 10분기에 작은 음의 관계를 보이면서 충격이 사라진다. 물가는 앞 절의 감세정책에 의한 결과보다 불안정하게 0을 기점으로 양과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감세정책에 의한 충격반응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초반에만 양의 관계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감세정책충격의 이자율반응함수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약 4분기의 기간(term)을 두고 양과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4) Mountford, A., and Uhlig, H(2009)의 경우, 미국 1955~2000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로 미국의 경우 표본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1%, 정부의 재정수입을 1.28%로 가중치를 재정수입에 두고, 균형재정정책의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7] 균형재정정책에 의한 재정적자정책의 충격반응함수



자료: 반응변수는 그래프의 상단에 각각 명시하였다. 검은 실선은 충격반응함수이고, 검은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수준에서의 상한(upper bound)선이고 연한 점선은 하한(lower bound)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경제가 예상과 달리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각국의 정부는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경기조절을 추구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 각 정책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자료의 관리 기간이 짧고, 각 변수별로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논문별로 각기 다른 변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서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SVAR모형의 대표적인 식별모형인 인과사슬모형과 BP모형을 기초로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계열자료인 통합재정수지자료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재정정책변수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는 재정정책변수 하나를 통제하여 직교충격반응분석함수를 구하여 분석하고 이에 나아가 다음 과정으로 재정정책변수인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결합하여 재정정책을

새롭게 만든 다음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충격의 거시경제 반응을 분석하였다.

재정정책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분기별 통합 재정수지자료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출충격은 실질임금과 GDP 그리고 물가와 이자율 모두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감세충격은 실질임금과 GDP는 음의 효과가, 물가와 이자율은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기간 동안 정부지출과 정부감세충격은 모두 GDP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감세충격은 오히려 물가와 명목 이자율 모두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기본적 충격을 결합한 3가지 재정정책 시나리오에서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적자정책에서는 실질임금과 GDP는 음의 영향을, 물가와 이자율은 양의 영향을 받아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비(非)케인지언(non-Keynesian) 효과가 나타나며, 재정수입감소 즉, 감세에 의한 재정적자정책의 경우에는 실질임금, GDP와 물가에서 작은 음의 영향을, 이자율 역시 0에 가까운 작은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균형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실질임금, GDP는 양의 영향을, 물가는 음의 영향을, 이자율은 작은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지출증가보다는 조세감축정책이 물가와 이자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GDP의 경우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정책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재정감축정책의 경우가 오히려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고려한다면, 재정지출의 감소와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세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나아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첫째, SVAR의 식별모형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경제적 의미에 따른 변수의 순서배열(ordering)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자료가 최근의 자료이지만, 2009년 이후의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의 경제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줌으로써 보다 재정정책의 식별에 도움을 주었지만, 실질임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계열자료가 없어 대용치(proxy)로 사용한 계절 조정된 실질 전(全)산업임금평균 자료의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이바지하는 점은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의 식별모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식별모형의 견조성(robustness)을 제공하며, 두 번째로는 결과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을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실질임금을 변수에 포함하여 식별을 도왔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정책분석을 위한 충격반응함수를 조합하는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정책을 만들어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의 접근(approach)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곽범국,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성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제9권 제 4호, 2003, pp. 70~100.
- 김성순,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22집 제 1호, 2007, pp. 3~33.
- 김성순,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VAR Approach-」,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3호, 2009, pp. 250~280.
- 김영덕,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박준용 외, 『경제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 허석균,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연구」, 고영선 편저,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제10장, 2002, pp. 373~409.
- Blanchard, O.J., and Perotti, R.,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4), 2002, pp. 1329~1368.
- Caldara, D., and Kamps C.,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h Shocks? A VAR-Based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Central Bank-Working Paper Series no.877, 2007.
- Fatas, A. and I. Mihov,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onsumption and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mimeo, 2001b

Mountford, A., and Uhlig, H.,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09, pp. 960~992.

Ramey V., Shapiro M., "Costly Capital Reallocation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In Carnegie Rochester Conference on Public Policy, 1998.

Perrotti, R.,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CEPR Discussion Paper no.168, 2005.

Sims, C.A.,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 (1), 1980, pp. 1~48.

Sims, C.A., and T. Zha, "Error Bands for Impulse Responses," *Econometrica* 67 (5), 1999, pp. 1113~1155.

제2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작

□ 대학(원)생 논문 공모 부문

내역	성명	소속	제 목	비고
최우수상	해당작 없음			
우수상	한승오	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 2	재정정책 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KIPF 원장상
우수상	최혜선 송혜진 이두리	명지대 경영학과 4	공공기관의 분류에 따른 서비스품질 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매경상
장려상	김수열 오상록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 경영학부 2	공공기관의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상장 및 상금
장려상	김상원 최지혜 황인제	한양대 경영학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품질 운영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상장 및 상금
장려상	김동진	계명대 세무학과 4	은행세 부과를 통한 금융위기 대처 방안	상장 및 상금

□ 초중고 글짓기 부문

내역	성명	소속	제 목	비고
최우수상	정범주	대구경신고 2	엇지른 물은 주위담아라	기획재정부 장관상
우수상	김영우	충주중 2	세금의 씨앗	KIPF 원장상
우수상	전대산	목포북교초 5	사촌동생과 세금	매경상
장려상	박채연	고양예술고 2	세금으로 꽃피는 민주주의	상장 및 상금
장려상	임경빈	대전만년중 3	납세는 기부와 같아요	상장 및 상금
장려상	안재현	소화초 6	행복의 열쇠, 세금	상장 및 상금



공공정책포럼

■ 제24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또사랑과 창조혁신

제24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또또사랑과 창조혁신
- 일 시 2011년 12월 27일(화) 07:30~09:30
- 장 소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8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12월 27일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8F)에서 「또또사랑과 창조혁신」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4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공공정책포럼의 새로운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음. 포럼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정부, 민간기업으로부터 좋은 의견도 듣고 공식 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논의했음.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윤석금 회장은 1980년에 웅진씽크빅을 설립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IMF 시기에도 아이디어 번뜩이는 코웨이 렌탈을 들여와 어려움을 뚫고 성장할 수 있었음. 이후에도 친환경 등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업으로 2010년도 매출액이 5조 3천억원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6조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특집을 내면서, 문제가 많은 유럽에 한국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 웅진과 같은 그룹이 한국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함.

주제발표 요약

또또사랑(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과 창조혁신

윤석금/웅진그룹 회장

금년의 마지막 강의를 공공정책포럼이 될 것 같음. 그동안 강사로 인기가 좋아서 다행이었고 이 강의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기를 바램. 1980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31년 동안 지속성장을 꾀 해왔는

데 창조와 혁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지금도 주간·월간 단위로 개인, 사장들을 통한 혁신회의를 하고 있음.

혁신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영뚱한 생각을 내야 하고, 자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람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혁신이 됨. 다른 업종의 사례에서 벤치마크한 사업들도 많음. 코웨이 정수기 렌탈도 단지 아이디어만 벤치마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제품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등 다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돈도 벌고 사업을 성공할까 생각하였는데, 스스로 해봤을 때 신나는 것, 즉, 신기가 있는 것을 해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느꼈음. 즉 시킴을 받는 사람과 시키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함. 상사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께 하면 시키는 사람과 신나게 할 수 있지만, 지시만 하는 리더는 밑의 사람들을 신나게 할 수 없음.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이 어떻게 부하를 신나게 만들 수 있을까임. 그래서 신나게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사랑하자는 것으로 정해서 1980년에 기업정책을 '사랑'으로 정했음. 1981년에 또사랑, 1982년에 또또사랑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를 지켜오고 있음.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므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존경도 없음. 눈빛만 봐도 좋고 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함. 매달 사장단 회의에서 묻는 말이 '당신은 당신 직원을 위해 무엇을 신나게 해주었느냐' 임.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또또사랑의 실천 부분에서 보면 고객사랑, 일사랑, 조직사랑, 도전사랑, 사회사랑, 변화사랑이 있음. 즉 사랑이 기업의 모든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 사랑이 지속하려면 투명해야 함. 눈짓

과 목소리만 들어도 대강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임. 신뢰가 떨어지면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존경이 없어짐. 웅진은 영세한 기업일 때 처음부터 투명경영을 실천해 왔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여야 투명경영임. 요즘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은 많이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구매의 투명성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음. 구매 투명성의 시작은 친인척납품을 일체 금지하는 것임. 구매업자가 아는 사람이 되게 되면 구매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임.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은 인사에 있어 상사에게 불만이 없게 하는 것으로, 학교나 고향 이야기를 회사 내에서는 할 수 없게 함.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음. 똑같이 해주면 불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가 멘토-멘티의 관계로 30분의 대화시간을 가지도록 하게 함. 밑에 사람이 위의 사람과 1대 1로 대화를 해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음. 지금도 웅진그룹의 간부와 회장 간의 사이가 그 어느 그룹보다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음.

창조혁신의 이야기를 하자면 출판업계에서는 창조혁신이 없으면 안 됨. 창조했기 때문에 매년 적게 나가도 몇십만 부에서 몇백만 부수를 판매했고, 다른 회사에서 생각지 않는 책을 만들었음. 생각하고 생각해야 창조가 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생각 이외에 지식정보가 받아들여져야 함. 초창기에 1년에 10여 차례 선진국의 서점으로만 출장을 다녔고, 1주일 동안 아동도서만 봤음. 그래서 지금은 그림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그림책만 봐도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등등을 설명할 정도임. 일단은 출장을 가면 서점으로 가 점원부터 불러 가장 잘나가는 책, 가장 좋은 책 아동도서 5권만 골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또 사가지고 와서 편집진들과 책들을 두고 토론을 했음. 당시 편집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대 나온 학생만으로 편집진을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했음. 서울대를 다니다 퇴학당하

거나 제적당한 학생들 10여명을 데려와 꾸준히 새로운 책을 만들었음.

혁신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면 대한민국 최고 출판사인 동아출판사의 매출이익을 10년 만에 앞서기 시작했음. 이 기적은 웅진이 만든 기적임.

특히 IMF 시기에 비테와 연수기가 안 팔려서 물 값만 받자고 해서 나온 것이 렌탈서비스 시스템임. 물론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행까지가 중요함. 코디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원가를 어떻게 줄이냐를 계속 고민했음. 서비스혁신과 원가절감으로 1만 3천명의 코디를 관리하고 있으며, 1등부터 1만 3천등까지 등수가 나오긴 하지만 외적으로는 5등급으로 평가함. 이렇게 등수를 공개해도 공정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지만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음. 음성으로 캐치하는 방법, 교육, IT훈련 등을 통해 최하등급은 계속 교육을 받아 서비스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음. 코웨이 공장이 혁신을 통해 매년 20%씩 성장하지만 고용은 300명 정도에 불과함. 선진국이 되면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늘려야지 제조업에서 늘리는 것은 무리임. 공주, 서울 두 군데 콜센터에 800명을 배치하였음. 서비스 고용을 늘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임. 이러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옴. 위기가 아니었으면 렌탈서비스가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급성장하지 못했을 것임.

혁신은 이름 자체에서 나오므로 상상오션(아이디어뱅크), 헝가래(칭찬하고 자랑하는 문화), 마술피리(현장 실천), 신기혁신 자랑대회(웅진의 열정한마당) 등을 행하고 있음. 첫 번째 혁신은 제조혁신으로 유구공장은 혁신우수 사업장 선정에서 AAA+를 받았고, 웅진에너지는 잉곳(Ingot) 생산성 한계 도전으로 매년 176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인당 생산성은 늘어나 매년 자체적으로 세계 경쟁력 최고 수준임. 두 번째는 서비스혁신으로, 하트서비스(HEART)라는 고객사랑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함. 또한 방송국에서 2년에 한 번씩 일반세균에 대해 45분가량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약속시간, 완벽한 서비스 제공, 고객 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오히려 낭비비용을 2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음. 방송에서 얻어맞고 난 후 서비스혁신의 기회로 삼았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R&D혁신과 제품혁신으로, 비데를 수출하기 위해 무전원 자가발전 비데를 만들었음. 공기청정기도 국제 백신연구소의 성능 검증으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음. 다섯 번째는 디자인혁신으로 세계 4대 디자인어워드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환경가전에서 세계최초로 Winners Gold를 획득했음. 혁신성파로 2008년 475억원, 2010년에는 1,730억원의 효과를 달성했음.

상상오션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바다에서 재미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의 일상화를 조성하는 웅진의 제안제도로 2010년의 경우 1년 동안 1인당 145여건을 제출했음.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우 1만마리는 돌고래 1마리로, 돌고래 1마리는 100만원과 여행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돌고래 3마리는 미주 유럽연수를 다녀올 수 있음. 상상오션을 서울시, 우리금융 등에 35개가량 분양했음. 아이디어 분양으로 100만원씩 받아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음.

헝가래는 불필요한 일을 50% 줄이자는 의미에서 세계 1등과 비교해서 모든 일을 드러내 놓고 쓸데없는 일을 지우자고 하는 것임. 업무간소화와 일일미팅, 피드백을 통해 모든 부분을 3년 내에 가능한 것만 세계 1등에 맞춰 수치화를 했음.

마술피리는 녹슨 것, 고장난 것 등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쳐주고, 사무 정리하는 것도 도와줌.

환경경영이 중요한데 그룹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음. 이산화탄소에 대해 실시간 인벤토리를 구축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구축부터가 중요하고, 탄소경영보고서도 발간하고 있음. 웅진케미컬은

폐수처리, 독소처리도 설계해 재활용하고 있음. 렉스필드 골프장도 농약을 안 치는 친환경적인 경영이 가능함. 또한 웅진에너지는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도 획득했음. 모든 부품에서 녹색구매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 구매금액을 매년 늘리고 학습지 인쇄도 콩기름인쇄를 하고 있음.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빈그릇운동 실천으로 공장, 사무실 등 10군데에서 인당 잔반량을 75g에서 3g으로 96% 감소('06~'10년)했음. 또한 금연운동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서약도 진행함.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함. 환경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해 2010년에는 16,800명을 대상으로 32,264시간 강의를 했음. 공주 유구천을 2003년 3급수에서 2009년 1급수로 향상시켰으며, 버들치 등 돌아온 동식물 2,380개체가 서식하게 되었음. 캄보디아에도 총 천연 개의 우물을 기증했음.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26

요약

-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10일에 과다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를 포함하는 '2012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을 발표함
- '2012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의 기본방침은 ① 신성장 전략실현을 위한 세제조치, ② 세제의 공평성 확보와 과세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조치, ③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혁, ④ 2011년도 개정에서 남아 있던 사안에 대한 대응이었음
- 주요 세법개정의 내용으로는 과다지급이자세제 창설, 국외재산조서제도 창설, 2011년 개정안 중 개정되지 못한 소득세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급여소득공제의 축소, 임원퇴직소득 축소임

1.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10일에 세제개정안의 개요인 '2012년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공표함¹⁾
- 일본의 세제개정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세제개정요망, 세제개정대강, 대강에 대한 각의(閣議)결정, 법률안에 대한 각의(閣議)결정, 국회 제출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침²⁾
 - 세제개정 과정은 세제조사회가 자문을 받아서 8월 말에 '세제개정요망'을 작성함
 - '세제개정요망'에 대하여 각 부성(府省)에 10월말을 기한으로 수정을 구함
 - 각 부성(府省)에서 수정된 '세제개정요망'을 바탕으로 12월 하순경에 차기연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정리하고 동일자로 각의(閣議)결정을 함
 - '세제개정대강'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차기연도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에 법률안에 대한 각의(閣議)결정을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2010년 3월 하순경에 가결·성립됨
- 이후의 개정과정은 '2012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1) 일본재무성에서 홈페이지(www.mof.go.jp)에 게재된 '평성24년 세제개정대강', '평성24년 세제개정대강의 개요' 및 KPMG일본의 홈페이지(www.kpmg.or.jp)에 게재된 '2012년도세제개정대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2) 일본 세제개정의 과정은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발간 조세동향 10-21 참조하기 바람



바탕으로 2012년 세법 법률안을 작성하고 각의 결정 후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성립됨

- 개정되는 세법의 상세한 내용은 '세계개정대강' 이 개정 법안으로 가결되는 과정에서 확정되고 변경될 수 있음

- 2012년 세계개정의 기본방침은 ① 신성장 전략실현을 위한 세제조치, ② 세제의 공정성 확보와 과세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조치, ③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혁, ④ 2011년도 개정에서 남아 있던 사안에 대한 대응임

2. 국제조세

가. 과다지급이자세제의 창설

- 과다지급이자세제는 관련자 간에 소득금액에 비하여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세제임
 - 이 제도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행할 예정임
 - 다만, 관련자 순지급이자액이 1,000만엔 미만이거나 관련자 지급이자액이 총지급이자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법인의 관련자에 대한 순지급이자액이 조정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 조정소득금액은 당기의 소득금액에서 관련자 순이자지급액, 감가상각비, 수입배당 등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특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임
 - 관련자는 해당 법인과 직·간접 지분비율이 50% 이

상인 자나 실질 지배·피지배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들에게 채무보증을 받은 자를 포함함

- 관련자 순이자지급액은 관련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관련자 지급이자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임

- 손금불산입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 과거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공제부족액, 즉, 지급이자액이 조정소득금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이 금액까지 이월된 손금불산입액의 공제가 가능함

- 또한 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와 이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제도 중 손금불산입액이 많은 제도 하나만 적용함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와 이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을 조세피난처세제에 의한 합산소득에서 제외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적격합병이나 100% 자회사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는 경우로 이월된 손금불산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합병회사나 모회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나. 조세피난처 대응세제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에 의하여 과세했던 유보소득과 이 소득이 배당될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특정과세금액에 도달

할 때까지 수입배당금을 과세하지 않음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에 따라 내국법인에 합산과세되는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를 통해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될 때 다시 과세되어서는 안 됨
-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배당액에서 외국자회사에 대한 간접 특정 과세대상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간접특정과세대상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함
 - 3년 동안 외국자회사가 외국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에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3년 동안 합산과세된 외국계회사의 소득금액에 내국법인의 외국계회사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보유비율의 판정시기를 '내국법인의 배당사업연도 종료시'에서 '내국법인의 배당사업연도 말에 가까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할 배당의 지급기준일이나 기준일에 상당한 날'로 개정하고자 함

다. 국외재산조서제도의 창설

- 국외재산에 대한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적정한 과세·징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외재산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
 - 국외재산조서에는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국외재산조서에 적용됨

- 즉, 최초 국외재산조서의 작성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국외재산에 대하여 작성하게 됨

- 제출의무자는 역년으로 12월 31일에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로 제출기간은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임
 - 국외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견적가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거주자에는 비영주자도 포함함
- 국외재산조서에 국외재산의 기재를 할지 여부에 따라 국외재산조서에 대한 소득의 가산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음
 -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과소(무)신고가산세를 5% 경감
 - 미제출이나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과소(무)신고가산세를 5% 가중

2. 법인세

가. 후쿠시마부흥재생조치법의 제정에 따른 세제상의 조치

-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자력재해의 부흥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인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가제)에 따른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마련한 것임
 - 재해지원세제로서 2011년 12월 7일에 가결·성립된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구역법에 따른 법인세 특별조치가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특례조치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조치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임
 - 기존 조치의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부흥특구법에 따른 지진 지원세제 (법인세특례조치)

A	재투자 등 준비금제도(5년간 소득의 과세이연 및 특별상각)
B	재해피해 고용자 등을 고용한 경우 특별세액공제(급여의 10% 세액공제)
C	사업용 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
D	개발연구용 자산의 특별상각 등

- 이번엔 창설되는 특별법은 후쿠시마현 지역에 대한 조치, 피난해제구역에 대한 조치로 나눌 수 있음
 - 후쿠시마현 지역에 대한 조치는 후쿠시마현 전체의 지방공공단체가 부흥추진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인정부흥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A~D)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기존조치 중 C조치를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 피난해제구역에 대한 조치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후쿠시마현으로부터 피해사업자로 확인을 받은 법인에 적용하는 특별조치로 사업용 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 및 피해고용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음
 - 사업용 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는 기존 조치(C)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적용대상을 확대함
 - 피해고용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는 기존조치(B)에 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20%로 함

나. 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

- 시험연구비 특별세액공제는 〈표 2〉와 같이 한시적 조치를 개정할 예정임

〈표 2〉 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현행법		개정안
총액형 세액공제	항구적 조치	상한액 : 법인세액×20% (한시적 조치: 2012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20%에서 30%로 할증)	공제상한액의 한시적 조치에 대한 연장 없음
증가형이나 고수준형 세액공제	한시적 조치 (2012년 3월 31일 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상한액 : 법인세액×10%	2년간 연장

다. 기타 주요한 조세특별조치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도 등에 대한 조세특별조치가 2년 연장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제도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소기업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중소기업자에 대한 소액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등임
 -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제도의 연장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임
- 특정 자산의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 중 2011년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장기소유토지 등의 환매특례의 적용시기를 3년 연장하고 환매자산의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현행법에서는 환매자산은 ① 국내에 있는 토지 등, 건물, 구축물이나 기계 및 장비와 ② 철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중 일부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① 중 토지 등의 범위가 사업소 등의 일정 건축물 등의 부지용으로 사용되는 것(면적이 300㎡ 이상)으로 한정되고 ② 중 대상자산에서 입환(入換)기관차가 제외됨
 - 환매특례는 양도자산을 양도하고 환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80%를 과세이연하는 조치임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부분은 2011년 세제개정에서 제안되었다가 개정되지 못한 부분을 2012년 세제개정에 제안한 부분임

가. 급여소득

- 이 제도는 소득세는 2013년분부터 적용되고 주민세는 2014년분(2013년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적용됨

1) 급여소득공제의 축소

- 종업원에 대한 급여소득공제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5만엔이 상한액이 됨
 - 결과적으로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상당액이 소득공제되지 못하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됨

2)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설정 및 공제대상 확대

- 특정지출공제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소득자의 실액공제의 기회를 확대함
 - 현행법에서는 급여소득자가 특정지출(업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한 지출 등)을 하는 경우에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특정지출액은 급여소득계산상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
 - 그러나 개정안은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함
- 특정지출공제의 한도는 <표 3>과 같이 개정될 예정임

<표 3>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급여 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 계산상 공제 가능한 금액
현행법	제한 없음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급여소득공제액
개정안	1,500만엔 이하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급여소득공제액 × 1/2
	1,500만엔 초과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125만엔

- 특정지출의 범위가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되어 확대되어 급여소득자의 실액공제의 기회를 확대함
 -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
 - 도서구입비, 의복비, 접대비 등의 근무필요경비(합계 65만엔이 한도)

나. 임원의 퇴직소득

- 임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에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의 1/2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임원으로서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전액이 퇴직소득의 금액이 됨
 - 1/2과세가 폐지됨
 - 개정안은 2013년분 이후에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적용됨

다.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행사 등에 대한 조서제도의 창설

-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및 추가연



동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

- 조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함
-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어야 하는 조서에 적용되므로, 2012년에 행사된 스톡옵션 및 지급된 추가연동급여가 보고의 최초대상이 됨

■ 보고대상자는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인 거주자와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임원이나 종업원인 거주자임

■ 보고대상은 ① 보고대상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등을 한 경우와 ② 보고대상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가격 등에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임

■ 제출기한은 스톡옵션의 행사나 급여의 지분이 있었던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익년 3월 31일까지 제출함

4. 자산과세

가. 상속증여세

- 젊은 세대로 자산을 조기 이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조치를 <표 4>와 같이 확대·연장함

<표 4> 연도별 비과세금액

(단위: 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특별 세 (내진주택 등)	1,500	1,200	1,000
일반 세	1,000	700	500

- 산림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창설하고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완화함

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안의 제정에 따른 세제상의 조치로서 계속적으로 강구함
 - 피난구역 내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면제
 - 과세면제구역으로부터 제외된 구역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감액조치(3개년도 분)

- 신축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를 2년 연장

- 고정자산세 등의 부담조정조치는 3년간 연장하고 주택용지특례(특례비율 1/6 등)도 계속하지만, 주택용지특례를 경과적인 조치로 하여 2014년에는 폐지함

5. 환경관련 세제

- 환경관련 세제로는 자동차증량세, 자동차취득세, 지구온난화 대책세로 나눌 수 있음
- 자동차증량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환경차량감세'에 따른 경감조치를 연장할 예정임
 -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시점에 환경성능에 대한 일정

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에는 2012년 5월 1일 이후, 원칙세율(本則稅率)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차등세율(間稅率)을 부과할 예정임

- 13년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하고 인하를 함
-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 자동차산업의 기술적 우위 확보와 향상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환경차량감세'에 대해서는 연비기준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중량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해서 경감조치를 확충하여 2015년 4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 자동차취득세는 '환경차량감세'에 대한 연비 기준의 개정과 더불어 환경성능이 지극히 우수한 자동차의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어 2015년 4월까지 3년 연장함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는 CO₂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도입함
 - 화석연료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석유석탄세에 CO₂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하여 부과함
 - 추가되는 세율은 ① 원유 및 석유제품 760엔/kl, ② 가스상태화수소 780엔/t, ③ 석탄 670엔/t임
 - 개정안은 2012년 10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2016년 3월 31일의 기간까지는 경과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정책 흐름 |

-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
-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

* 본 자료는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소득령 별표2)

소득세법 개정내용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표구간(3억 원 초과 35% → 38%) 신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12.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다자녀추가공제 등의 경우 '12년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효과

(단위: 원)

자녀수	월 급여	월 원천징수세액		증감(b-a)
		'11년(a)	'12년(b)	
20세 이하 자녀 2명 (4인 가구)	3,000,000	27,470	27,470	-
	5,000,000	251,010	250,540	△470 *
	10,000,000	1,153,580	1,152,830	△750 *
	20,000,000	4,478,580	4,477,830	△750 *
	30,000,000	7,803,580	7,859,830	56,250
	40,000,000	11,128,580	11,469,830	341,250
	50,000,000	14,453,580	15,079,830	626,250

* '11. 7월 연금보험료 부과 소득금액한도 상승(월 368만원 → 375만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소폭 감소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본 자료는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관련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농특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 **(개정 내용)**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추진 일정)** 입법예고(1. 6~20), 부처협의(1. 6~16)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 26) 및 국무회의(1. 31)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소득령 §9, 별표1)
 - **(현행)**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금액(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양 300마리 등

• **(개정)**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①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양식어업 → (개정)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② (농가부업 가축 규모 확대) 소 30 → 50마리, 돼지 500 → 700마리

③ (농가부업 소득금액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 → 2,000만원으로 인상

②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 **(현행)**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 **(개정)**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 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③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령 §133)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 **(현행)**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음

* 예) 관세사·도선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됨

- **(개정)**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령 §74①7)

※ '13. 1. 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 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12)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개정)**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

⑤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소득령 §210의3)

- **(현행)**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미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가능
- **(개정)** 소비자의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

②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소득령 §210의3)

* 소비자가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

- **(현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음

- **(개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 → 5일 내로 연장

*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 가능

③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10. 4. 1.~12. 3. 31.)을 2년간 연장(12. 4. 1.~14. 3. 31.)(국기령 제22038호 부칙 §2)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⑥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소득령 §137①, §201의11)

- **(현행)**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가능

- **(개정)**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 방문판매원에게 근로장려세제(E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파악 제고를 위해 보험모집인과 같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

⑦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7)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 (개정)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연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추가

⑧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대출 규정(소득령 §112)

법 개정내용

-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연 1,500만원)하고, 기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연 500만원)

- (현행)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 30년 이상은 연 1천5백만원)
- (개정)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⑨ 국외교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 (현행)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 소득공제(초·중·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 (개정)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용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 요건 삭제

⑩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령 §26·26의3)

법 개정내용

-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법 §16·17)

- (신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⑪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소득령 §42의2)

- (현행)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 (개정)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 퇴직소득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

** ①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⑫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155⑤)

- (현행)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개정)**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

13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소득령 §155⑧)

- **(현행)**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개정)**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 실수요 목적 주택 양도세 종과배제도 사유소멸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중

14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완(소득령 §155, §167의3⑤)

- **(현행)**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 종료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정*
 -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예외추가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월부터 준공일 후 6월까지의 기간은 미임대 기간에서 제외

15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종과제도 특례 신설[헌법불합치 결정*(11. 11. 24) 반영](소득령 §167의3)

*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종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

- **(신설)**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차감하여 양도세율 적용

* 적용시기 : 헌법불합치 결정(11. 11. 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소득령 §168의8③)

- **(현행)**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종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 거주
- **(개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km 이내 → 직선거리 80km 이내로 완화

17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보완(소득령 §167의8)

- **(현행)** 중소기업이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개정)**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규정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비 고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1년 이상 보유주식	20
		1년 미만 보유주식	30
기타주주	상장주식(장내거래)		비과세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법인세법 시행령

- ① 무료이용 경로당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법인령 §36)
 - (현행)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개정)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마련 지원
- ②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령 §56)
 -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문제 발생
 - (개정)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일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③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강화(법인령 §36·§36의2)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1,000만원 이상 상증세가 추정되는 경

- 우 등에 지정 취소
- (개정) 지정취소 사유로 (i)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ii)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제고

- ④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허용(법인령 §24)
 -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 등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
 - (현행)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개정)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⑤ 연결납세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20의12)
 - (현행) 비영리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등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적용 불가능
 - (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세중립성 제고
 -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⑥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령 §19)
 - *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 인정
 - (현행)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
 - (개정) 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 →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7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령 §40)

- (현 행)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
- (개 정)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경우 0)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

8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령 §71)

- (신 설) 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개발을 취소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 ① 개발비가 자산성을 상실 및 ②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령 §69)

- (현 행)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
- (개 정)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령 §41, 소득령 §84)

- (현 행)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는 경우 접대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
- (개 정)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11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령 §2)

- (현 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개 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면제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정시 이자상당액 경감(법인령 §110)

- (현 행) 환급세액 추정시 이자율: 연 10.95%(1일 3/10,000)
- (개 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7%)을 적용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법인령 §120)

- (현 행)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개 정) 실질과세 강화를 위해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OECD 글로벌포럼 권고사항 반영

1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인령 §161)

- (현 행) 조합법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9)

- **(개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15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법인령 §158)

-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
- **(개정)**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 제외

16 물적분할 · 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인령 §84 · §84의2)

법 개정내용

◇ 물적분할 · 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이 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법 §47, §47의2)

- **(신설)** 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규정
 $\text{금액} = \text{전기 말 압축기장충당금}(\text{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 \times [\text{당기 주식처분비율}(A) + \text{당기 처분 자산}^* \text{의 양도차익 실현 비율}(B)] - A \times B]$

*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토지 및 주식

물적분할 전 → 물적분할 후

A법인 (분할법인)	㉠ 자산	A법인 (분할법인)	㉠ 자산
	㉡ 자산		B법인 주식 (100%)
		B법인 (분할신설법인)	㉢ 자산

- 물적분할
A법인이 ㉠자산을 분리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주식 취득
- A법인 과세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B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A법인에 산식에 따른 금액만큼 과세

17 합병 · 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법인령 §80의2)

- **(현행)**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필요

* 지분을 1% 이상인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 **(개정)**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주주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

18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 **(현행)**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함
- **(개정)** 물적분할 및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로 하고,
 - 그 밖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함

19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령 §17의2 · §17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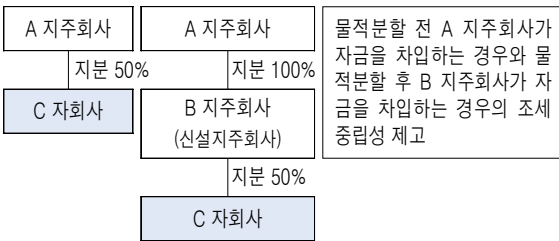
- **(현행)** 지주회사(A)가 자회사(C)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frac{\text{수입 배당금} \times \text{익금 불산입률} - \text{차입금 이자} \times \text{익금 불산입률} \times \frac{\text{세무상 주식 장부가액}}{\text{회계상 자산총액}}}$$

- **(개정)**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지주회사(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물적분할 전 → 물적분할 후



20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31)

- **(현행)**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개정)**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2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마련(신설)(법인령 §138의7)

법 개정내용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 (법§98의6)
 -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직접투자)**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3년간 유효)

*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의 경우 현지 외국인들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를 면제

-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 **(간접투자)**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하되, 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

* 예: 한·북 조세조약 제28조 규정에 따른 holding company 등

※ 적용시기: 2012. 7. 10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조특령 §9)

- **(현행)** 일반R&D 재위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재위탁의 경우 세액공제 배제
- **(개정)** 위탁·재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 단, 서비스 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국회 재정위 결정사항)

2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의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 **(현행)** R&D 비용 : 인건비, 부품·재료비,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등 R&D 수탁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개정)**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제외 R&D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외

* 도서구입비 등은 R&D와 관련성이 적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R&D를 수탁받는 사례 없음

③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적용시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9)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대기업 40%) 세액공제

- **(현행)**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이상 : 직전 4년 R&D비용 합계 ÷ 4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미만 : 직전 4년 R&D비용 환산 ÷ 4

* R&D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후 4년 경과 여부에 따라 4년 평균 R&D비용이 달라지는 문제

- **(개정)** 직전 4년 R&D비용 합계 ÷ R&D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비용					직전 4년 평균 R&D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현행	개정안	
2,000	0	0	2,000	2,000	1,000	= 4,000/4년	
-	-	-	2,000	2,000	2,000	= 연간 2,000 × 4(환산)/4년	
						2,000 = 4,000/2년	

④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조특령 §22의2)

- **(현행)**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개정)**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비과세·감면 정비, 4개 정유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외

※ 적용시기 : '12. 1. 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진행중인 투자는 종료시까지 세액공제)

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0의2, §100의6)

- **(현행)** 근로소득자
- **(개정)**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추가
※ '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⑥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조특령 §100의4)

- **(현행)**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전세금
- **(개정)** 현행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신설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

⑦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조특령 §100의3)

법 개정내용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을 환산: 환산 총소득기준 = 총소득기준 × (근무월수 / 12개월) × 130%

- **(신설)**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⑧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조특령 §27)

법 개정내용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적용기한: '13년말)

- **(청년의 범위)**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 제외 :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영위 기업

⑨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조특령 §27의4)

법 개정내용

◇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의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적용기한: '13년말)

- **(신 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청년 100%, 청년 외 50%) 적용

⑩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 제외(조특령 §121의2)

법 개정내용

◇ 전통시장 내 물품을 구입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확대(300만원+100만원 추가)

- **(신 설)**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

⑪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4)

- **(현 행)**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등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개 정)** 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⑫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105)

- **(현 행)** 의수족 등 23종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개 정)**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추가하여 장애인 지원
 - * 버튼에는 점자표기되어 있고 음성 안내메뉴 등을 지원하는 기기로, 영세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도모

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조특령 §106의12 신설)

- **(신 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위임사항 규정

- 발급건당 공제금액(연간 한도) :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 : 1천만원

1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령 §130)

- **(현행)**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수입금액×적용률(0.2%, 0.1%, 0.01%)]
-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을 포함
- **(개정)** 문화접대비 최소금액기준을 “총접대비 지출액의 1%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등록문화재(예: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추가

15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약기간 요건 완화(조특령 §14)

법 개정내용

◇ 창투조합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법§16)

- **(현행)**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개정)**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16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의무보유기간 완화(조특령 §12)

- **(현행)**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개정)** 비과세가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

17 광해(鑛害)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조특령 §66)

- **(현행)**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
 - * 광해방지사업 :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개정)** 양도 당시 광해방지사업으로 휴경중인 경우 농지로 인정

18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조특령 §104의 5)

- **(현행)**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
- **(개정)**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19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11의3, §116의14)

-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개정)**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기금사용 목적 추가(조특령 별표1)

- **(현행)** 상생협력기금 사용 목적에는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포함
- **(개정)** 상생협력 기금 사용 목적에 (i)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 파견과 (ii)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을 추가

21 법인 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령 §29)

법 개정내용

◇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 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조특법 §32 개정)

-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시 추징금액 규정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기납부세액 제외)
 - 유상감자시

$$: \frac{\text{유상감자액}}{\text{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times \frac{\text{이월과세대상세액}}{\text{(기납부세액 제외)}}$$

22 군 골프연습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조특령 §105)

법 개정내용

◇ 군 면세유 중 군 골프장 및 유사시설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유사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신설)**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에 군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여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 등을 제고

※ 적용시기 : '13.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중령 §15⑤)

-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 * 개인사업체인 경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 **(개정)** $\text{주식가액} \times (1 - \frac{\text{법인의 총자산 중 비사업용 자산}^*}{\text{법인의 총자산}})$ 이 차지하는 비율
 - * 비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2.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3.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4.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상중령 §20의2)

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2주택이나 1세

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소유 등
- **(개정)**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사유 추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 합가일(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

3 특수관계법인가 간담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무사항 신설(상증령 §34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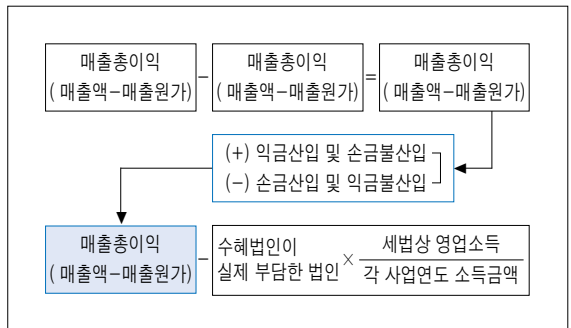
법 개정내용(§45의3)

- ◇ 특수관계법인가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 이상인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가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가와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적용시기)** '12.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 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 간접출자비율

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 ①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 · 손자회사
 -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특수관계법인가 간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가와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제외
- **(간접출자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연도 말 기준)
 -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간접출자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주식보유비율에서 3% 차감시 간접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에서 먼저 차감
-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 관리비 차감)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항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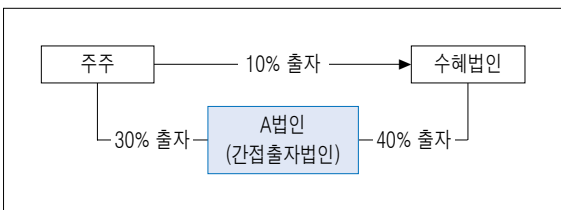
- (간접출자시 증여의제이의 계산)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제외

$$(가) \times \frac{[\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text{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비율}]}{\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times \text{간접출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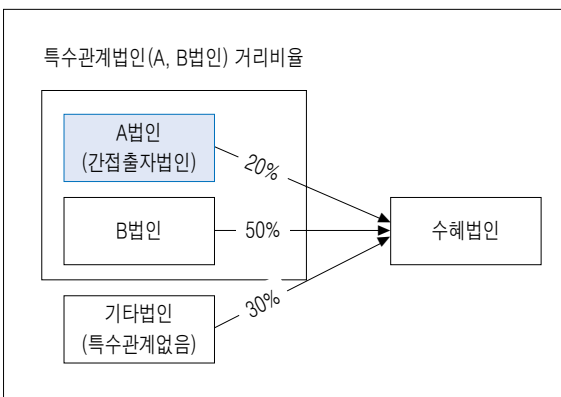
(가)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 증여의제이의 : ①+②

-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70% - 30%)×10%(직접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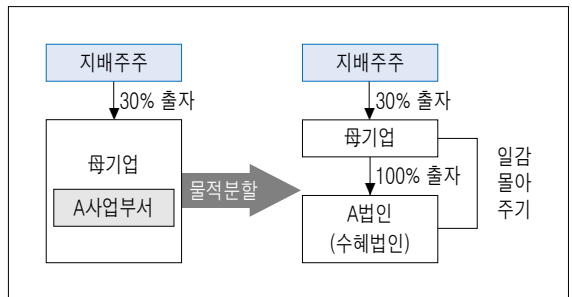
② 간접출자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70\% - 30\%) \times \frac{70\% - 20\%*}{70\%} \times [12\%(\text{간접출자}) - 3\%**]$$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을 먼저 차감

참고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는 법인의 내부 사업부서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



④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상증령 §16)

- (현행)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초지·5년 이상 조립한 산림지·어선·어업권(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개정)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부재지주 농지 등 제외)

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레가액 범위 추가(상증령 §49①)

- (현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 **(개 정)**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MIN(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 3억원)보다 작은 경우

6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상증령 §54④)

- **(현 행)**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개 정)**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완전 폐지(부가가치 §64)

- **(현 행)**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규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과세기간(6개월) 중간에 신고·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지단위과세사업자 등 (총 63만명)

- **(개 정)**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 상시화(부가가치 §62, §74의5)

- **(현 행)** 음식업자 지원을 위해 '12년말까지 우대공제율* 적용

* 음식업 우대공제율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기본공제율 : 3/103)

- **(개 정)**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폐지(우대 상시화)

하여 음식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

3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 §74의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

- **(현 행)**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11년말까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 음식·숙박업(13만명) : 40% → 30%, 소매업(9만명) : 20% → 15%

- **(개 정)**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11. 12 → '14. 12)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4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 §29)

- **(현 행)** 산후조리원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의료부수용역으로 면세되고 있음

- **(개 정)**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 연도별 출생아 수(명) : (08) 465,892 → (09) 444,849 → (10) 469,900

5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 §33)

- **(현 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개 정)**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6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부가가치 §14)

- **(현 행)** 보세구역 내에서 조달청 창고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 **(개 정)**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조달청
창고 활용 지원

7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부가령 §29 등)

- **(현행)**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가축진료, 장애인보조견 진료, 질병예방 목적 진료 등은 일부 면세
- **(개정)**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추가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과

※ '11. 12월 국회 세법심사시 기획재정부 결정사항

8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16)

- **(현행)**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여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

9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부가령 §74)

- **(현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 **(개정)** 의료업 중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11. 7. 1)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신규로 규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2기분)부터 적용

10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정비(부가령 §44)

- **(현행)**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 **(개정)**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 도모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26)

- **(현행)** 사업서비스업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

* (예) 사업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1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 **(현행)**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13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부가령 §54)

- **(현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개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14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

- **(현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 **(개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15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령 §59)

- **(현행)**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 **(개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 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 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

※ 적용시기: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16 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부가령 §59)

- **(현행)**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개정)**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는 구입한 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17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부가령 §53)

- **(현행)** 전기·도시가스 등의 사업자는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편의 증진

18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보완(부가령 §57)

- **(현행)**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개정)** 제공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세부담 경감 지원

※ 적용시기: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4. 1 이후부터 적용

19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부가령 §4의2)

- **(현행)**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설일부터 소급하여 7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
- **(개정)** 임시사업장 개설 후 10일까지 개설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20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의료업 추가(부가령 §67의2)

- **(현행)**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을 추

가하여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및 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명확화(개소령 §8-10 호)

- **(현행)**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미비

* 물품의 가격은 용도변경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정)** 세율 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시 세율(면세기 세율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기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 §33①)

- **(현행)**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이 불명확함

* 장애인용 차량을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중 장애인의 사후관리기간 문제

- **(개정)**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 처음 장애인의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하여도 납세의무 면제

③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개소령 별표1 제5호라목 신설)

법 개정내용

- ◇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세율: 5%) (법§1② 제3호다목 신설)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100% 감면(200만원 한도, 조특법)

- **(전기승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로 한정)
- **(면제 대상)** 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인 것(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

④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개소령 §16의4 신설)

법 개정내용

-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법§10의4 신설)

-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사업자·반입지 관련 사항 등 기재)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표준 신고시)** 반출자는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5) 저유소 '혼유 등' 관련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개소령 §16의5 신설)

법 개정내용

◇ 송유관으로 제조자 저유소를 거쳐 반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 등이 대신 신고·납부 (법§10의5 신설)

- ('혼유 등'의 구체화)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및 첨가제 등의 혼합
-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제조자 등·저유소 관련 사항 등 기재)를 제조자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표준 신고서) 제조자 등은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7. 주세법 시행령

1) 주류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주세령 별표 5)

- (현행) 주류수입업자는 면허요건에 '전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주세법시행령 별표5),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금지(국세청고시)
- (개정)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 폐지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 * 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거래단계의 축소 및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촉진으로 주류가격 하향안정을 도모

2) 소규모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주세령 §20①)

• (현행)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

*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금액

• (개정)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20.9%) 감안
 ※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상 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약 2배 수준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 활성화 및 조세형평 제고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중부령 §3①)

- (현행) 과세기준일(6. 1.)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
- (개정)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때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0.)까지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 허용

2) 지방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조문 정리(중부령 §2의3)

법 개정내용

◇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09년~'11년) 적용 종료(법 §8)

- 지방1주택을 소유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
 -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처럼 비과세 및 1세대주택자 특례적용 가능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율 상향 조정
(국조령 §51③)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율 상향 조정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율(현행 → 개정)
20억원 이하	3% →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6% → 8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7%
50억원 초과	2.4억원+50억원 초과금액×9% → 2.9억원+50억원 초과금액×10%

※ 적용시기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② 국제-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절차 및 운영방법 규정 신설(국조령 §17의3, §17의4)

법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에 관한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의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 제도 도입 (법§10의2, §10의3)

- **(위원회 구성)** 국제거래가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0명 이내로 위원회 운영
 - (정부위원) 세제실장(위원장), 재정부·국세청·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회계전공 대학교수 등 위촉(Pool제 운영)
- **(이행계획 통지)** 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해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행계획 제출
 - 위원장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 적용시기 : 2012. 7. 1부터 시행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기본령 §1의2)

법 개정내용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 **(현행)**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 부족
- **(개정)**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및 통일성 제고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규정

- 사회현실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등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정·명확화

※ 구체적인 범위 조정 방안

①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 父系 6촌·모계 3촌 → 6촌으로 통일
- (인척) 夫族 4촌·처족 2촌 → 4촌으로 통일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②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명확화

- (고용관계) 임원 기타 사용자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생계연관관계) 본인의 금전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

- 30% 이상 출자하거나 (ii)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비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ii)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기본령 §65의4)

법 개정내용

-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법§84의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신 설)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2년 국세청 탈세세보 포상금 예산 26억원에서 집행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 1 국세징수법 시행령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신설(징수령 §27~§27의5)
 - (위탁 방법 등) 세무서장은 위탁시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에 필요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위탁 사실을 통지

- (위탁대상 체납액) ① 또는 ②의 체납액으로 함
 - ① 인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위탁 수수료)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 : 25%)을 곱한 값으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획재정부령 위임

12.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조세범처벌절차령 §3)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 사람(내부위원),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 사람(민간위원)
-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신설(조세범 처벌절차령 §5)
 - ㉠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 ㉡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13. 관세법 시행령

- 1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관세령 §112)
 - (현 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함

야 감면 가능

- **(개정)**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감면 허용

- 단,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감면대상 물품의 검사·확인을 위해 해당 물품이 세관 통제하에 있을 필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면제(관세령 §39)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

- **(현행)**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종전의 과소신고가 드러나는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꺼리는 상황

- **(개정)** 사전심사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 신청 활성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개선(관세령 §27)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를 차감하여 과세가격 산정

- **(현행)**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

- **(개정)**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고액'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관세령 §143)

- **(현행)**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청구.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가능

- **(개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허용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⑤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 신설(관세령 §1)

법 개정내용

- ◇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 §5 ④ 신설)

- **(신설)**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 → 민원인이 관세청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⑥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관세령 §34)

법 개정내용

- ◇ 소송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 허용 (법 §38의3③ 신설)

- **(현행)**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경과시 경정청구 불가능

- **(개정)**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신

고 후 2년이 경과했다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내 경정청구 허용

- * ①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
- ② 장부·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 소멸
- ※ 적용시기: 2012. 3.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설(관세령 §135의4)

법 개정내용

- ◇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실적이 일정금액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가능(법 §110의3④ 신설)
-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신 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

* 최근 4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 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등

-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적용시기: 2012. 3. 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관세령 §34의2)

법 개정내용

◇ 내국세의 과세가격 조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법 §38의4 신설)

• (신 설)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 제출서류와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 관세법상 경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

※ 적용시기: 2012. 7.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익제기 부여(관세령 §236의2)

• (신 설)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이익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이익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이익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특세법 시행령

1 임업인에 대해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 (현 행) 농업인, 어업인, 근로자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 (개 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농특세법 개정(12. 12. 30)으로 임업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근거규정 마련

2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 (현 행)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11. 12. 30, 「지특법」 개정)

- **(개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제4조제6항 제5호)

③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 **(현행)** 농협 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농협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11. 12. 30, 「지특법」 개정)
- **(개정)**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금년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원 4명으로 조정

- 정부위원 중 재정부 1명 제외, 민간위원에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1명 추가

15. 농림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별표 1·5·6)
- **(현행)**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32종), 농업용 필름·파이프, 어상자 등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65종)
- **(개정)**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추가하고
 -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추가

16.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총원(세무사영 §16)
- **(현행)** 세무사 징계위원은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6명) : 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 민간위원(3명)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
- **(개정)** 세무사 징계위원을 정부위원 5명, 민간위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 2012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입법예고 -

* 본 자료는 2012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97.9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 3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 '12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

일반+특별회계(총계)

(단위: 억원)

구 분	'12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액	2,826,873	1,246,684	732,785	522,926	324,478
	비율(%)	100.0	44.1	25.9	18.5	11.5

-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유도
 -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 배정

* 인건비·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

-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 국회·언론 등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
 -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질행실적 지속 점검

참고 최근 10년간 예산배정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예산 (일반 + 특별)	상 반 기						하반기	
		계	%	1/4	%	2/4	%	계	%
• 2002년 예산	174.0	113.7	65.4	68.8	39.6	44.9	25.8	60.3	34.6
• 2003년 예산	182.9	113.4	62.0	69.4	38.0	44.0	24.0	69.5	38.0
• 2004년 예산	186.0	118.6	63.7	73.9	39.7	44.7	24.0	67.4	36.3
• 2005년 예산	195.0	130.0	66.7	82.0	42.1	48.0	24.6	65.0	33.3
• 2006년 예산	202.1	125.6	62.2	77.2	38.2	48.4	23.9	76.5	37.8
• 2007년 예산	200.9	131.2	65.3	83.1	41.4	48.1	23.9	69.7	34.7
• 2008년 예산	219.9	137.3	62.4	83.5	38.0	53.8	24.4	82.6	37.6
• 2009년 예산	248.0	173.6	70.0	108.8	43.9	64.8	26.1	74.3	30.0
• 2010년 예산	255.3	178.3	69.8	109.8	43.0	68.6	26.8	76.9	30.2
• 2011년 예산	264.1	177.6	67.3	105.4	39.9	72.2	27.4	86.5	32.7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 본 자료는 2012년 1월 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 ◇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 10. 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

1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 발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2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3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영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II.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97 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지난 한·EU FTA 대책시 80%에서 85%로 완화(11. 7월)한 바 있음

-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11. 12. 29일 본회의 통과)

②(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용자 및 상담 지원을 제공 중

* 피해기준은 종전 25%에서 최근예('11. 9월) 20%로 완화된 바 있음

•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완료('11. 12. 29일 본회의 통과)

③(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 가능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완료('11. 12. 29일 본회의 통과)

④(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젓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 양식어업 → (개선) 양식어업, 연근

해·내수면 어업

•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12. 1월)

⑤(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⑥(감귤 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등

* 감귤지원 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

⑦(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1. 7월)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12년부터 예산(10억원)에 반영하여 설치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①(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

• 축사·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

* 시설현대화 예산 ('11)2,450억원 → ('12)4,109억원(이차보전 포함시 지원규모 7,002억원) (67.7% 증)

-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 없이 용자만 지원받을 경우 용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②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수리시설 개보수: (11)2,600억원 → (12)3,700억원(+1,100억원)
 배수개산: (11)1,801억원 → (12)2,500억원(+69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1)1,729억원 → (12)2,100억원(+371억원)

③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 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장관), 영농단지·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 12. 29일 본회의 통과)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①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12년)

-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 *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식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② (수산 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직불금(가구당 49만원) 지급

- 우선 제도 설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③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 → 40~60, (밭)67~79 → 100~120
 *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 3년)으로 연장

④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중(밭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이 중 국비 70%, 지방비 30%)

⑤ (임차농 보호)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 「농지법」 개정 완료('11. 12. 29 본회의 통과)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①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기존(11개, 밀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밀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아자박, 팜박, 면실피

②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 「조특법」 개정 원료(일몰: '12. 6월말 → '15. 12월말)(11. 12. 30일 본회의 통과)

③(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 미만)와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축산분뇨의 수거·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

-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④(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 「조특법」 개정(일몰: '11. 12월말 → '14. 12월말) 원료('11. 12. 30일 본회의 통과)

⑤(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 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 시설

(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①(소상공인 계정 설치)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원료('11. 12. 29일 본회의 통과)

②(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원료('11. 12. 30일 본회의 통과)

③(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원료('11. 12. 30일 본회의 통과)

④(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11년에 EU 정보 구축 원료, '12년 미·인도·아세안, '13년 중국, '14년 일본으로 확대 예정

- '12년 예산안을 증액하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

* ('12년)7억원 → ('12확정)12억원

Ⅲ. 추가 지원규모

(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재정지원)** 농어업 지원을 위해 최근('11. 8월) 수립된 대책의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재정지원 규모는 24.1조원(세제지원 제외)에 이룸

- **(세제지원)** '11. 8월 대책의 0.2조원에 더하여 이번 대책으로 0.8조원을 추가(일몰연장분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 규모는 1.0조원
-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원)를 포함할 경우 총세제지원 규모는 29.8조원 수준에 달함
 - ※ 농사용 전기로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규모 0.1조원은 별도
-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0조원으로서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

(단위: 조원, '08~'07년 합계)

		'07년 대책 (A, '07. 월)	수정대책 (B, '11. 8월)	추가대책 (C, '12. 1월)	증감 (C-B)	
◇ 합계		49.9	51.1	54.0*	2.9	
○ 재정		21.1	22.1	24.1	2.0	
○ 세 제	일몰 연장분	면세유	15.2	15.2	15.2	-
		영세율	13.6	13.6	13.6	-
		소계	28.8	28.8	28.8	-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0.2	1.0	0.8	
	소계	28.8	29.0	29.8	0.8	

* 농사용 전기로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참고 1 추가대책 요약

항 목	대책 내용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85% → 90%)	•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 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 현행 발동요건(20%)을 5~10% 범위 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자 및 상담 지원 제공
•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 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상담 등 제공
•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 한·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800만원 → 2,000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젓소 30마리 → 50마리, 돼지 500마리 →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가
• 축산발전기금 확충	• '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 감골 지원 확대	• '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골 지원: ('11)265억원 → ('12)384억원
•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12년부터 설치 * '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11)2,450억원 → ('12)4,109억원 • 보조 없이 용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용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수리·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 종자산업 육성	•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11. 12. 29)
• 발농업 직불제 도입	• 식량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고 발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9개 품목에 발농업 직불제 도입 (ha당 연간 40만원)
• 수산직불제 도입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하여 제도인프라 구축

항목	대책 내용
•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 → 40~60, (밭)67~79 → 100~120 •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 3년)으로 연장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 (30% → 20%)
•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농지법을 개정('11. 12. 29일)하여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 3년 6개월 연장('12. 6월말 → '15. 12월말), 10년간 지속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농업전용 사용·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러더(4톤 미만), 농업용 1톤 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 3년 연장('11. 12월말 → '14. 12월말), 10년간 지속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 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
• 소상공인 계정 설치	•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및진흥자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대형 유통시설 규제	• 시·군·구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정 가능
•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예산 확대	•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참고 2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반영 현황

1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13개 중 13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반영 현황
1. 피해보전직불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 기준 상향조정(기준가격 85% 미만 → 90% 미만) •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 	• 수용
2. 발농업·수산직불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업직불제는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을 지급 •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13년부터 시행)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30% → 20%) 	• 수용
3. 농사용 전기(병)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 수용(일부조정) •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제외 * 쌀은 FTA 미개방 품목으로 FTA에 따른 피해가 없음
4.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 수용
5. 축산·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소득금액 확대(1,800만원 → 2,000만원) •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 조정 * 소: 30 → 50, 돼지: 500 → 1,000, 닭: 15,000 → 30,000 	• 수용(일부조정) • 공제두수 일부 조정 * 소: 30 → 50, 돼지: 500 → 700 닭은 현행 유지
6. 축산발전기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2조 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 외에서 확보 	• 수용(일부조정) • 10년간 2조원 확충
7. 수리시설 예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 수용

합의문 내용	반영 현황
8. 친환경 유기·무농약 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 	• 수용
9. 농어업용 면세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어업용 1톤트럭과 4톤 미만 스kid로더 추가 	• 수용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영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 수용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 수용
12. 감귤 등 과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 	• 수용
13. 임차농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1년에 처리 	• 수용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4개 중 4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반영 현황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합업종 일몰기간은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일부조정)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합의도출·공표 미합의 또는 미이행 시 사업조정 신청 * 여야 합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여 반영 ('11. 12. 30)
2.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요건을 현행 20%에서 컨설팅은 5%, 용자는 10%로 완화 1인 자영업자가 폐업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비용, 무역조정 수당 등을 지급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지경부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현행 20% → 5%~10%로 완화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 준하여 지원 * 여야합의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여 반영 ('11. 12. 29)
3. 소상공인 지원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 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일부조정)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 여야합의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영 ('11. 12. 29)
4. 대형 유통시설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반영 ('11. 12. 30)

참고 3 FTA 종합대책('11. 8월) 주요 내용(22.1조원)

- ◇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재정투자 효율화)**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조원 → 22.1조원)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등 우선순위 조정으로 기존대책을 내실화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였음

①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2.2조원 → 4.0조원)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 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과수·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② 아울러, 농어업의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도 지속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도 강화

*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원 → 30억원)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 (세제지원)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31일 예산실에서 발표한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2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26.1조원) 대비 △0.7조원 순감(감액 △3.9조원, 증액 3.2조원)된 325.4조원으로 확정
 - * 수입 감소(국세 △0.2조원, 인천공항 매각 △0.4조원) 수준 만큼 지출 축소
-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
 - 재정수지는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14.3조원) 유지
 - 국가채무는 445.9조원, GDP 대비 32.7% 수준

(단위: 조원, '08~'07년 합계)

	'11년 (A)	'12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 총 지출	309.1	326.1	325.4	△0.7	16.4	5.3
• 총 수입	314.4	344.1	343.5	△0.6	29.2	9.3
•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25.0	△14.3	△14.3	-	10.8	
(GDP 대비, %)	(△2.0)	(△1.0)	(△1.0)	(-)	(1.0p)	
• 국가채무	435.5	448.2	445.9	△2.3	10.4	
(GDP 대비, %)	(35.1)	(32.8)	(32.7)	(△0.1p)	(△2.4p)	

* 정부안 편성시 GDP 적용, '12년 경제정책방향(11. 12월, '12년 성장률 4.5% → 3.7%로 조정)상 GDP 적용시 재정수지는 △1.1%, 국가채무는 33.3%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 복지, 경제활력 제고 등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사업 지원

- 한·미 FTA,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소요 지원
 - * 감액 주요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2.1조원*), 사업비·예비비 등(△1.8조원)
 - * 교부세·교육교부금 △0.1조원(내국세 감소 연동), 국채이자 △1.3조원(상환금리 인하),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0.3조원(11년 예비비로 기상환) 등

주요 증액내역

(단위: 억원)

	정부안	국회증액	확정
• 일자리 확충	101,107	3,774	104,881
•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44,015	7,783	51,798
• 경제활력 제고	237,645	5,423	243,068
• 한·미 FTA 지원	18,536	3,042	21,578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지원	857	230	1,087

(1) 일자리 확충: +3,774억원

①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3,774억원, 0.1만명)

	'11년 (A)	'12년		국회 증액		'11년 대비	
		정부안(B)	최종(C)	(C-B)	%	(C-A)	%
예산(억원)	94,679	101,107	104,881	3,774	3.7	10,202	10.8
인원(만명)	54.1	56.2	56.3	0.1	0.2	2.2	4.1

② **(사회보험료)** '일하는 복지'를 위해 지원대상·수준을 정부안보다 확대하고, 본 사업을 10월 → 7월로 앞당겨 시행(+1,984억원)

	정부안	최종
• 지원대상	5인 미만	10인 미만
• 추진시기	'12년 10월	'12년 7월
• 지원수준	1/3	1/2, 1/3*
• 시범사업	광역 1, 기초 1	기초 16
• 수혜인원	최대 122만명	최대 212만명
• '12년 소요	670억원	2,654억원

*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1/3 지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직업훈련을 전제로 청년 및 장년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구직 동기를 제고(+1,529억원)

* 자격요건: 일정 가구소득(중위소득) 이하 실업자로서 최종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1년) 미취업중인 청년, 실업급여 종료 또는 수급요건 미충족 장년 등

- 기존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상담-직업훈련-알선) 중 직업훈련 단계까지 참여시 4개월간 수당과 직업훈련바우처(내일배움카드) 지원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 기간(최장)	1개월	3개월
• 수당(월)	20만원	31.6만원 (교통비·식비 11.6만원 포함)
• 훈련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 200만원

④ **(기타 일자리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20억원), 강소농(強小農) 추진 민간전문가(30억원) 등 신규지원

(2)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지원: +7,783억원

- 복지예산 규모 확대
-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676억원 증가한 92.6조원으로 확정

(단위: 조원)

	'11년	'12정부안	'12확정
• 복지예산 규모	86.4	92.0	92.6
(증가율)	6.3	6.4	7.2
•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	28.0	28.2	28.5

-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신규도입·확대: +7,783억원

⑤ **(보육)** 국가가 보육을 확실히 책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12년)

* ('11) 13,443억원 → ('12정부안) 14,949억원 → ('12최종) 18,647억원

- 5세아 '누리과정' (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 도입('12년)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13~'14년)

* ('11) 3,597억원 → ('12정부안) 11,389억원 → ('12최종) 11,389억원

- 보육교사 겸임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 ('11) - → ('12정부안) 407억원 → ('12최종) 462억원

⑥ **(교육)** 국가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확충·재정비

-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정부안보다 2,500억원 확대(1.5조원 → 1.75조원)

- 금리 인하($\Delta 1\% p$: 4.9% → 3.9%), 성적요건 완화* 등 학자금 수혜를 확대하고, 긴급 학자금 상환유예** 등 제도개선 병행

* 든든학자금(CL) 성적요건 완화 ('11) B0 이상 → ('12) C0 이상

**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에게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⑦ **(의료)** 고혈압·당뇨병 및 만성 콩팥병(신규)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확대

* ('11) 73억원 → ('12정부안) 86억원 → ('12최종) 114억원

8 (식품 안전) 집단 급식소의 살균·소독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 (11) 31억원 → (12정부안) 39억원 → (12최종) 69억원

9 (취약계층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생활안정 지원 확대

【노인】

- 전국 6만 2천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개소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 539억원(복지부 일반회계 270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69억원)
-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 수 확대 지원(2,893명 중)
 - * (11년) 31,125명 → (12정부안) 28,232명 → (12최종) 31,125명

【아동】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3,500개소, 월 400만원 → 410만원)
 - * (11) 977억원 → (12정부안) 1,089억원 → (12최종) 1,109억원
- 고아원 등 노후화된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 * (11) 40억원 → (12정부안) 63억원 → (12최종) 76억원

【장애인】

- 출산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시 1백만원 지원(12신규, 9억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 (11) 24억원 → (12정부안) 24억원 → (12최종) 34억원

(3) 경제활력 제고: +5,423억원

1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기업활동 지원 확대
 - * 중소기업전용매장(‘특특매장’): (11) - → (12정부안) 16억원 /1개 → (12최종) 26억원/2개
 - * 여성·장애인 기업활동지원: (11) 63억원 → (12정부안) 70억원 → (12최종) 103억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신규지원(3개소, 299억원)

11 (SOC)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기간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안 대비 4,427억원 증액(22.6조원 → 23.1조원)

- **(국가기간망 확충)**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 중부내륙고속도로(화도-양평) 착공: (11) - → (12정부안) - → (12최종) 20억원
 - * 호남고속철도: (11) 5,500억원 → (12정부안) 7,500억원 → (12최종) 7,800억원
- **(국책사업 지원)** 30대 선도프로젝트, 국제행사 개최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 여수-고흥 연육·연도교: (11) 352억원 → (12정부안) 620억원 → (12최종) 680억원
 - * 봉화-울진 국도: (11) 630억원 → (12정부안) 800억원 → (12최종) 850억원
 - *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11) 4,105억원 → (12정부안) 944억원 → (12최종) 1,044억원
- **(대도시 교통여건 개선)** 대도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광역도로·철도 투자 확충
 -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 (11) - → (12정부안) - → (12최종) 20억원
 - *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 (11) 20억원 → (12정부안) 150억원 → (12최종) 180억원

12 (환경투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

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기능 지속 정비
 - * 하수관거 정비: (11) 5,285억원 → (12정부안) 6,166억원 → (12최종) 6,411억원
 - * 공단폐수처리시설: (11) 2,195억원 → (12정부안) 3,449억원 → (12최종) 3,637억원
- 친수공간 확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확대
 - * 생태하천복원사업: (11) 1,311억원 → (12정부안) 1,446억원 → (12최종) 1,667억원

(4) 한·미 FTA 지원 등

- 13 (한·미 FTA 지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 (10. 31일)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축어업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3,042억원)
- 농어민의 피해보전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5 → 90%) 및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 * 피해보전직불금: (11) 265억원 → (12정부안) 530억원 → (12최종) 630억원
 -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수리시설, 시설현대화, 축산인프라 등 지원 확대
 - * 수리시설 확충: (11) 6,130억원 → (12정부안) 7,300억원 → (12최종) 8,300억원
 - *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이차보전을 통한 융자 포함시): (11) 2,450억원 → (12정부안) 3,926(6,051)억원 → (12최종) 4,109억원(7,002억원)
 - 발농업직불제(624억원)·수산직불제(18억원) 신규 도입, 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 강화
 - * 친환경농업직불제: (11) 379억원 → (12정부안) 393억원 → (12최종) 506억원
 -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1) 388억원 → (12정부안) 381억원 → (12최종) 436억원

- 14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지원)**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비 및 인력 대폭 확대 지원(+230억원)
- EEZ 침범 중국어선을 1시간 이내 감시·단속이 가능하도록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 및 고속단정 18척 추가배치 지원
 -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압작전을 위하여 진압·안전장비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 시뮬레이션 사격장 등 신규 지원
 - * (진압장비) 총기 및 탄약류 등 32억원, (안전장비) 방검부력조끼 등 9억원(통신·채증 장비) 헬멧용 헤드셋 등 24억원, (시뮬레이션 사격장) 6개소, 6억원
 - 해상특수기동대 인력 보강 및 사기진작 소요 신규 반영
 - * 특수부대 출신 '12년 102명 총원, 진압·구조활동비 등 월 10만원 신규 지급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
-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한 내년 상반기 경기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분	'11년 (A)	'12년 정부안(B)	'12년 최종(C)	증감		
				(C-B)	(C-A)	(%)
1. R&D	14.9	16.0	16.0	0.05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중소기업)	15.2 (6.0)	15.2 (6.2)	15.1 (6.2)	△0.15 (-)	△0.1 (0.2)	(△0.5) (0.3)
3. SOC	24.4	22.6	23.1	0.44	△1.3	(△5.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1	0.02	0.5	(2.8)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92.6	0.67	6.2	(7.2)
6. 교육	41.2	45.1	45.5	0.43	4.3	(10.3)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0.13	0.4	(8.8)
8. 환경	5.8	6.1	6.0	△0.16	0.2	(3.5)
9. 국방(일반회계)	31.4	33.2	33.0	△0.20	1.6	(4.9)
10. 외교·통일	3.7	3.9	3.9	△0.004	0.2	(8.0)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4.5	△0.03	0.8	(6.3)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5.1	△1.47	2.7	(5.3)
◇ 총지출	309.1	326.1	325.4	△0.7	16.4	(5.3)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 (2002~2009)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	합계	138,479,833	106,268,900	13,730,277	18,480,655	110,507,834
	1. 지방세	31,583,550	31,583,550	-	-	31,583,550
	2. 세외수입	48,495,715	23,419,482	11,816,397	13,259,836	42,284,635
	가. 경상적세외 수입	11,164,999	3,424,419	4,590,408	3,150,172	10,331,316
	재산임대 수입	123,761	99,637	5,965	18,159	123,761
	사용료 수입	3,690,835	505,960	2,454,240	730,634	3,690,835
	수수료 수입	941,466	849,908	42,509	49,049	941,466
	사업장생산 수입	3,986,598	323,149	1,580,742	2,082,707	3,986,598
	징수교부금 수입	666,002	660,123	-	5,879	57,255
	이자 수입	1,756,337	985,642	506,952	263,742	1,531,402
	나. 임시적세외 수입	37,330,716	19,995,063	7,225,989	10,109,664	31,953,319
	재산 매각수	1,130,913	745,788	262,526	122,599	1,130,913
	순세계 이월금	10,418,536	5,319,213	2,582,983	2,516,340	10,418,536
	이월금	16,070,023	11,730,426	1,821,663	2,517,934	16,070,023
	전입금	4,068,848	428,196	688,956	2,951,696	140,449
	예탁금 및 예수금	231,275	115,786	2,862	112,627	209,246
	융자금 원금 수입	1,700,302	71,112	1,192,781	436,409	695,098
	부담금	1,365,397	492,327	206,315	666,755	1,035,226
	잡수입	1,758,977	878,034	306,739	574,205	1,667,383
	과년도 수입	586,444	214,182	161,163	211,100	586,444
	3. 지방 교부세	12,060,352	12,050,563	2,593	7,197	12,060,352
	4. 증액 교부금	418,729	418,729	-	-	418,729
	5. 지방 양여금	4,190,050	4,021,827	32,411	135,812	4,190,050
	6. 조정 교부금	2,650,639	2,647,995	-	2,644	-
	7. 재정 보전금	2,325,093	2,325,080	-	13	-
	8. 보조금	32,198,745	28,850,872	210,076	3,137,796	16,218,848
	국고 보조금	27,289,609	24,409,142	104,139	2,776,327	16,218,848
시·도비 보조금	4,909,136	4,441,730	105,937	361,469	-	
9. 지방채	4,556,960	950,801	1,668,801	1,937,357	3,751,669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4,508,229	11,405,364	14,594,241	27,971,999	21,760,671	2,324,913	3,886,415
31,583,550	-	-	-	-	-	-
22,118,158	9,995,368	10,171,110	6,211,079	1,301,324	1,821,029	3,088,726
2,821,243	4,365,473	3,144,599	833,683	603,176	224,935	5,572
99,637	5,965	18,159	-	-	-	-
505,960	2,454,240	730,634	-	-	-	-
849,908	42,509	49,049	-	-	-	-
323,149	1,580,742	2,082,707	-	-	-	-
56,947	-	307	608,748	603,176	-	5,572
985,642	282,017	263,742	224,935	-	224,935	-
19,296,915	5,629,894	7,026,510	5,377,396	698,148	1,596,094	3,083,154
745,788	262,526	122,599	-	-	-	-
5,319,213	2,582,983	2,516,340	-	-	-	-
11,730,426	1,821,663	2,517,934	-	-	-	-
23,416	109,118	7,916	3,928,399	404,780	579,839	2,943,780
104,562	-	104,684	22,030	11,224	2,862	7,943
71,112	187,578	436,409	1,005,203	-	1,005,203	-
293,896	198,125	543,206	330,170	198,431	8,190	123,549
794,321	306,739	566,323	91,595	83,713	-	7,881
214,182	161,163	211,100	-	-	-	-
12,050,563	2,593	7,197	-	-	-	-
418,729	-	-	-	-	-	-
4,021,827	32,411	135,812	-	-	-	-
-	-	-	2,650,639	2,647,995	-	2,644
-	-	-	2,325,093	2,325,080	-	13
13,742,185	28,903	2,447,760	15,979,897	15,108,686	181,174	690,037
13,742,185	28,903	2,447,760	11,070,761	10,666,957	75,236	328,567
-	-	-	4,909,136	4,441,730	105,937	361,469
573,216	1,346,091	1,832,362	805,290	377,585	322,710	104,995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	합계	153,119,840	120,443,179	13,959,109	18,717,552	122,725,967
	1. 지방세	33,061,987	33,061,987	-	-	33,061,987
	2. 세외수입	59,337,579	33,248,488	12,007,222	14,081,868	53,123,913
	가. 경상적세외 수입	11,138,589	3,788,866	4,542,767	2,806,956	10,226,736
	재산임대 수입	175,196	111,729	41,079	22,389	175,196
	사용료 수입	4,114,847	554,187	2,766,465	794,195	4,114,847
	수수료 수입	948,972	877,510	21,308	50,154	948,972
	사업장생산 수입	3,221,916	300,918	1,251,327	1,669,671	3,221,916
	징수교부금 수입	768,207	759,045	1,080	8,082	51,764
	이자 수입	1,909,451	1,185,477	461,508	262,465	1,714,041
	나. 임시적세외 수입	48,198,990	29,459,622	7,464,456	11,274,912	42,897,177
	재산 매각수	1,053,026	840,734	138,176	74,116	1,053,026
	순세계 이월금	13,986,256	7,038,307	3,579,557	3,368,392	13,986,256
	이월금	22,872,442	18,821,452	1,405,183	2,645,806	22,872,442
	전입금	4,158,746	368,264	614,714	3,175,768	108,620
	예탁금 및 예수금	294,805	153,183	3	141,619	235,242
	융자금 원금 수입	1,184,626	59,046	784,494	341,085	449,908
	부담금	1,887,231	707,669	443,673	735,889	1,529,306
	잡수입	2,096,815	1,302,550	216,049	578,217	1,997,334
	과년도 수입	665,044	168,418	282,606	214,020	665,044
	3. 지방 교부세	13,397,334	13,370,311	1,230	25,793	13,397,334
	4. 증액 교부금	1,640,422	1,593,122	37,300	10,000	1,640,422
	5. 지방 양여금	4,412,010	4,280,867	46,010	85,133	4,412,010
	6. 조정 교부금	3,664,648	3,655,281	-	9,367	-
	7. 재정 보전금	2,558,486	2,555,534	-	2,952	-
	8. 보조금	31,103,970	27,479,668	316,946	3,307,357	14,254,518
국고 보조금	24,445,148	21,325,149	162,671	2,957,328	14,254,518	
시·도비 보조금	6,658,822	6,154,519	154,275	350,028	-	
9. 지방채	3,943,404	1,197,920	1,550,401	1,195,082	2,835,782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96,503,974	12,011,187	14,210,806	30,393,873	23,939,205	1,947,922	4,506,746
33,061,987	-	-	-	-	-	-
31,926,358	10,501,346	10,696,210	6,213,666	1,322,130	1,505,877	3,385,659
3,080,619	4,346,277	2,799,841	911,853	708,247	196,490	7,115
111,729	41,079	22,389	-	-	-	-
554,187	2,766,465	794,195	-	-	-	-
877,510	21,308	50,154	-	-	-	-
300,918	1,251,327	1,669,671	-	-	-	-
50,798	-	967	716,442	708,247	1,080	7,115
1,185,477	266,098	262,465	195,410	-	195,410	-
28,845,739	6,155,069	7,896,369	5,301,813	613,883	1,309,387	3,378,543
840,734	138,176	74,116	-	-	-	-
7,038,307	3,579,557	3,368,392	-	-	-	-
18,821,452	1,405,183	2,645,806	-	-	-	-
20,861	58,430	29,329	4,050,126	347,403	556,283	3,146,439
115,203	3	120,036	59,563	37,980	-	21,583
59,046	49,776	341,085	734,718	-	734,718	-
575,136	425,288	528,882	357,925	132,533	18,385	207,007
1,206,582	216,049	574,703	99,481	95,967	-	3,514
168,418	282,606	214,020	-	-	-	-
13,370,311	1,230	25,793	-	-	-	-
1,593,122	37,300	10,000	-	-	-	-
4,280,867	46,010	85,133	-	-	-	-
-	-	-	3,664,648	3,655,281	-	9,367
-	-	-	2,558,486	2,555,534	-	2,952
11,715,739	26,501	2,512,278	16,849,452	15,763,929	290,444	795,078
11,715,739	26,501	2,512,278	10,190,630	9,609,410	136,170	445,050
-	-	-	6,658,822	6,154,519	154,275	350,028
555,589	1,398,801	881,392	1,107,621	642,331	151,600	313,690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4	합계	154,187,252	119,072,587	15,158,434	19,956,231	125,843,536
	1. 지방세	34,159,382	34,159,382	-	-	34,159,382
	2. 세외수입	62,792,894	35,150,153	12,816,260	14,826,481	56,387,552
	가. 경상적세의 수입	11,077,434	3,905,242	4,522,354	2,649,838	10,177,623
	재산임대 수입	175,004	152,525	4,244	18,236	175,004
	사용료 수입	4,383,381	617,689	3,012,238	753,454	4,383,381
	수수료 수입	955,004	875,277	28,163	51,565	955,004
	사업장생산 수입	3,004,899	400,076	1,022,506	1,582,317	3,004,899
	징수교부금 수입	795,154	787,205	96	7,853	75,089
	이자 수입	1,763,992	1,072,470	455,108	236,414	1,584,246
	나. 임시적세의 수입	51,715,459	31,244,911	8,293,905	12,176,643	46,209,929
	재산 매각수	876,912	690,538	136,449	49,925	876,912
	순세계 이월금	14,360,721	6,779,624	3,890,145	3,690,952	14,360,721
	이월금	25,556,209	20,503,771	1,996,411	3,056,027	25,556,209
	전입금	4,443,976	599,526	600,458	3,243,993	177,380
	예탁금 및 예수금	401,725	165,858	-	235,868	362,215
	융자금 원금 수입	1,128,544	63,138	754,861	310,545	490,344
	부담금	1,921,502	731,643	459,629	730,230	1,475,394
	잡수입	2,160,378	1,360,917	181,391	618,071	2,045,262
	과년도 수입	865,491	349,897	274,562	241,033	865,491
	3. 지방 교부세	14,234,544	14,228,845	749	4,951	14,234,544
	4. 증액 교부금	240,744	200,705	40,040	-	240,744
	5. 지방 양여금	3,848,942	3,775,315	24,395	49,232	3,848,942
	6. 조정 교부금	3,733,332	3,730,946	-	2,386	-
	7. 재정 보전금	2,497,437	2,497,274	143	20	-
	8. 보조금	27,446,276	23,611,560	309,324	3,525,392	13,496,361
	국고 보조금	22,230,720	18,832,204	198,769	3,199,746	13,496,361
시·도비 보조금	5,215,556	4,779,355	110,555	325,646	-	
9. 지방채	5,233,701	1,718,409	1,967,522	1,547,769	3,476,010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97,230,960	13,306,615	15,305,961	28,343,716	21,841,627	1,851,818	4,650,271
34,159,382	-	-	-	-	-	-
33,507,014	11,460,580	11,419,959	6,405,341	1,643,139	1,355,680	3,406,522
3,193,126	4,342,513	2,641,985	899,811	712,116	179,842	7,853
152,525	4,244	18,236	-	-	-	-
617,689	3,012,238	753,454	-	-	-	-
875,277	28,163	51,565	-	-	-	-
400,076	1,022,506	1,582,317	-	-	-	-
75,089	-	-	720,065	712,116	96	7,853
1,072,470	275,362	236,414	179,746	-	179,746	-
30,313,888	7,118,067	8,777,974	5,505,531	931,023	1,175,838	3,398,669
690,538	136,449	49,925	-	-	-	-
6,779,624	3,890,145	3,690,952	-	-	-	-
20,503,771	1,996,411	3,056,027	-	-	-	-
95,297	75,045	7,038	4,266,597	504,229	525,413	3,236,955
162,076	-	200,139	39,511	3,782	-	35,729
63,138	116,660	310,545	638,200	-	638,200	-
420,213	447,404	607,777	446,107	311,429	12,226	122,452
1,249,334	181,391	614,538	115,116	111,583	-	3,533
349,897	274,562	241,033	-	-	-	-
14,228,845	749	4,951	-	-	-	-
200,705	40,040	-	-	-	-	-
3,775,315	24,395	49,232	-	-	-	-
-	-	-	3,733,332	3,730,946	-	2,386
-	-	-	2,497,437	2,497,274	143	20
10,774,053	56,418	2,665,890	13,949,915	12,837,507	252,906	859,502
10,774,053	56,418	2,665,890	8,734,359	8,058,152	142,351	533,857
-	-	-	5,215,556	4,779,355	110,555	325,646
585,647	1,724,434	1,165,930	1,757,691	1,132,762	243,089	381,840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	합계	159,004,181	122,922,689	16,034,405	20,047,086	128,414,560
	1. 지방세 수입	35,976,900	35,976,900	-	-	35,976,900
	2. 세외수입	59,213,397	30,884,090	13,625,305	14,704,003	51,863,067
	가. 경상적세외 수입	11,256,389	3,829,608	4,746,040	2,680,741	10,323,876
	재산임대 수입	202,397	172,324	10,632	19,442	202,397
	사용료 수입	4,567,491	653,962	3,046,645	866,883	4,567,491
	수수료 수입	887,174	802,014	30,014	55,146	887,174
	사업장생산 수입	3,213,346	499,933	1,229,344	1,484,068	3,213,346
	징수교부금 수입	835,561	819,291	7,896	8,374	83,348
	이자 수입	1,550,420	882,084	421,510	246,827	1,370,120
	나. 임시적세외 수입	47,957,008	27,054,483	8,879,264	12,023,262	41,539,191
	재산매각 수입	1,769,567	1,432,094	129,476	207,996	1,769,567
	순세계 이월금	12,484,978	5,787,798	3,554,487	3,142,694	12,484,978
	이월금	21,241,973	16,498,870	1,857,705	2,885,398	21,241,973
	전입금	5,603,708	1,084,169	722,555	3,796,984	440,313
	예탁금 및 예수금	227,786	157,000	100	70,686	167,600
	융자금원금 수입	1,164,607	54,457	718,059	392,091	560,316
	부담금	2,234,011	801,976	697,804	734,231	1,792,072
	잡수입	1,873,647	1,034,385	269,178	570,084	1,725,641
	과년도 수입	1,356,732	203,734	929,900	223,098	1,356,732
	3. 지방 교부세	20,025,251	20,018,269	32	6,950	20,025,251
	4.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5,839,645	5,837,381	2	2,262	-
	5. 보조금	32,994,371	28,408,020	445,984	4,140,367	16,945,663
국고 보조금	27,937,461	23,604,134	385,448	3,947,879	16,945,663	
시·도비 보조금	5,056,910	4,803,886	60,536	192,488	-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54,616	1,798,030	1,963,082	1,193,504	3,603,678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99,714,240	13,876,667	14,823,653	30,589,621	23,208,449	2,157,738	5,223,433
35,976,900	-	-	-	-	-	-
29,104,657	12,086,770	10,671,640	7,350,330	1,779,433	1,538,535	4,032,363
3,093,665	4,557,845	2,672,367	932,513	735,943	188,196	8,374
172,324	10,632	19,442	-	-	-	-
653,962	3,046,645	866,883	-	-	-	-
802,014	30,014	55,146	-	-	-	-
499,933	1,229,344	1,484,068	-	-	-	-
83,348	-	-	752,213	735,943	7,896	8,374
882,084	241,209	246,827	180,300	-	180,300	-
26,010,993	7,528,925	7,999,273	6,417,818	1,043,490	1,350,339	4,023,989
1,432,094	129,476	207,996	-	-	-	-
5,787,798	3,554,487	3,142,694	-	-	-	-
16,498,870	1,857,705	2,885,398	-	-	-	-
376,666	31,466	32,181	5,163,395	707,503	691,090	3,764,802
121,500	100	46,000	60,186	35,500	-	24,686
54,457	113,768	392,091	604,291	-	604,291	-
644,835	642,846	504,391	441,939	157,140	54,958	229,840
891,038	269,178	565,424	148,007	143,346	-	4,660
203,734	929,900	223,098	-	-	-	-
20,018,269	32	6,950	-	-	-	-
-	-	-	5,839,645	5,837,381	2	2,262
13,797,816	83,884	3,063,964	16,048,707	14,610,204	362,100	1,076,403
13,797,816	83,884	3,063,964	10,991,798	9,806,318	301,564	883,916
-	-	-	5,056,910	4,803,886	60,536	192,488
816,598	1,705,981	1,081,099	1,350,938	981,432	257,101	112,405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6	합계	174,309,838	135,577,133	16,092,605	22,640,100	139,824,206
	1. 지방세 수입	41,281,810	41,281,810	-	-	41,281,810
	2. 세외수입	59,632,391	30,199,116	13,282,176	16,151,099	51,771,143
	가. 경상적세외 수입	11,809,302	3,963,642	4,976,392	2,869,268	10,822,615
	재산임대 수입	210,916	179,905	11,159	19,852	210,916
	사용료 수입	4,862,050	697,374	3,272,774	891,902	4,862,050
	수수료 수입	888,226	811,716	20,539	55,971	888,226
	사업장생산 수입	3,377,476	480,216	1,219,774	1,677,486	3,377,476
	징수교부금 수입	899,443	889,399	393	9,651	100,498
	이자 수입	1,571,192	905,033	451,754	214,405	1,383,450
	나. 임시적세외 수입	47,823,089	26,235,474	8,305,783	13,281,831	40,948,527
	재산매각 수입	2,199,424	966,697	274,230	958,498	2,199,424
	순세계 이월금	12,374,144	5,136,740	3,994,072	3,243,332	12,374,144
	이월금	20,252,214	15,940,931	1,639,736	2,671,548	20,252,214
	전입금	5,912,768	954,738	621,263	4,336,766	348,333
	예탁금 및 예수금	441,137	235,600	209	205,328	385,659
	융자금원금 수입	1,020,417	46,175	742,946	231,297	419,007
	부담금	2,645,928	1,232,026	536,909	876,993	2,133,173
	잡수입	1,832,304	1,191,083	115,884	525,337	1,691,819
	과년도 수입	1,144,753	531,484	380,535	232,734	1,144,753
	3. 지방 교부세	21,744,140	21,734,681	2,027	7,433	21,744,140
	4.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6,305,029	6,282,626	-	22,403	-
	5. 보조금	40,108,467	34,282,153	662,670	5,163,644	21,119,964
	국고 보조금	34,453,032	28,950,956	533,677	4,968,399	21,119,964
	시·도비 보조금	5,655,435	5,331,197	128,993	195,245	-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238,001	1,796,747	2,145,732	1,295,522	3,907,150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09,090,416	13,950,486	16,783,305	34,485,632	26,486,717	2,142,119	5,856,795
41,281,810	-	-	-	-	-	-
28,254,994	11,859,627	11,656,522	7,861,249	1,944,123	1,422,548	4,494,578
3,174,741	4,788,258	2,859,616	986,687	788,901	188,135	9,651
179,905	11,159	19,852	-	-	-	-
697,374	3,272,774	891,902	-	-	-	-
811,716	20,539	55,971	-	-	-	-
480,216	1,219,774	1,677,486	-	-	-	-
100,498	-	-	798,945	788,901	393	9,651
905,033	264,013	214,405	187,741	-	187,741	-
25,080,253	7,071,369	8,796,905	6,874,562	1,155,222	1,234,414	4,484,926
966,697	274,230	958,498	-	-	-	-
5,136,740	3,994,072	3,243,332	-	-	-	-
15,940,931	1,639,736	2,671,548	-	-	-	-
248,107	3,261	96,965	5,564,434	706,631	618,002	4,239,801
230,100	209	155,351	55,478	5,500	-	49,978
46,175	141,536	231,297	601,410	-	601,410	-
922,848	521,907	688,418	512,755	309,178	15,002	188,575
1,057,171	115,884	518,764	140,485	133,912	-	6,573
531,484	380,535	232,734	-	-	-	-
21,734,681	2,027	7,433	-	-	-	-
-	-	-	6,305,029	6,282,626	-	22,403
17,072,452	101,429	3,946,083	18,988,503	17,209,701	561,241	1,217,561
17,072,452	101,429	3,946,083	13,333,068	11,878,504	432,248	1,022,316
-	-	-	5,655,435	5,331,197	128,993	195,245
746,480	1,987,403	1,173,268	1,330,851	1,050,268	158,330	122,254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7	합계	189,544,951	146,975,065	17,183,192	25,386,695	151,756,297
	1. 지방세 수입	43,531,553	43,531,553	-	-	43,531,553
	2. 세외수입	65,831,341	34,076,213	14,232,855	17,522,273	56,825,427
	가. 경상적세외 수입	13,230,120	4,385,499	5,915,619	2,929,001	12,100,534
	재산임대 수입	374,450	202,803	8,294	163,353	374,450
	사용료 수입	4,929,801	733,513	3,502,096	694,192	4,929,801
	수수료 수입	951,340	856,696	34,946	59,698	951,340
	사업장생산 수입	3,980,300	405,593	1,869,879	1,704,828	3,980,300
	징수교부금 수입	1,045,523	1,001,474	1,905	42,145	105,044
	이자 수입	1,948,704	1,185,420	498,500	264,785	1,759,598
	나. 임시적세외 수입	52,601,222	29,690,714	8,317,236	14,593,272	44,724,893
	재산매각 수입	1,690,842	1,098,553	81,159	511,131	1,690,842
	순세계 이월금	16,133,373	8,272,566	3,869,461	3,991,346	16,133,373
	이월금	20,062,209	16,427,246	1,329,876	2,305,087	20,062,209
	전입금	6,420,689	1,065,781	671,371	4,683,537	268,870
	예탁금 및 예수금	678,119	106,685	10,500	560,934	602,174
	융자금원금 수입	1,579,370	50,767	1,317,645	210,957	608,935
	부담금	3,213,402	1,217,455	599,839	1,396,108	2,731,748
	잡수입	1,931,581	1,136,007	120,381	675,193	1,735,106
	과년도 수입	891,637	315,654	317,004	258,979	891,637
	3. 지방 교부세	25,239,375	25,229,449	5,519	4,406	25,239,375
	4.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7,234,539	7,189,984	-	44,555	-
	5. 보조금	42,304,711	34,978,593	722,455	6,603,663	22,352,188
	국고 보조금	35,486,041	28,507,401	589,376	6,389,264	22,352,188
	시·도비 보조금	6,818,669	6,471,192	133,079	214,399	-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403,433	1,969,273	2,222,364	1,211,797	3,807,755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18,242,810	14,613,653	18,899,835	37,788,654	28,732,254	2,569,540	6,486,860
43,531,553	-	-	-	-	-	-
31,973,373	12,359,431	12,492,622	9,005,915	2,102,839	1,873,424	5,029,652
3,488,186	5,725,473	2,886,874	1,129,586	897,313	190,146	42,127
202,803	8,294	163,353	-	-	-	-
733,513	3,502,096	694,192	-	-	-	-
856,696	34,946	59,698	-	-	-	-
405,593	1,869,879	1,704,828	-	-	-	-
104,161	865	18	940,480	897,313	1,040	42,127
1,185,420	309,394	264,785	189,106	-	189,106	-
28,485,188	6,633,958	9,605,747	7,876,329	1,205,526	1,683,278	4,987,525
1,098,553	81,159	511,131	-	-	-	-
8,272,566	3,869,461	3,991,346	-	-	-	-
16,427,246	1,329,876	2,305,087	-	-	-	-
238,019	7,862	22,989	6,151,819	827,761	663,509	4,660,549
102,885	-	499,289	75,945	3,800	10,500	61,645
50,767	347,210	210,957	970,435	-	970,435	-
1,031,400	561,005	1,139,343	481,654	186,054	38,834	256,765
948,097	120,381	666,627	196,476	187,910	-	8,565
315,654	317,004	258,979	-	-	-	-
25,229,449	5,519	4,406	-	-	-	-
-	-	-	7,234,539	7,189,984	-	44,555
16,726,496	163,741	5,461,952	19,952,523	18,252,097	558,714	1,141,711
16,726,496	163,741	5,461,952	13,133,853	11,780,905	425,635	927,313
-	-	-	6,818,669	6,471,192	133,079	214,399
781,939	2,084,962	940,855	1,595,678	1,187,334	137,402	270,942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계속>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8	합계	208,608,995	165,782,488	17,150,900	25,675,607	166,804,986
	1. 지방세 수입	45,835,149	45,835,149	-	-	45,835,149
	2. 세외수입	68,739,098	37,030,400	14,188,090	17,520,608	59,338,707
	가. 경상적세외 수입	13,716,807	4,841,358	6,537,397	2,338,051	12,665,949
	재산임대 수입	500,766	211,126	267,350	22,290	500,766
	사용료 수입	6,276,979	835,773	4,568,877	872,329	6,276,979
	수수료 수입	960,876	883,312	16,223	61,341	960,876
	사업 수입	2,620,886	397,988	1,229,865	993,033	2,620,886
	징수교부금 수입	1,120,904	1,035,346	3,943	81,615	230,675
	이자 수입	2,236,396	1,477,813	451,140	307,443	2,075,767
	나. 임시적세외 수입	55,022,291	32,189,042	7,650,693	15,182,557	46,672,758
	재산매각 수입	1,754,652	1,032,157	51,357	671,138	1,754,652
	순세계 이월금	16,458,428	9,504,736	2,814,403	4,139,288	16,458,428
	이월금	21,701,344	17,179,064	1,989,877	2,532,404	21,701,344
	전입금	7,043,389	986,660	855,321	5,201,408	357,983
	예탁금 및 예수금	214,765	129,238	63,955	21,572	63,955
	융자금원금 수입	1,103,002	49,952	880,073	172,978	492,620
	부담금	3,615,238	1,442,152	574,232	1,598,855	2,956,238
	잡수입	2,158,808	1,483,361	168,799	506,648	1,914,874
	지난년도 수입	972,664	381,723	252,675	338,266	972,664
	3. 지방교부세	31,094,330	31,081,336	-	12,993	31,094,330
	4.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6,734,750	6,734,750	-	-	-
	조정 교부금	3,536,853	3,536,853	-	-	-
	재정 보전금	3,197,898	3,197,898	-	-	-
	5. 보조금	49,926,074	42,485,818	710,089	6,730,166	25,808,477
	국고 보조금	42,106,081	34,997,913	596,495	6,511,674	25,808,477
	시·도 비보조금	7,819,992	7,487,906	113,594	218,492	-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279,594	2,615,033	2,252,721	1,411,839	4,728,323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33,040,046	14,770,853	18,994,086	41,804,009	32,742,441	2,380,047	6,681,521
45,835,149	-	-	-	-	-	-
34,689,166	12,566,480	12,083,061	9,400,391	2,341,234	1,621,610	5,437,547
3,951,130	6,376,768	2,338,051	1,050,858	890,229	160,629	-
211,126	267,350	22,290	-	-	-	-
835,773	4,568,877	872,329	-	-	-	-
883,312	16,223	61,341	-	-	-	-
397,988	1,229,865	993,033	-	-	-	-
145,118	3,943	81,615	890,229	890,229	-	-
1,477,813	290,511	307,443	160,629	-	160,629	-
30,738,036	6,189,712	9,745,010	8,349,533	1,451,006	1,460,980	5,437,547
1,032,157	51,357	671,138	-	-	-	-
9,504,736	2,814,403	4,139,288	-	-	-	-
17,179,064	1,989,877	2,532,404	-	-	-	-
280,230	34,561	43,192	6,685,406	706,430	820,761	5,158,216
-	63,955	-	150,810	129,238	-	21,572
49,952	269,691	172,978	610,382	-	610,382	-
1,053,639	544,394	1,358,206	659,000	388,513	29,838	240,649
1,256,536	168,799	489,538	243,935	226,825	-	17,110
381,723	252,675	338,266	-	-	-	-
31,081,336	-	12,993	-	-	-	-
-	-	-	6,734,750	6,734,750	-	-
-	-	-	3,536,853	3,536,853	-	-
-	-	-	3,197,898	3,197,898	-	-
20,124,608	98,313	5,585,557	16,297,604	14,873,305	498,182	926,117
-	-	-	7,819,992	7,487,906	113,594	218,492
1,309,787	2,106,060	1,312,475	1,551,271	1,305,246	146,661	99,364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연 도	구 분 장관별	총계규모(A=B+C)				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	합계	230,263,482	184,488,381	18,868,314	26,906,786	179,656,845
	1. 지방세 수입	45,056,548	45,056,548	-	-	45,056,548
	2. 세외수입	74,533,894	41,870,770	14,967,853	17,695,271	63,684,501
	가. 경상적세외 수입	13,361,091	4,781,163	6,093,522	2,486,406	12,265,879
	재산임대 수입	547,434	211,722	12,105	323,607	547,434
	사용료 수입	5,424,555	889,979	3,778,525	756,051	5,424,555
	수수료 수입	935,808	893,540	18,653	23,614	935,808
	사업 수입	3,404,330	684,582	1,632,999	1,086,749	3,404,330
	징수교부금 수입	1,029,130	1,001,644	4,781	22,706	149,656
	이자 수입	2,019,834	1,099,695	646,459	273,680	1,804,097
	나. 임시적세외 수입	61,172,803	37,089,607	8,874,331	15,208,865	51,418,622
	재산매각 수입	1,710,821	1,242,142	47,896	420,783	1,710,821
	순세계 이월금	16,976,897	8,966,269	3,746,646	4,263,983	16,976,897
	이월금	24,524,786	20,233,956	1,787,753	2,503,077	24,524,786
	전입금	8,414,205	1,470,533	1,299,082	5,644,591	823,573
	예탁금 및 예수금	236,508	207,945	18,750	9,813	18,750
	융자금원금 수입	1,345,681	161,223	949,387	235,071	573,047
	부담금	3,683,678	2,118,557	488,442	1,076,679	2,793,182
	잡수입	3,495,683	2,391,046	284,981	819,656	3,213,022
	지난년도 수입	784,544	297,937	251,395	235,212	784,544
	3. 지방교부세	28,451,177	28,429,869	-	21,309	28,451,177
	4.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7,312,702	7,312,702	-	-	-
	조정 교부금	3,581,320	3,581,320	-	-	-
	재정 보전금	3,731,383	3,731,383	-	-	-
	5. 보조금	63,151,959	54,351,304	1,163,337	7,637,318	32,379,833
	국고 보조금	53,988,684	45,573,637	1,038,726	7,376,321	32,379,833
	시·도 비보조금	9,163,275	8,777,667	124,611	260,997	-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757,201	7,467,188	2,737,124	1,552,888	10,084,785

(단위: 백만원)

순계규모(B)			이중계산부분(C)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44,920,598	15,823,717	18,912,529	50,606,637	39,567,783	3,044,597	7,994,257
45,056,548	-	-	-	-	-	-
38,854,230	13,022,202	11,808,068	10,849,393	3,016,539	1,945,651	5,887,203
3,901,688	5,877,784	2,486,406	1,095,212	879,475	215,738	-
211,722	12,105	323,607	-	-	-	-
889,979	3,778,525	756,051	-	-	-	-
893,540	18,653	23,614	-	-	-	-
684,582	1,632,999	1,086,749	-	-	-	-
122,170	4,781	22,706	879,475	879,475	-	-
1,099,695	430,722	273,680	215,738	-	215,738	-
34,952,542	7,144,418	9,321,662	9,754,181	2,137,065	1,729,913	5,887,203
1,242,142	47,896	420,783	-	-	-	-
8,966,269	3,746,646	4,263,983	-	-	-	-
20,233,956	1,787,753	2,503,077	-	-	-	-
439,612	361,502	22,459	7,590,632	1,030,921	937,579	5,622,132
-	18,750	-	217,759	207,945	-	9,813
161,223	176,753	235,071	772,634	-	772,634	-
1,480,047	468,742	844,392	890,496	638,509	19,700	232,287
2,131,356	284,981	796,685	282,661	259,690	-	22,971
297,937	251,395	235,212	-	-	-	-
28,429,869	-	21,309	-	-	-	-
-	-	-	7,312,702	7,312,702	-	-
-	-	-	3,581,320	3,581,320	-	-
-	-	-	3,731,383	3,731,383	-	-
26,531,099	250,870	5,597,864	21,608,851	19,042,538	787,856	1,778,457
-	-	-	9,163,275	8,777,667	124,611	260,997
6,048,852	2,550,644	1,485,288	1,672,416	1,418,336	186,480	67,600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 지방재정연감 - 결산편, 순계자료 - "지방자치단체 세입총계 및 순계규모", 2002~2009
<http://lofin.mopas.go.kr/>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오피니언] 분배 개선, 세금 감면 축소부터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분배를 개선하려면 세율을 내려야 한다. 한국판 버핏세가 임진년 새해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새해 예산안과 더불어 기습처리된 마당에 ‘웬 개념없는 소리냐 고 타박 받을 수 있는 소리다. 하지만 버핏세의 진정한 의도가 ‘부자 때리기가 아닌 분배 개선에 있다면 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비해 크다고 한다. 부과대상 소득계층을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을 보다 손쉽게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세율이 높아져도 분배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계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률적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 감면 혜택은 주로 고소득계층에 돌아가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소득세에서 나타나고 있다. 1,430만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자 11%가 전체 세수의 81%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들도 4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율을 높이는 등 누진도를 높여도 분배는 기대 만큼

좋아지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도는 더욱 가파르다. 14%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세수의 94%를 부담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소득세의 누진도가 지난 1995년에 비해 6% 높아졌지만 2009년 지니계수로 계산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4.3%에서 3.2%로 줄었다.

한편 소득세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감면은 확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액의 경우 2000년 346억원에서 2009년 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세금감면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돌아간다. 소득세 감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면 기대와 달리 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소지마저 있다.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면 세율을 높이기 전에 각종 소득공제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다. 면세점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병행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만으로 우리의 분배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무리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모두 합해도 총 소득세수는 내국세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리 누진도를 높여나가도 이 정도의 세수 규모로는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크게 개선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 소득세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소득세수가 총 세수의 30%에 달하는 영국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소득세를 높이자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만 올리면 자칫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세율 인상은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목들의 개편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가 정하고 행정부도 연초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까지 끝난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의 진정한 의도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복잡한 조세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분배 개선에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세율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은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한건주의식 정치적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보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경제 2012-1-3일자)

[오피니언]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임진년 새해의 성격을 기리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가장 공감할 얻는 표현은 역시 '정치의 해'가 아닐까 싶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치러지는 해이다. 총선과 대선 중 하나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들쭉이는데, 두 개의 선거가 약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질 예정이니 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시야를 나라 바깥으로 돌려 보아도 정치의 해라는 표현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정치 리더십을 걸고 정치세력 간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 한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정치의 해를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금년에 정치논리가 붓물을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이다. 정치논리를 한 마디로 쉽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중앙값의 논리가 아닐까 싶다. 표를 많이 얻으려면, 가급적 많은 무리의 집단이나 계층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논리는 평균값의 논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1인 1표의 정치 세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표의 가중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만약 한 사회의 분배구조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종(鐘) 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린다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위소득이 몰린 밑부분은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치 손잡이 부분을 위로 하여 얹어놓은 조롱박의 모습이다. 이 경우 중앙값은 평균값보다 점점 더 작아지고, 그만큼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는 경제논리로부터 떨어져 가게 된다.

정치논리에서 즐겨 찾는 화두 중의 하나가 상대적 빈부격차 문제이다. 2009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최고의 정치서적 중 하나로 지목된 '스피릿 레벨' (Spirit Level)에 따르면, 상대적 빈부격차는 단지 경제적 현상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발전되고 이는 또다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현격히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상대적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일수록 평균수명, 비만,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마치 이러한 주장을 입증이나 하듯이, 작년에 월가(街)를 시작으로 촉발된 소위 '점령(occupy) 시위'는 주로 소득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시위자들이 내세운 '1대99'의 소득분포는 앞서 얘기한 조롱박의 손잡이가 매우 극단적으로 길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평균값과 중앙값 간의 괴리가 커지는 모습일 것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논리만을 내세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예컨대, 상대적 빈곤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 노동당의 국영화 정책, 1980년 초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사회개혁 실험 등 많은 역사적 경험들은 이러한 방법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웃 타이완만 해도 2009년 들어 50%까지 급속한 누진 구조를 갖고 있던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10% 단일세율로 바꾼 바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자본의 국내 재반입을 위한 교육지책이었다고 한다.

반면 경제논리만의 해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평균값과 중앙값의 괴리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희망을 외면하는 논리와 정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경제논리에도 합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마치 평균값과 중앙값이 모두 분포곡선의 필수적 설명변수가 되듯이, 우리사회의 문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보다 조화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2012-1-2일자〉

자본이득세의 딜레마

주식투자 등 자본이득에 대한 느슨한 과세는 ‘불로(不勞)소득에 특혜까지 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눈총을 받아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시장 위축 우려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이 애초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갑자기 이를 거둬들이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의 30%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매력이 줄어들면 차칫 한국 자본시장 전체가 휘

청거릴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오래 전부터 자본이득에 과세해 온 대다수 선진국들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우리처럼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다 과세 전환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대만은 과세안을 전격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1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기에 △세수 변화 예측의 어려움 △기존 거래세와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도 현실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물론 과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증권업계 내부에서조차 “자본시장은 세금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에 좌우된다”며 과도한 세금 공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도입에는 대체로 의견이 없는 분위기다.

조세연구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나 조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과세안을 도입할까 하는 방법론”이라며 “일본의 선례를 교훈 삼아 단계적이고 정교한 시행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2012-1-2일자〉

한국 재정 운영의 3가지 특징

현재 남유럽 위기의 원인은 재정이다. 만성 재정적자와 수출 부진으로 국고가 바닥났다. 재정건전성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한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근 수년간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기획한 책 ‘한국의 재정 60년’은 건전 재정의 길을 알려준다. 전직 경제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와 예우회 멤버들이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 과제를 새롭게 조망했다.



기획: 한국조세연구원
재경희 · 예우희 엮음
매경출판 판권

대한민국 건국 이래 60여 년간의 국가 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미 군정,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권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안

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여해 향후 한국 재정의 과제를 제시했다.

원로 경제관료들이 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건전 재정의 길 12대 원칙'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로들은 국가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2년 안에 10% 절감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재경희는 이 밖에 △조세부담률 점진적 상향 조정 △예산구조 칸막이 재점검 △엄격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 △국민연금 개혁 등 총 12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 재정 운영의 60년 역사를 보면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 발전을 적극 뒷받침했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세입 범위에서 지출을 집행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셋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 책은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진념 재경희 회장(전 부총리)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 재정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1-12-24일자〉

재정포럼

2012년 1월호 통권 제18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1월 16일 발행 / 제16권 제1호(통권 제18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